

工學碩士 學位論文

釜山日本專管居留地の 形成과
變化에서
나타난 建築的 特性에 關한 研究

A Study on the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in the course of the
Formation and the Change of Japanese Concession in Busan

指導教授 李 漢 錫

2002年 2月

韓國海洋大學校 大學院

建築工學科 宋 惠 永

工學碩士 學位論文

釜山日本專管居留地の 形成과
變化에서
나타난 建築的 特性에 關한 研究

A Study on the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in the course of the
Formation and the Change of Japanese Concession in Busan

指導教授 李 漢 錫

2002年 2月

韓國海洋大學校 大學院

建築工學科 宋 惠 永

本 論文을 宋惠永의 工學碩士 學位論文으로 認准함.

委員長 禹 東 善 印

委 員 李 漢 錫 印

委 員 都 根 永 印

2001年 12月 26日

韓國海洋大學校 大學院

建築工學科 宋 惠 永

목 차

1. 서론	1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2. 부산일본전관거류지의 형성과 특성	4
2-1. 부산일본전관거류지 형성시기와 배경	4
2-2. 부산일본전관거류지 변천과정과 특징	8
2-3. 거류지의 시가지 형성과 계획	10
2-4. 토지와 가옥 및 시가지 관련 근거와 법령	15
2-5. 거류지 거주민	19
3. 여러 시설의 성립과 변천	26
3-1. 관청 및 공공시설	29
3-1-1. 관리청 · 영사관 · 이사청	29
3-1-2. 전신국 · 경찰서 · 거류민단역소	33
3-1-3. 헌병대 · 상업회의소 및 상품진열관	40
3-2. 농 · 공 · 상업시설	44
3-2-1. 부산거류지로 이주한 일본인의 활동	44
3-2-2. 부산거류지에 설립된 여러 회사와 공장	46
3-2-3. 부산일본거류지에서의 경제활동과 건축	51
3-3. 교육시설	68
3-3-1. 초기 교육시설의 형성	68
3-3-2. 거류민단 사업과 교육시설	69

3-4. 종교시설	77
3-4-1. 부산 종교시설의 형성	77
3-4-2. 종교시설의 발전과 변천	81
3-5. 기타시설	87
3-5-1. 거류지에서의 다양한 직업분화	87
3-5-2. 거류지 시설에서의 취체와 규칙	88
3-5-3. 부산일본거류지에서의 연극장	90
3-5-4. 부산일본거류지의 요리점과 음식점	99
3-6. 부산일본거류지 건축물의 내부구조 표현	103
3-6-1. 이사청 회계사무장정	103
3-6-2. 지도조제표준	104
3-6-3. 건물도제조표준	106
4. 부산일본거류지의 해안매립	110
4-1. 해안매립 배경과 의의	110
4-2. 해안 매립지의 건축물 성립	118
4-2-1. 부산역	118
4-2-2. 부산우편국	120
4-2-3. 부산세관	121
5. 결론	125
5-1. 연구의 요약	125
5-2. 연구의 의미와 한계	127

ABSTRACT

A Study on the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in the course of the Formation and the Change of Japanese Concession in Busan

Song, Hye Young

Dep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Graduate School, Korea Maritime University

The period between 1876 and 1910, what is so called "the period of Japanese Concession", is very important in the history of Busan. At that time, not only political, economical and social situations had changed rapidly, but also architectural history had made progress greatly.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background and the characteristics on the acceptance of the modern urban planning in Busan and to make an analysis on the explanation of land utilization and the location of building in Japanese Concession area. With intent to an expansion of territory and the security of place for trade expansion, the Concession was almost built up of government, public offices and commercial buildings for Japanese.

In addition, it is the purpose of this study to analyze social and historical background and the characteristics on the establishment of the varied facilities in the period of Japanese Concession in Busan. During the years from 1876 to 1910, many kinds of architecture were built up to establish the social facilities on the new settlement land for Japanese emigrant in Busan area. From the change and the utilization of the education facilities and the religious facilities, we can trace the urban development in Busan.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한국 근대건축(近代建築)에서 1876년은 그 시작의 시점으로 보고 있으며 또한 한국근대사의 기점이기도 하다. 한국 근대건축의 전개를 대부분 3기로 나누고 있으며 ‘초기 이식기’라 불리는 1876년에서 1910년은 개화건축기(開化建築期)로 분류되고 있다.¹⁾ 이 기간의 근대건축은 한국 전통건축양식으로부터 근대건축으로 향하는 과도기로서 외부의 강압에 의한 개항으로 일본을 비롯한 서구의 외교시설과 상업시설 등이 다수 건설되었다.

서구식 근대건축의 유입은 대부분 외국공관 계통의 건축물이나 외국인 선교사를 통한 종교관련 건축물 혹은 외국인 상사건물 및 주택 그리고 거류지를 통한 일본인에 의한 관청 및 공공건물의 설립 등으로 거론할 수 있다. 그 중 일본거류지의 존재는 ‘한국근대에서 건축의 변용’에서 특색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²⁾

부산은 바다를 면한 해안지역(海岸地域)이라는 자연조건으로 우리 나라 역사에서 오랫동안 항구도시(港口都市)로서 그 역할을 유지해왔다. 항구도시로서 역사에 드러난 시기는 1407년 7월 부산포왜관³⁾(富山浦倭館)과 함께 최초의 개항(開港)이 이루어지면서이다. 오랫동안 거둬드는 왜인(倭人)의 침입에 대한 회유책(懷柔策)의 하나로 항구로서의 개항이 시작되었으며 3차례⁴⁾에 걸친 개항과 폐항(廢港)을 거듭하였다. 임진왜란 종결 이후인 1607년 6월 두모포(豆毛浦)⁵⁾에 왜관이 설치되면서 상설화 되었으나, 두모

-
- 1) 김정동, 「한국 근대건축 206편의 참고문헌」, 건축역사연구 제1권 1호, 1992. 6
 - 2) 村松伸, 윤인석 역, 「동아시아 근대에서 “건축”의 변용」, 건축역사연구 제1권 2호, 1992. 12
 - 3) 1407년 7월 개관하여 1592년 4월까지 존속
 - 4) 1차 폐항은 1419년 이종무의 대마도정벌에 의해, 2차 폐항은 1510년 4월 3포의 왜란으로, 3차 폐항은 1592년 4월 임진왜란으로 발생하였다.
(인용 : <http://www.metro.busan.kr/history/index.jsp>)
 - 5) 두모포는 현재의 수정동 일대로 왜관 설치(1607~1678)되었다.

포왜관의 거듭되는 화재로 인하여 1678년 5월 초량소산(草梁小山: 현재 용두산 일대)으로 왜관을 이전시켜 재설치 하였다.

초량왜관의 설치는 부산이 일본과의 교류에서 중심에 서게 되는 중요한 시발점이 되었다. 1876년 일본의 무력시위를 통해 맺어진 ‘병자수호조규(丙子修護條規)’⁶⁾에서 부산이 근대적 개항장(開港場)의 하나로 언급되었고 초량왜관은 그 개항장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병자수호조규를 통해 부산에 설치된 소위 “부산일본제국전관거류지(釜山日本帝國專管居留地)”⁷⁾는 당시 개항된 타 개항장보다 독특한 문화가 자리잡고 있었다. 부산의 개항장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일본과의 교류로 인해 그들 문화가 뿌리내려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문물이 자리잡고 있었던 초량왜관의 부지를 중심으로 설정되었기 때문이다. 초량왜관의 토양 위에서 자라나게 된 부산일본거류지는 근대적 개항과 더불어 소위 일본식 서구 건축물이 급속히 설립되었고 그것은 이 땅에서 근대건축물로 자리잡게 되었다. 오늘날 부산에는 개항장이나 거류지의 개념은 사라져 버렸지만 그것들이 남긴 흔적은 아주 크다. 부산(釜山)이란 명칭⁸⁾은 본래 동래부(東萊府)의 한 지역을 지칭하는데 불과하였으나 일본인들의 내주(來住)는 이 지역에 대한 동래의 영향을 약화시키게 그치지 않고 그 명칭조차 박탈시켜 버렸다. 또한 거류지시기를 거치면서 명실상부 이 지역의 중심으로 형성·변화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오늘날 부산의 명칭과 중심지 역할은 과거 일본거류지가 설치되었던 이 곳에 남겨졌고, 시가지 형성에서 건축물의 부지 이용에 관해 유사성이 보여지고 있다. 이에 거류지의 형성과 변화를 밝히지 않고서는 부산의 근대사를 고찰할 수 없게 되었다.

비록 이 시기의 건축은 일본에 의해 설립된 것이 대부분이나, 이 땅에 설립된 건축물로서 올바른 이해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며 부산일본거

6) 1876년 2월 27일 강화도에서 조선정부와 일본정부간 조인된 조규

7) 「부산이사청령」 제3호에서 지칭된 공식명칭(1907.9.12.)

8) 본래 동래부(東萊府)에 속한 부산포(富山浦)가 오래된 명칭이나 1469년 12월의 조선왕조실록에는 부산포(釜山浦)로 기록되어 있다.

인용 : <http://www.metro.busan.kr/history/index.jsp>

류지와 결부하여 고찰함으로서 도시의 형성과 변화과정 뿐만 아니라 부산의 근대건축을 고찰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이 연구의 목적으로 두고 있다.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이 연구의 범위는 그림 2-1.과 그림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역적으로 부산에 있었던 ‘일본거류지’라는 한정된 공간과 1876년 근대적 개항에서부터 1910년 경술국치(庚戌國恥)로 인한 국권의 상실 때까지를 연구 기간으로 설정하였다. 비록 공식적으로 거류지가 이 땅에서 사라진 것은 1914년의 일⁹⁾이지만 1910년으로서 국권의 상실은 이 땅에서 개항장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해 버렸기 때문이다.

부산일본거류지는 1876년부터 1910년이 이르는 기간동안 끊임없이 확장과 매립을 통해 그 영역을 넓혀 나갔고 그 곳에 그들이 유입한 근대적 건축물을 설립하였다. 비록 일본거류지의 영향력은 거류지에 한정되지 않고 한국인이 모여 살던 이웃 부평정(富平町)이나 토성정(土城町), 보수정(寶水町) 등에 이르렀으나 이 연구에서는 제도적으로 설정된 영역에 한하여 고찰하였다.

현재 거류지시기에 건립된 근대건축은 급격한 도시발달로 원형의 보존이 거의 드물다. 이에 문헌조사를 중심으로 사회적 상황과 건축물의 설립 배경 및 변천 과정과 특성을 조사하고 설립위치를 파악하여 토지 이용 현황을 살펴보았다.

9) 조계(租界)제도는 1914년 3월 31일자로 조선총독부에 의해 폐지되었다.

2. 부산일본전관거류지의 형성과 특성

2-1. 부산일본전관거류지 형성시기와 배경

거류지(居留地, Concession)는 제국주의(帝國主義)가 극도로 팽창하던 19세기에 선진국이 후진국의 토지를 침탈하여 거주지(居住地)를 만드는 사례의 하나로서, 주로 해안의 항구도시에 많이 설정되었는데 우리 나라에서도 그 사례를 여러 개항장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일본은 1876년 조선의 개항을 통해 정치·외교측면 뿐만 아니라 무역과 통상을 통한 경제적 이익창출을 고려하였다. 근대적 개항이 실현되는 근거였던 병자수호조규(丙子修護條規)에서 부산을 비롯한 3개의 개항장을 설치하고 그곳에 일본의 전관거류지(專管居留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친숙했던 부산에 최초의 일본인주거지역이 연액(年額) 50원의 지대(地代)로 당초 조선정부가 의도하였던 조계(租界, Settlement)가 아닌 소위 “부산일본제국전관거류지¹⁰⁾”를 설치함으로써 여타 다른 도시와는 다른 발달의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1876년 조선과 일본이 맺은 병자수호조규(丙子修護條規)에서 부산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수호조규 제4관에서 조선국 부산 초량(草梁)에 일본공관을 설치하고 과거의 전례와는 달리 일본인이 왕래하며 통상이 가능하도록 하며 제5관에서 소재(所載)하는 지역에 임차지(賃借地)를 두어 가옥(家屋)을 조영(造營)하거나 또는 그 편리(便利)를 위한 각종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였다.¹¹⁾ 둘째, 수호조규부록(修好條規附錄)¹²⁾ 제3관에서는

10) 부산거류지의 정식명칭으로서 부산이사청의 청령과 고시에 언급되고 있다. 참조: 『통감부법령자료집』 중 고시 제9호(1908.6.19) 등

11) 원문은 다음과 같다. 第四款 朝鮮國釜山草梁項 立有日本公館 久已爲兩國人民通商之區 今應革除從前慣例 及歲遣船第事 憑準新立條款 措辦貿易事務 且朝鮮國政府 須別開第五款所載之二口 準聽日本國人民往來通商 就該地賃借地基造營家屋 或僑寓所在人民屋宅 各隨其便

12) 1876년 8월 24일 조선 강수관(講修官)과 일본 이사관(理事官) 사이 조인된 조규

부산 초량항은 중전 일본공관 주위에 설치된 관문을 철폐하도록 조선정부가 허락한다는 내용¹³⁾이 포함되어 있다.

병자수호조규와 수호조규부록에서는 조계¹⁴⁾가 협정되었고 1678(숙종 4)년에 설치된 초량왜관(草梁倭館)의 땅을 승계하는 형식으로 설정되었다. 그러나 조약체결 후 동래부사와 일본 관리관 사이에 별도로 약정한 부산항일본거류지관리조약(釜山港日本居留地管理條約)에서 일본은 왜관(倭館)이 과거에 외교·통상을 위한 임시숙소였음을 도외시하고 일반주민의 상주지역이었다고 강변하였다.¹⁵⁾ 국제외교관례에 무지했던 당시의 지방관리들은 거류지 예정지가 관청소재지이던 동래에서 멀고 바닷가 부근의 외진 곳이라고 인식하여 이를 묵인해버렸고, 결국 국가주권을 무시하면서 치외법권을 갖는 거류지가 설정되었다. 거류지 내 토지는 조선이 일본에 일괄 영대(永代)하고 이를 일본은 자국민에게 전대(轉貸)하는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 또한 지방행정권을 거류지 행정관이 행사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에 거류지는 점차 일본 본토와 같은 형태로 변해갔다.

초기 설정된 부산일본거류지는 초량왜관 시절 설정된 면적 그대로를 답습하였고, 차츰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확대·재편성 되어갔다. 조선정부가 과거 초량왜관 신설당시 지어준 왜관의 구조는 그림 2-2와 같이 용두산(龍頭山)을 중심으로 동관(東館)과 서관(西館)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동관은 쓰시마(對馬)의 도주(島主)가 파견한 대리인인 가신(家臣)이 거처하며 왜관을 관장하던 관수왜가(館守倭家)¹⁶⁾를 중심으로 하는 행정영역(行政領域)이었고, 서관은 일본의 민간인이 생활하는 육행랑(六行廊)이 중심이 된 생활

13) 원문은 다음과 같다. 第三款 式議定朝鮮國通商各口 日本人民之租賃地基居住者 須與地主商議 以定其額 屬官地者 納租與朝鮮人民同 若天釜山草糧項日本館 從前設有守門設門 從今撤廢 一依新定程限立標界上 他二港口亦照比例

14) 거류지와 조계지는 토지취득방식과 거주지의 성격에 따라 구분한다. 전자는 정부당사자의 협의아래 일괄영대차(一括永貸借)하여 토지를 불하(拂下)·전차(轉借)하는 것이고, 후자는 개인 혹은 정부가 소유자와의 개인적인 접촉으로 영조(永租)하는 경우를 뜻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의에 따라서 부산은 거류지로 분류한다.

15) 손정목, 『한국개항기도시변화과정연구』, 일지사, 1982, 92~94쪽

16) 뒤에 영사관 부지로 활용

영역(生活領域)이었다. 왜관은 용두산이라는 지리적 장애물로 두 지역으로 분할되었고 이 두 지역을 장수통¹⁷⁾이라고 불린 도로가 연결하였다.

개항 이후 1879년 10월 20일 과거 관수왜가 자리에 영사관이 건립되어 들어서자 동관 주변은 경찰서와 은행, 대규모 상점들이 입주하며 거류지 중심지역로 발전해 나갔고 서관 주변은 개항 이후 건너온 소규모 상인들의 거처와 상점들이 개설되어 마을이 형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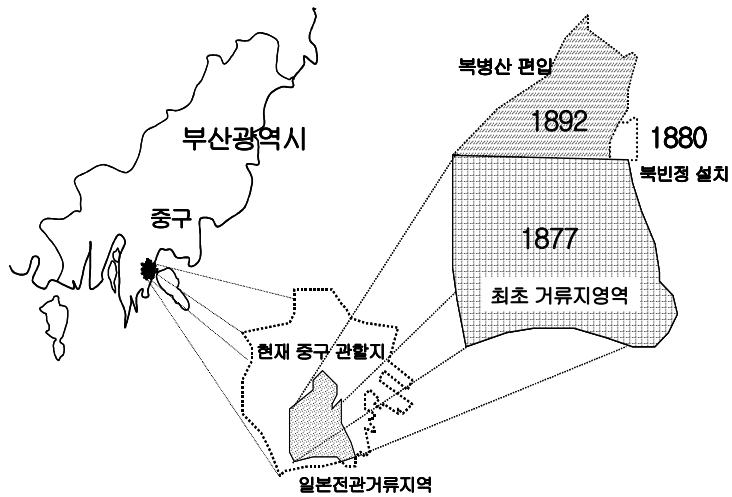


그림 2-1. 부산일본거류지의 현재 위치와 영역 변천과정

17) 본래 명칭은 長手通り이며 지금의 광복로(光復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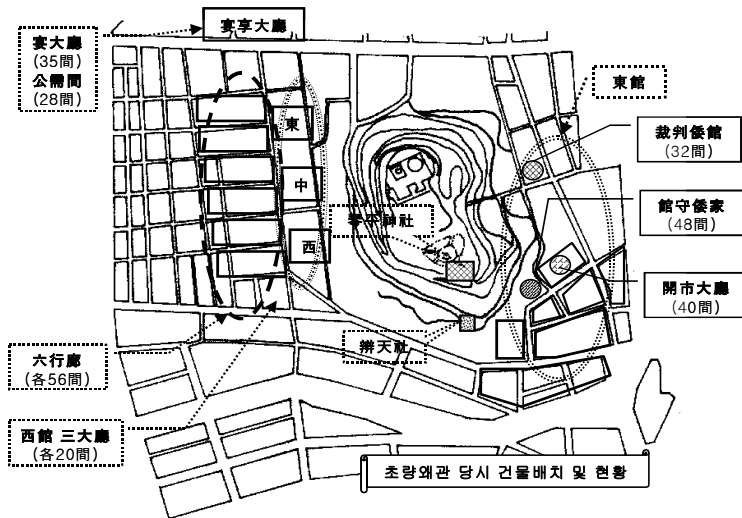


그림 2-2. 초량왜관도(草梁倭館圖)와의 비교를 통한 영역 비교

* 주기 : 『부산부사원고』 개항기편 소재 1875년 작성된 '구왜관도면'을 바탕으로 제작

2-2. 부산일본전관거류지 변천과정과 특징

거류지 초기 설정영역은 초량왜관을 답습하여 면적은 약 11만평이었고 장방형의 모양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인구의 증가는 점차 영역의 팽창을 요구하였고 이에 거류지의 북빈해안을 취하면서 1880년 북빈정(北濱町)을 신설하였으며, 묘지(墓地)용도로 쓰이던 북병산(伏兵山)을 1892년 거류지에 합병시켰다. 그림 2-3.은 부산일본거류지의 행정구역에 관한 자료로서 1908년 매립지(埋立地)에 신설된 구역을 제외하고 나타낸 것이다.

거류지 변천과정을 행정관리 측면에서 살펴보면 크게 영사관시대(領事館時代)와 이사관시대(理事館時代)로 구분할 수 있다. 영사관시대(1876~1906)는 일본이 다른 나라와 더불어 「조선의 독립」을 인정하는 가운데 거류지 행정권을 행사하였다. 그러나 1904년 8월에 강압적으로 체결된 제일차한일협약(第一次韓日協約)¹⁸⁾은 일본이 공식적으로 조선의 내정에 간섭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게 해 주었고, 을사보호조약(乙巳保護條約)¹⁹⁾을 근거로 시작된 이사관시대(1906~1910)의 거류지 행정은 아주 막강하면서 조직적이며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명령을 많이 발표하였다.

일본인 이사관(理事官) 관할 아래 시작된 부산거류지는 1880년 영사관이 설치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일본인 정착지로 변모해갔다. 영사관시대는 거류지의 초기단계인 「정착시기(定着時期)」라 할 수 있으며 행정 및 통상에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작업들이 주로 계획되어졌다. 또한 부산거류지에서 일본인에 대한 권리보호 혜택은 대량 이주를 초래하여 거주필요시설 확충 및 행정권 확립, 통상사무의 용이를 목표로 주요 시설물이 설립되어

18) 1904년 8월에 조인된 것으로 공식명칭은 「외국인 용병(傭聘)협정」이며, 한일협정서라고도 한다. 그 내용은 ① 한국정부는 일본정부가 추천하는 일본인 1명을 재정고문으로 하여 한국정부에 용병하고, 재무에 관한 사항은 일체 그 의견을 물어 시행할 것, ② 한국정부는 일본정부가 추천하는 외국인 1명을 외교고문으로 하여 외부에 용병하고 외교에 관한 요무(要務)는 일체 그 의견을 물어 시행할 것, ③ 한국정부는 외국과의 조약체결, 기타 중요한 외교안건, 즉 외국인에 대한 특권양여와 계약 등의 처리에 관하여는 미리 일본정부와 협의할 것. 참고: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19) 을사보호조약·제2차한일협약·을사오조약(乙巳五條約)·을사늑약이라고도 한다. 1905년(광무 9)에 일본이 한국 외교권의 접수, 일본 통감부(統監府)의 설치 등을 중요내용으로 하는 조약을 체결·조인하고 11월 18일에 이를 발표하였다. 참고: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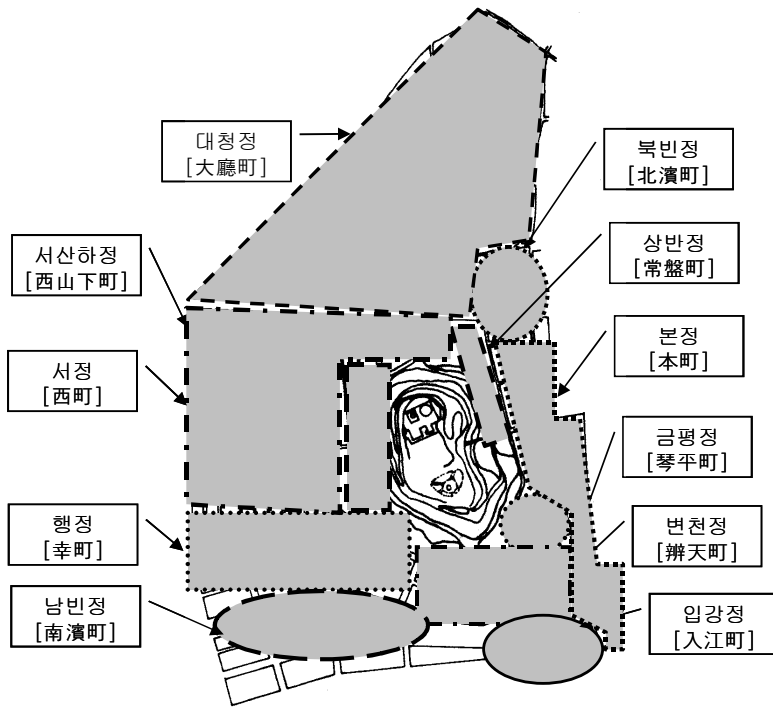


그림 2-3. 1908년 이전 부산일본거류지 행정 구역 현황

* 주기 : 통감부철도관리국, 『한국철도노선안내』, 1908,
 ‘부산일본전관거류지 경계’ 도면을 바탕으로 제작

표 2-1. 부산일본전관거류지 행정구역 변화과정

1878년 최초 설치	본정 · 상반정 · 변천정 · 입강정 · 행정 · 서정
1880년 신설	북빈정 설치
1901년 이전	금평정 · 서산하정 설치
1902년 이후	남빈정 · 대청정 등이 설치

2-3. 거류지의 시가지 형성과 계획

초량왜관의 영역 승계와 함께 시작된 부산일본거류지는 왜관시절 마련된 영역구조를 바탕으로 토지이용에 관한 시가지 구획이 이루어졌으며 건축물은 그 구획계획에 따라 자리잡아 갔다.

거류지 초기 일본인의 거주와 이동은 외교협약에 따라 정주의 불가와 이동의 부자유를 원칙으로 조일수호조규부록(1876.8.24)에 의한 간행이정²⁰⁾(間行里程)에 의해 제한이 가해졌으나, 일본은 거듭되는 개정을 통해 임의로 규정을 정의하면서 그 제한을 사실상 사문화(死文化)시켰다.

1876년 당시 거류지의 일본인은 82명이었다. 그러나 계속되는 일본측의 거류지 확장정책은 그림 2-4와 같이 거류지 일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를 초래하였으며 그 원인에는 뒤에서 언급되겠지만 경제적 요인이 주요하게 작용되었다.

부산에 근대적인 도시계획이 본격적으로 요구되어진 것은 인구의 증가에 따른 일본거류지의 팽창 때문이었다. 설정 초기 과거 왜관의 대다수 부지는 영사관 관리하에 이주해온 일본인에게 대여(貸與)되었다. 그러다가 1879년경 최초로 거류지의 영역을 두 개로 구분하여 동관과 서관으로, 다시 동관을 제1구역과 제2구역으로 나누고 각각 3곳과 2곳의 정명(町名)을 부여하는 구역 분할이 이루어졌다. 서관은 1구 1동으로 서정을 설치하였다. 이때 명칭을 부여받은 6개의 정은 본정(本町)·상반정(常盤町)·변천정(辨天町)·입강정(入江町)·행정(幸町)·서정(西町)이다.²¹⁾

20) ‘일본인민간행이 부근을 간행(間行)할 수 있는 도로 이정’의 약어로서 「간행도로이정(間行道路里程)」이라고도 한다. 처음 조선 리(里)로 사망 10리로 규정되었으나 1883년(각50리)와 1884년(각100리)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21) 부산일본영사관, 『경상도사정』, 1904, 제33 거류지내 토지종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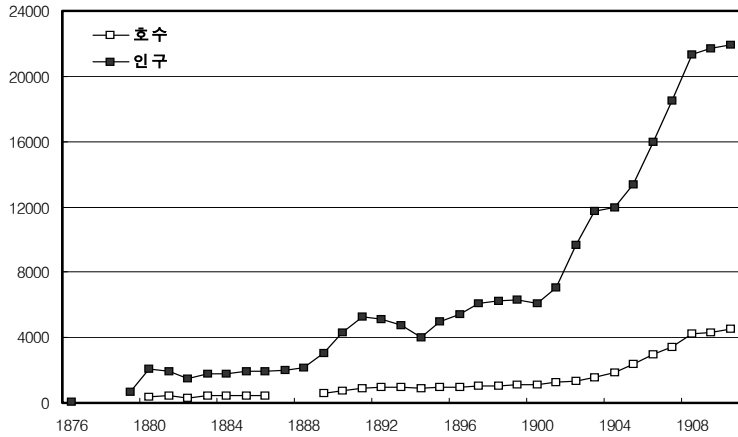


그림 2-4. 부산일본거류지 거류민 인구 및 호구 변화과정
 [참고: 『부산부세요람』, 1921; 도영주·윤일주, 「1910년 이전의 부산의 양풍건축」, 1963, 237쪽, 표 1에서 재인용]

그림 2-5.는 거류지에 개설된 도로 현황에 대해 보여준다. 1888년 6월에 본정과 변천정 방향의 인구팽창 인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요구되면서 초기 대여해준 토지를 회수(回收)하여 도로부지로 편입하게 되었다. 이어 1888년 11월부터 1889년 12월에 북병산과 용두산 중간에 신도로(오늘날의 대청로)를 개설하였고 1890년 대여되었던 서정의 공지(空地)를 회수하여 시가지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거류지역이 시가지로서 틀이 형성된 시기는 1901년으로 보이며, 그 해 4월 조사된 토지등급구분(土地等級區分)은 거류지 내 토지를 표 2-2.와 같이 5종으로 구분하여 그 면적을 측정하였고, 일본인 소유의 토지(民有地)들도 표 2-3.과 같이 4등급으로 구분하였다. 그림 2-6.은 세부 행정구역 현황을 나타내는 자료로서, 토지의 구분과 지가의 측정 이전에 이미 행정구역의 세분화가 이루어져 정목(丁目:街를 말한다)과 번지(番地)가 생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7.은 민유지의 등급조사에서 나타난 등급별 구역을 지도에 나타낸 것이다.

표 2-2. 거류지내 일본인소유 토지
 [출전 : 『경상도사정』 중 제33 거류지내 토지종별]

구 별	종 별	평 수	비 고
거류지내 (居留地内)	관용지(官用地)	18,743	영사관·우편국·관사·병영사
	공용지(公用地)	2,427	거류지역소·병원·상업회의소· 상품진열관
	공원지(公園地)	20,480	용두산 및 용미산
	도로용지(道路用地)	13,000	
	민유지(民有地)	55,350	
	합 계	110,000	

표 2-3. 일본인 소유지 등급 구분
 [출전 : 『경상도사정』 중 제33 거류지내 토지종별]

등 급	위 치	총면적(평)
1등급	본정 1정목 5번지 ~ 본정 3정목 변천정 1정목 1번지 ~ 2번지 변천정 1정목 8번지 ~ 변천정 1정목 13번지 금평정 1번지 ~ 금평정 3번지 입강정 1번지 ~ 입강정 7번지	10,126
2등급	본정 1정목 1번지 ~ 본정 1정목 4번지 북빈정 1정목 전부·북빈정 2정목 1번지 변천정 1정목 3번지 ~ 변천정 1정목 7번지 변천정 2정목 1번지 ~ 변천정 2정목 14번지 금평정 4번지 ~ 금평정 12번지 입강정 8번지 이하 전부 북빈정 1번지 ~ 북빈정 43번지 행정 1정목 전부 행정 3정목 1번지 ~ 행정 3정목 3번지	15,728
3등급	상반정 전부 북빈정 2정목 2번지 ~ 북빈정 2정목 12번지 행정 2정목 1번지 ~ 행정 2정목 12번지 북빈정 44번지 이하 전부 행정 3정목 5번지 ~ 행정 3정목 28번지 서정 2정목 1번지 ~ 서정 2정목 4번지 서정 2정목 39·45·46·50·51번지	7,449
4등급	행정 2정목 8번지 ~ 행정 2정목 13번지 서산하정 전부 서정 1정목 5번지 이하 전부 서정 2정목(3등지 제외)·3정목·4정목·5정목	22,487

* 주기 : 1901년 구분되었으며 1등급지의 지가는 평당 40~50원에서 80~90원
 이었으며 서정과 행정방면의 지가는 평당 16원 내외로 거래됨.

거류지 토지는 모두 정부로부터 차용허가를 받아야 개인이 사용할 수 있었다. 이것을 ‘토지차용수속(土地借用手續)’이라 하였고 차용된 토지는 배차지(拜借地)²²⁾라 불렸다. 지소대도규칙(地所貸渡規則)에 의해 일본인만 차용 가능했고 ‘1가(家)1명(名)1택지(宅地)’의 원칙이 적용되었으며 상업상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었다. 배차지의 양도시 변경서를 제출해야 했고 상속할 경우 2인 이상 친척과 보증인이 연서해야 했다.

1901년에 책정된 지가등급의 내역을 보면 1등 급지는 영사관을 중심으로 부산항 주변의 초량왜관의 동관영역이 대부분 속해 있고 용두산 너머 서관영역은 대부분 하급지로 책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자료를 통해 부산일본거류지에서 중요지역은 영사관과 부산항을 인접하는 동관영역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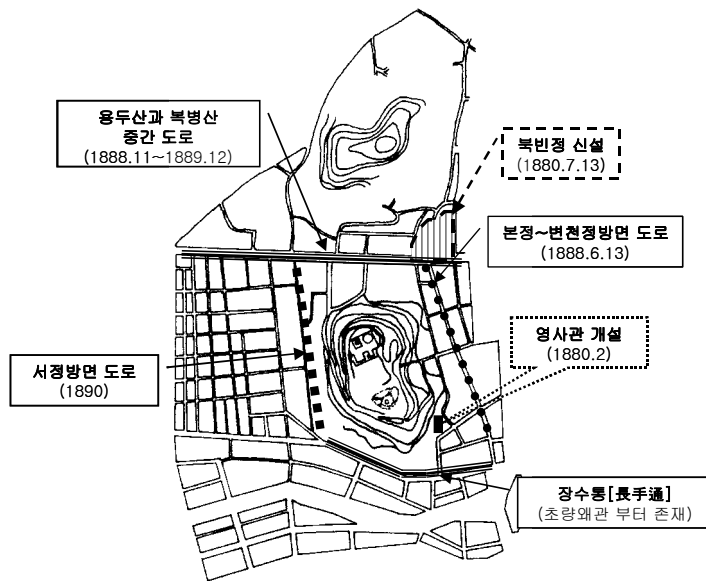


그림 2-5. 부산일본거류지 시가지 확장과 도로 개설 과정

22) 1902년 말 조사된 배차지 구분은 아래와 같다.

부산일본거류지 배차지 등급[출전 : 『경상도사정』 중 제33 거류지내 토지종별]

1등지	2등지	3등지	4등지	건가(建家)	토장판소옥(土藏板小屋)
10,126평	15,278평	7,499평	15,822평	15,822	3,702평
합계		55,350평			19,524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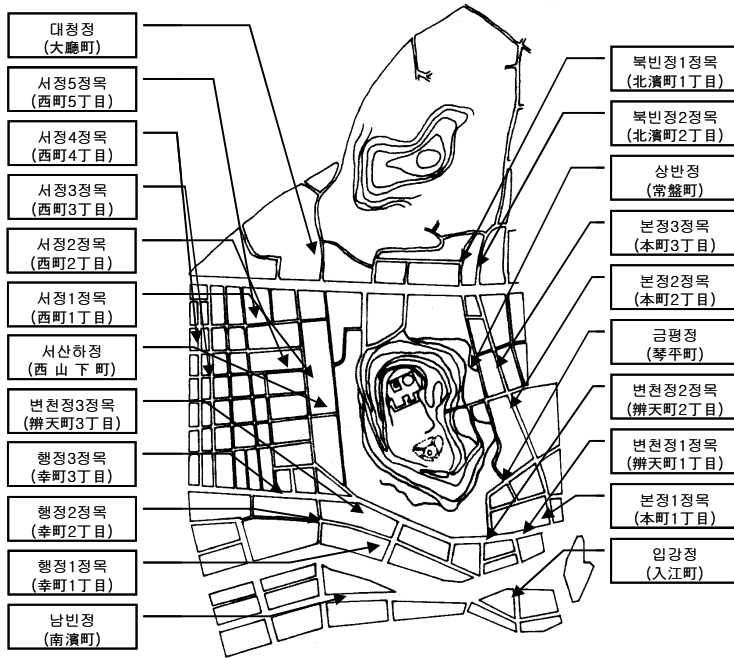


그림 2-6. 부산일본거류지 세부 행정구역 내역
 * 주기 : 부산이사청령 제3호 「부산거류민단구역내의 정명·구역을 변경하는 건」(1909.5.21) 이전 구역의 내역임. 통감부철도관리국, 『한국철도노선안내』, 1908, '부산일본전관거류지 경계' 도면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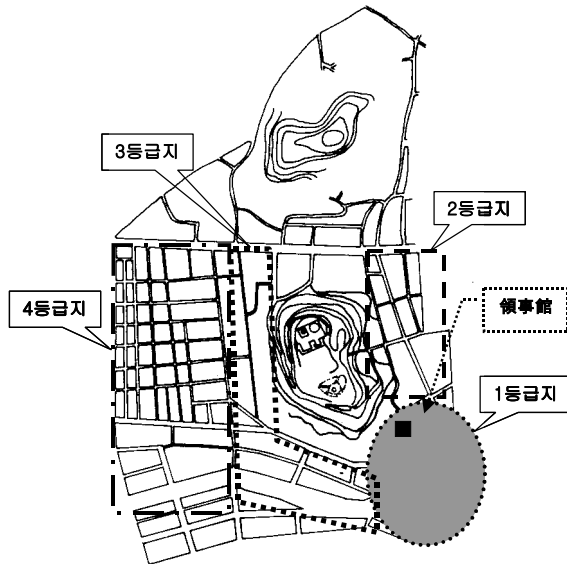


그림 2-7. 부산일본거류지 급지별 영역 현황

2-4. 토지와 가옥 및 시가지 관련 근거와 법령

1876년 이후 거류지를 관리하는 관청은 일본영사관(日本領事館)이었다. 영사관에서 ‘부산영사관법령(釜山領事館法令)’²³⁾이 1906년 이사청 설치 전까지 시달되었고 「인민간행이정재확(人民間行里程再擴)의 건」²⁴⁾ 등이 여기에 속한다.

거류지가 결정적인 변화를 보이는 시기는 바로 을사조약(乙巳條約)²⁵⁾ 이후였다. 이 협약을 통해 일본은 조선의 내정에 간섭 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게 되었고, 통감부와 이사청(理事廳) 설치의 근거가 되었다. 부산에서의 이사청 설치의 해당관할지역에 법적 효력을 가지는 「이사청령(理事廳令)」이 시달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²⁶⁾ 이사청시기의 명령에는 독자적으로 시달한 것과 통감부의 지침에 따른 세부지침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있었다.²⁷⁾ 이사청 설립 이후 1910년까지 거류지의 명령체계는 그림 2-8.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영사관시기(1876~1904)와 이사청시기(1904~1910)에

23) 「부산이사청령 제12호」(1909.12.29)에서 언급됨.

24) 1885년 2월 을포(乙布) 「제4호인민간행이정재확의 건」으로 포고된 명령

25) 1905년(광무 9)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강압하여 체결한 조약으로 을사보호조약·제2차한일협약·을사오조약(乙巳五條約)·을사늑약이라고도 한다. 11월18일 일본의 한국 외교권 접수, 통감부(統監府)설치 등이 중요내용이다. 체결 이후 일본은 주한일본공사관을 철폐, 통감부로 이양하고 각지에 있던 영사관은 이사청(理事廳)으로 개편하는 통감부 및 이사청관제를 1905년12월20일에 공포함으로써 서울에 통감부가 개설되고 개항장과 주요도시 13개소에 이사청이, 기타 도시 11개소에는 지청이 설치되었다. 통감부는 종래 공사관에서 맡았던 정무(政務) 이외에도 조선보호의 대권, 관현의 감독권, 병력동원권도 보유하였다. 또한 조선의 시정을 감독하거나, 어떠한 정책의 시행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 참고: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26) 「통감부령 제48호 한국지방시정에 관한 이사관의 직무규정」(1906.11.18)에 의하면 이사관(理事官)은 한국인 이외 외국인에 관한 사무에 대해 통감의 명을 전하고 한국지방관현을 지휘감독하고, 집행한 사무에 관해 매월말일 통감에게 보고하도록 규정.

27) 부산일본거류지를 담당한 관청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거류지역 행정권 변천과정(개항 이후)

행정관청명	설치년도	설치근거조약	비 고
영사관(領事館)	1877	丙子修好條規	외무부소속
이사관(理事館)	1905	乙巳保護條約	통감부소속

공포된 토지 및 가옥과 시가지 관련 법령의 근거는 표 2-4.와 표 2-5. 그리고 표 2-6.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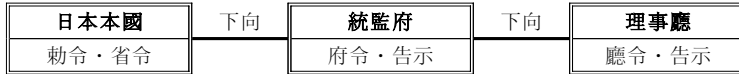


그림 2-8. 부산일본거류지에 시행된 명령체계

표 2-4. 영사관(1876~1906)에서 포고된 거류지 관련 명령

[출전 : 『부산부사원고』 및 『통감부법령자료집』]

시달 연월일	법령의 종류 및 명칭	주요 내용
1882.10.12	서정의 택지, 대도제한해제	서정5정목26~27번지와 36번지에 대한 대도(貸渡) 해제
1889.12.19	달 제12호 남빈토지 대도의 허가	남빈연안의 토지 대도(貸渡)의 청원을 허가
1891. 3	달 제7호 통공및단야공 영업지구의 건	통 및 대장간업 영업구역 설정
1891. 4	달 제11호 단야직영업자의 주거구역	대장간 직영업자의 주거지역 선정
1891. 6	달 제23호 가옥구조규칙	가옥 구조에 대한 규칙
1891. 7	달 제28호 주물공영업장소구역의 건	주물업 영업구역 설정
1891.10	포 제2호 단야주물공장취체규칙	대장간및 주물공장 규칙 설정
1894. 7	달 제10호 토장물옥 기타 가옥 건설의 건	흙·회 이용한 광 등의 가옥건설 규칙
1900.10. 5	달 제21호 금평정의 가도개설	금평정의 7~9번지 가도개설 획정 통지
1901. 4	달 제6호 하수도규칙	하수도 설치 규정
1901. 6.25	달 제11호 경부철도용지의 토지매매등에 관한 계고 기타	경부철도 용지확보를 위해 10리(韓里)이내경부철도에정선구역 내 매매 금지
1901. 7	달 제13호 부산항실구조사회규칙	부산항 실측조사회 규칙제정
1902.5.9	내달 제2호 인구증가와 신시가의 설정계획	각 지구 경계와 위치 파악, 측량을 계획
1902. 9	달 제18호 1필의 지내 가옥건설에 건	1필지 내에서의 가옥건설규칙
1902.11.27	고시 남빈 대화재지역의 지구개정	남빈정 일대 화재지역 신시가 및 도로개설 계획
1904. 4. 1	고시 제9호 부산해관지서를 초량에 설치	초량역에 지서설치를 해관장대리로 통고

* 주기 : 1904년 당시 '거류지의 각 정명과 일본인의 호구에 대한 보고'; 『慶尙道事情』에서 인용
 거류지 [동북부 : 북빈정(北濱町)
 [동부 : 본정(本町)·상반정(常盤町)·금평정(琴平町)
 [남부 : 변천정(辨天町)·입강정(入江町)·남빈정(南濱町)·행정(幸町)
 [서부 : 서정(西町)·통옥정(桶屋町)·단야옥정(鍛冶屋町)
 거류지의 : 대청정(大廳町)·보수정(寶水町)·부평정(富平町)

표 2-5. 통감부(1906~1910)에서 포고된 거류지 관련 명령

[출전 : 『통감부법령자료집』]

시달 연월일	법령의 종류 및 명칭	주요 내용
1906. 1.19	부령 제6호 이사청의 위치 및 관할지역	이사청 관할지역 고시
1906. 8.17	부령 제28호 이사청의 위치 및 관할구역 개정	이사청 관할지역 개정 고시
1906.11.15	부령 제42호 토지건물증명규칙	토지,건물의 매매,교환 또는 전당할 때 외국인일 경우 이사관의 사증을 받아야 함
1906.11.16	고시 제126호 토지가옥증명규칙	한국 칙령 제65호와 동일 발표됨
1906.11.18	부령 제47호 이사청지청의 명칭·위치 및 구역	이사청지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을 고시
1907. 2. 1	부령 제3호 토지건물증명규칙에 의하여 증명 또는 사증을 받은 전당의 집행은 한국 칙령 제80호 토지가옥전당집행규칙 및 법부령 제2호 토지가옥전당집행규칙 시행세칙에 따르는건	토지건물증명규칙에 의한 증명 또는 사증을 받은 전당의 집행에 대하여는 한국칙령과 법부령의 규칙을 따르도록 함
1907. 2. 1	고시 제18호 토지가옥 전당규칙시행세칙을 고시하는 건	한국 칙령 제80호와 동일 발표됨
1908. 5.19	고시 제77호 토지건물증명규칙 개정건을 고시하는 건	한국 칙령 제77호와 동일 발표됨
1908. 7.30	부령 제24호 토지건물소유권증명규칙	토지,건물의 매매,교환 또는 전당할 때 계약서를 이사관에게 통지를 주고 받아야 함
1908.10.10	부령 제45호 거류규칙	거류민단 지구내 거류민은 거류민단역소를 경유하여 제출

표 2-6. 부산이사청(1906~1910)에서 포고된 거류지 관련 명령

[출전 : 『통감부법령자료집』]

시달 연월일	법령의 종류 및 명칭	주요 내용
1908. 6.19	청령 제3호 지소대도규칙	일본인에 한해 전관거류지 지구 차용 가능
1908. 6.19	고시 제9호 부산일본제국전관거류지내 시가지도로구획개정	시가지도로구획개정의 구역·시가지도로구획개정을 위해 확장을 요하는 도로부지 해당지역을 알림
1908. 6.19	고시 제10호 부산일본제국전관거류지의 영대차지에 관한 건	지소대도규칙에 의해 현행거류지제도가 존속하는 한 영대차지(永貸借地)가능
1908. 8.22	청령 제4호 부산일본전관거류지의 부속지에 관한 건	복병산공동묘지를 거류지 부속으로 하여 지소대도규칙 (地所貸渡規則)을 준용함
1908. 9.18	청령 제6호 신시가지도로구획변경	1905년 7월 청령 제8호에 의해 공포된 신시가지도로구획을 변경
1908.10.15	고시 제18호 거류규칙에 의한 계서식	거류민의 신상명세(본적, 거류소, 가족관계, 호주의 직업)을 제출, 퇴거시 행선지를 상세기재 요구
1908.11.9	청령 제8호 거류규칙에 의한 계서식에 관한 건	통감부령 제45호 거류규칙에 관한 계서 보충
1908.12.24	고시 제24호 부산매축주식회사의 매립지 정명에 관한 건	새로 정명을 부여하지 않고 인접지역 고도정, 대창정, 매축신정 및 좌등정의 정명을 사용
1908.12.29	청령 제15호 호번호규칙 개정	주가에 호번호를 부여, 신설, 철거 및 등기는 거류민단역소에 신고, 1894년 4월 제9호는 폐지
1908.12.29	청령 제16호 토지건물증명사증신청수속	사증증명은 서면과 토지·건물 등의 제반요구 사항을 제출, 1901년 3월 고시 제1호를 폐지
1909. 3.11	청령 제2호 거류규칙시행지구 에 관한 건	시행지구의 구역을 일본인회 설치구역으로 하고 계서는 일본인회를 경유하여 제출
1909. 5.21	청령 제3호 부산거류민단구역내의 정명 및 구역을 변경하는 건	민단구역내의 도로 및 번지 등을 변경
1909. 5.27	고시 제13호 부산일본제국전관거류지내 시가지도로구획 추가	일부 도로의 추가 및 폐지
1910. 6. 1	청령 제5호 토지건물증명사증신청수속 개정	청령 제6호 토지건물증명사증신청 수속 보완
1910. 6. 1	청령 제6호 거류규칙시행지역 에 관한 건 개정	청령 제2호 거류규칙시행지역 보완

2-5. 거류지 거주민

부산일본거류지는 부산항을 중심으로 상업 및 무역업이 발달하여 일부의 행정을 위한 관청 등의 공공시설을 제외하고 모두 상업지역으로 형성·변화해 갔다. 거류지가 상업지역으로 변모해 가는데는 먼저 거류지 거주민의 성향과 특성이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부산 개항장의 근거였던 초량왜관은 쓰시마(對馬)의 도주(島主)가 관리하던 장소였고 대부분이 왜관에 머무르며 왕래하는 쓰시마 출신의 왜인들이었다. 다음 그림 2-9.를 통해 근대적 개항이 이루어진 후에도 여전히 거류지 거주민의 중심은 쓰시마와 그 인근 출신들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 아마도 초량왜관 이전부터의 연고권에 의해 정착이 유리하지 않았는가 추측되며²⁸⁾ 부산거류지에 거주했던 ‘현재 거주 일본인 본적별’ 조사 자료²⁹⁾를 근거해 나온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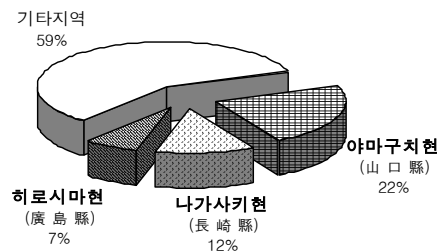


그림 2-9. 부산일본거류지 일본인 본적별 현황
[출전 : 『통감부통계연보』]

28) 쓰시마(對馬)섬과 그 인근의 이끼(壹崎)섬 출신이 많았다. 1871년 하이한치켄(廢藩置縣)과정에서 두 섬은 모두 나가사키켄(長崎縣)에 편입되었다.

29) 통감부, 『통감부통계연보』, 고도활판소, 1907, 16~17쪽

또한 1906년 당시 조사한 통계자료³⁰⁾를 근거로 작성한 그림 2-10.은 일본인 도항자(渡航者)의 한국도항 당시 직업, 그림 2-11.은 부산거류지 주민의 연령별 현황, 그리고 그림 2-12.는 부산거류지 정착민의 직업³¹⁾을 나타낸 것이다. 이들 자료들을 통해 부산거류지로 정착하러 온 일본인은 야마구치와 나가사키 출신의 20~30대 상업에 종사하는 남자가 많았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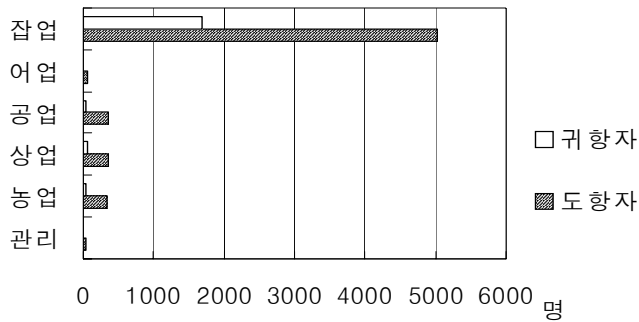


그림 2-10. 부산일본거류지 일본인 한국 도항자 및 귀항자[출전 : 『통감부통계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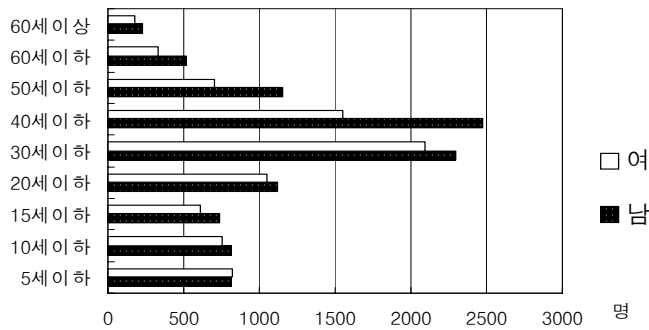


그림 2-11. 부산일본거류지 일본인 성별 및 연령별 현황[출전 : 『통감부통계연보』]

30) 통감부, 앞의 책, 29~31쪽

31) 통감부, 앞의 책, 21~2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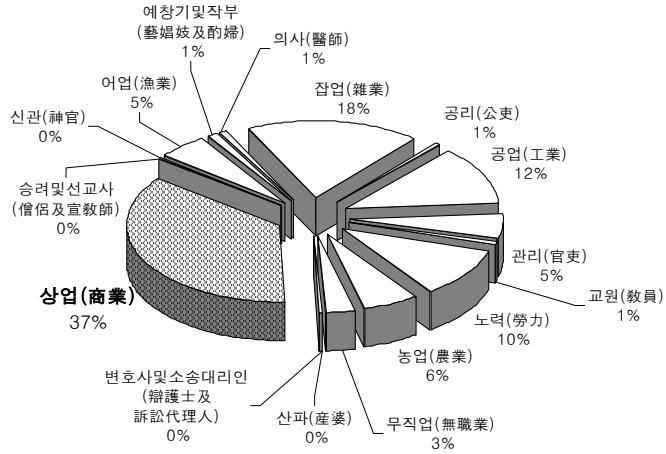


그림 2-12. 부산일본거류지 일본인 직업별 현황
[출전 : 『통감부통계연보』]

다음 그림 2-13은 앞선 결과의 보충으로서 부산일본거류지로 정착하러 온 일본인의 대부분이 상업종사자였음을 보여 주는 자료 중의 하나이다. 1906년 조사된 ‘등기건수(登記件數)’³²⁾를 의거해 작성되었고 일본인 거류주민 대다수의 소유재산이 토지와 건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그 중에서 건물에 중점적으로 투자·관리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표 2-7.과 표 2-8.은 당시 일본인 소유의 건물과 내역, 그 가치에 관한 상세 자료³³⁾로서 이 표들을 통해 당시 일본인의 거류지에서의 활동을 유추할 수 있다.

32) 통감부, 앞의 책, 102~103쪽
등기건수

	등록세(원)
토 지	1,695
건 물	5,978
회 사	969
기타상업	-

33) 통감부, 앞의 책, 10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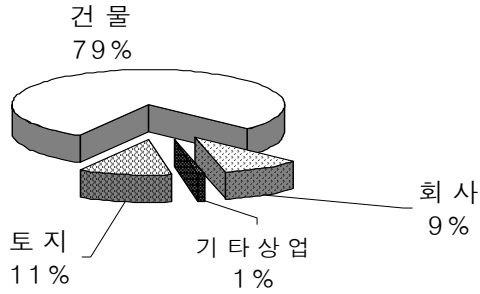


그림 2-13. 부산일본거류지 일본인 소유재산 구성내역
[출전 : 『통감부통계연보』]

표 2-7. 부산일본거류지 일본인 소유 건물 현황
[출전 : 『통감부통계연보』]

지 방 명	소유자수(명)	건물평수 (建物坪數)	가 격 (원)	평균 1평 가격(원)
부 산	1,035	89,359	3,126,560	35

표 2-8. 부산일본거류지 부동산등기 종류별
[출전 : 『통감부통계연보』]

내 용		토지	건물
소유권 (所有權)	매 매(賣買)	9	42
	가독상속(家督相續)	-	13
	증여유증(贈與遺贈)	-	3
	종래 보유된 소유권의 보존	24	78
저당권(抵當權)		18	

부산일본거류지가 당시 인근의 상업 중심지로 급속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일본정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뒷받침되었으며, 그 사례로서

1878년 6월 제일은행³⁴⁾ 부산지점(第一銀行 釜山支店)의 개설³⁵⁾과 1878년 9월에 일어난 부산해관수세사건(釜山海關收稅事件)³⁶⁾을 들 수 있다.

일본은 메이지이신(明治維新: 1867년~1912년) 이래 급격한 서구화를 진행하면서 내부자체에서도 급속히 진행되는 변화에 대해 많은 동요를 일으켰다. 소위 일본의 근대화는 많은 서구식 제도를 짧은 기간 안에 도입·적용 시켰다. 이 과정에서 자체적인 국립은행의 설립이라는 취지 하에서 설립된 제일은행은 설립 당시부터 정치적 목적이 두드러졌던 은행으로서, 서구화 과정에서 탄생한 정상재벌(政商財閥)이었던 미쓰이(三井)와 오노(小野)의 협동경영으로 운영³⁷⁾되고 있었다. 이들 대규모 재벌들의 출현과 활동은 소자본업자(小資本業者)들의 위축을 불러 일으켰고 이들의 불만을 일본정부는 해외개척이란 미명하에 정책적으로 거류지로의 이동을 추진하게 되었다.

소자본을 가지고 해외거류지로 이동해 온 일본인들에게는 자본의 원활한 공급이 절실했다. 조선의 경제사정을 지켜 본 일본정부는 제일은행 부산지점 개설을 통해 내부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고 조선에서의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고자 하였다. 정부와 은행의 도움으로 원활한 경제활동 터전과 함께 활동자금까지 확보한 일본거류민들은 막강한 자본력으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수 있었다.³⁸⁾

34) 원래 명칭은 제일국법은행(第一國法銀行)으로 일본 재무성 금전출납 대행은행으로 출발, 1909년에 조선은행으로 계승되었다. 인용: 부산상공회의소·부산경제연구원, 『부산경제사』, 1989

35) 부산지점의 개설에는 거류지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졌던 실업가 大倉喜八郎과 제일은행 총재이던 瀧澤榮一의 모종의 합의가 있었다. 사립은행(私立銀行) 형식으로 1876년 각 반액씩 총 5만원으로 설립한 후 1878년 6월 제일은행이 인수하는 형식으로 지점개설을 하였다. 이것은 은행업의 시초로 이후 각 개항장에 지점이 설치되었다. 인용: 박원표, 『부산금융사』, 향도부산 제7권, 1969, 18쪽

36) 해관이란 단어는 본래 ‘청(淸)나라가 외국 무역을 위하여 항구에 설치한 세관’을 뜻하는 말이다. 참고: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우리 나라에서는 초기 세관을 통칭하였고, 두모포에 설치되었다. 수세사건은 해관에 의한 세금 징수에 대해 일본이 항의를 일으킨 사건으로 후일 해관이 폐쇄되고 수세가 중단되었고 1883년이 되어서야 다시 재개될 수 있었다.

37) 第一銀行, 『第一銀行五十年史』, 東京, 1926, 序文, 재인용: 부산상공회의소·부산경제연구원, 『부산경제사』, 1989, 301쪽

38) 大池忠助와 迫間房太郎과 같은 사람은 무일푼으로 젊은 나이에 건너와 50여 년

제일은행의 지점개설에 이어 민간의 사립은행 지점들도 점차 개설되기 시작하였다. 부산일본거류지에 개설되었던 은행업관련 통계³⁹⁾에 의해 밝혀진 회사들은 표 2-9와 같다.

표 2-9. 1909년 당시 부산 일본거류지에 개설된 일본 은행들

[출전 : 『조선총독부통계연보』]

회 사 명	소 재 지	창업연월	조 직	본사소재지
제일은행부산지점(第一銀行釜山支店)	본정	1878. 6	주식	東京府
십팔은행부산지점(十八銀行釜山支店)	금평정	1897. 7	주식	長崎縣
백삼십은행부산지점 (百三十銀行釜山支店)	입강정	1896.11	주식	大阪府
주방은행부산지점(周防銀行釜山支店)	행정	1908. 7	주식	山口縣

이들 은행 중에서 십팔은행(十八銀行)과 주방은행(周防銀行)은 각각 나가사키와 야마구치에 본사를 두는 은행들로서 위의 그림 2-9와 비교해 보면 이들 양 지역 출신자가 월등히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은행들의 진출은 소자본을 가지고 거류지로 이주하는 일본인들에게 많은 자극과 도움이 되지 않았나 추측된다.

다음 그림 2-14.는 일본인 거류주민의 종사직업과 부의 축적과정에서 나타난 세금납부사항으로서 부산일본거류지가 어떤 산업형태로 발전해 나가고 있었는가를 추측할 수 있다. 1906-7년에 조사된 영업세(營業稅) 납세통계⁴⁰⁾에서 10원 이상 납부자의 70%이상이 상업관련 종사자였다는 것이다. 조사 당시(1907년) 미곡상품(米穀上品)의 1석(石) 가격이 16원42전인 것⁴¹⁾을 고려한다면 상당한 거류민들이 상업에 종사하여 부를 획득했음을 보여

간 상업과 무역업으로 많은 부를 축적하여 일약 부산의 명사반열에도 올랐다. 부산상공회의소·부산경제연구원, 『부산경제사』, 1989, 337쪽, 353쪽, 재인용 : 부산상공회의소 홍보부편, 『부산경제사료집』, 1981, 26쪽

39)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통계연보』, 동경제본합자회사, 1910, 299쪽

40) 부산상공회의소·부산경제연구원, 『부산경제사』, 1989, 336쪽

41) 부산상공회의소·부산경제연구원, 앞의 책, 당시 일본통화 엔(당시 통계 및 기록은 모두 圓으로 표기)은 1871년 신화폐조례의 제정으로 종래의 료[兩]를 대신하여 새로운 화폐단위로서 등장하였고, 1897년 화폐법에 의해 금본위제도가 확립, 순금 75mg을 1엔으로 정하였다.

주고 있다.

부산에 거주했던 일본인들은 그들이 이주하는 나라에 적응하려 하지 않고 그들의 풍속을 그대로 사는 곳에 옮겨 지키는 경향이 강했다. 모든 것이 전형적인 일본이었고 고향에서와 똑같이 집을 짓고 먹고 자고 마시고 하였다고 기록⁴²⁾은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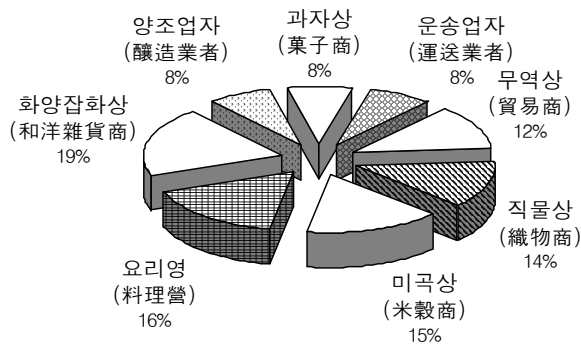


그림 2-14. 부산일본거류지 일본인 중 10원 이상 영업세 납부자 직업별 현황[출전 : 『부산경제사』]

42) 아손 그랩스트, 김상열 역, 『코리아코리아』, 미완, 1986, 24~25쪽

3. 여러 시설의 성립과 변천

부산일본거류지 시기에 설립된 건축은 현재 거의 남아있지는 않지만 관청이나 공공시설을 비롯한 일부 건물들에 관한 기록들이 남아있어 몇 장의 사진으로 다양한 종류의 건축물이 건립되었다는 것을 알려준다. 남겨진 자료들을 토대로 건립된 위치나 그 규모를 짐작하고 참고로 하여, 이 장에서는 거류지 당시에 세워졌던 건축들에 대한 설립배경을 포함한 기초자료조사부터 시작하여 부산에서의 근대건축이 어떻게 생성·변화해왔는가를 보여준다.

일본의 경우 1859년 서구에 의한 요코하마(橫濱)개항 이후 서구를 따르는 국가의 근대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메이지(明治)유신이 나타나 건축분야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1871년 공부성(工部省)내 공학료(工學寮)로 시작된 일본인 건축기술자의 양성기관은 1877년 공부대학(工部大學)으로 개칭하여 1879년 최초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이후 일본인 건축가들은 서양의 양식주의건축을 모방하는데 역점을 두었고, 국위를 안팎으로 과시하기 위해 관청집중계획(官廳集中計劃)을 계획하였다.⁴³⁾

개항장이나 거류지 설치의 주된 목적은 통상과 무역이었고 이 활동을 위해 상가나 주거 가옥, 감독을 위한 관청 건물들이 요구되었다. 거류지제도를 처음 시행했던 서구제국(西歐諸國)은 단지 통상과 무역 활동의 편의제공을 위해 활용하였으나 일본은 그 단계를 넘어 침략성을 부여하여 부산에 적용하였다. 거류지 설정 이후 가장 먼저 초량왜관의 관수왜가 부지 위에 그들의 국위(國威)를 과시하는 관리관청을 세웠고 그 건축물은 1910년 개항장으로서 그 역할을 마칠 때까지 일본거류지 행정의 중심역할을 하였다.

근대적 개항 이후 대(對)일본과의 무역전개는 시기에 따라 단계적으로 변화를 보여왔으며, 일본이 한국의 무역을 독점하던 1883-4년까지는 조약의 규정에 의해 수입된 일본상품에 대한 관세(關稅)가 부과하지 아니하고

43) 村松伸, 윤인석 역, 앞의 논문

민간의 소매상인이 무역 전체에 중요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 그러나 1882년 5월 한미통상조약(韓美通商條約)을 위시하여 1883년 9월에 한청상민무역수륙장정(韓淸常民貿易水陸章程) 체결과 세관(稅館)설치는 일본도 외국과 동일한 위치의 무역관계로 들어감으로써 무역의 독점이 붕괴되었다.⁴⁴⁾ 이후 일본은 초기 소자본경영에 대한 경제체제의 변화가 요구됨을 느끼게 되어, 후진적인 거래체제에서 조직적인 경제구조로의 변화를 위해서는 부산에 통상과 무역을 위한 경제시설 설치가 요구되었다.

1885년 일본의 공부성이 폐지되고 관청건축을 1886년 임시건축국(臨時建築局)이 맡아 이에 민간회사가 청부를 맡았다. 1887년 ‘일본토목회사’가 설립되었고 이후 오오쿠라쿠미(大倉組)로 발전하여 관청건축에서 토목, 설계, 시공까지 독점하였고 학사(學士)출신을 고용하여 기술력을 가진 종합건설업자의 시초가 되었다.⁴⁵⁾ 일본인 건축가의 해외진출은 부산일본거류지도 예외는 아니어서 1903년 발행된 거류지 관련 지도⁴⁶⁾에 살펴보면 대청정의 1등 도로변에 ‘오오쿠라쿠미(大倉組)’사옥이 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부산일본거류지의 최초라고 볼 수 있는 신시가지계획인 부산일본영사관령 내달(內達) 제2호 「인구증가와 신시가지의 설정계획」(1902.5.9)으로 일본거류지의 각 지구 경계와 위치를 파악하여 측량을 계획되었다고 한다.

해외로 진출한 일본인 건축가들은 침략의 앞잡이로서 대만이나 한반도 민간 사람들이나 고용된 외국인(眞水英夫, 福井房一 등)과는 입장이 서로 달랐지만 그들 건축가의 의식, 목표, 기술은 일본에 남아있던 건축가들과 마찬가지로 큰 차이점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한다.⁴⁷⁾

부산일본거류지에서의 통상과 무역은 초기에는 소자본업자들에 의한 양국 물품간의 교환무역 수준이었고, 무역순환은 일본이 한국에서 쌀이나 콩, 소가죽 등 원자재를 수입하고, 영국에서 가공된 인도의 면포(綿布)같은 공

44) 彭澤周, 『明治初期日韓淸關係の研究』, 東京, 塙書房, 1967, 277~278쪽, 재인용 : 부산상공회의소·부산경제연구원, 『부산경제사』, 1989, 303~304쪽

45) 村松伸, 윤인석 역, 앞의 논문

46) 손정목, 앞의 책, 103쪽 지도

47) 村松伸, 윤인석 역, 앞의 논문

산품들을 수출하였다. 여기서 화폐(貨幣)의 이용은 ‘한전(韓錢)은 일본통화 →한국으로의 수출품(면포)→한전→일본으로의 수출품(쌀·콩·소가죽 등) →일본통화’라는 식의 순환과정을 필요로 하는 상품이었다.⁴⁸⁾ 그리고 이러한 무역에는 선박의 이용이 필수적이었다. 이에 부산항을 중심으로 무역과 통상 관련업자들이 모여들었고 시가지가 형성될 수 있었다. 1904년에 편찬된 ‘경상도사정’에 의하면 당시 부산항은 일본에서 떠나오는 선박의 기항지(寄港地)였다. 일본의 고베(神戸)를 기점으로 나가사키(長崎)에서 한국의 부산과 인천, 청의 도시들에 이르는 국제적 항로⁴⁹⁾와 일본의 오사카(大阪)를 기점으로 해서 한국의 부산, 인천 등 일본거류지 여러 곳을 경유하는 항로⁵⁰⁾, 그리고 2척의 기선(汽船)이 이루는 대가기선(大家汽船)에 의한 명령항로와 그 외 2개의 기선항로와 연안선 항로⁵¹⁾가 더 있었다. 부산은 일본의 무역중심지와 한국의 일본거류지 설치지역과의 교역이 용이하여 교통관련 지점이나 취급상점이 항구를 중심으로 설립되었다.⁵²⁾

부산항은 부산일본거류지를 한국과 일본 및 중국에 이르는 통상과 무역을 위한 요지로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고, 또한 일본인 건축가의 성장과 해외로의 진출은 거류지의 시가지 확장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48) 부산상공회의소·부산경제연구원, 『부산경제사』, 1989, 296쪽

49) 부산에 설립된 일본우선회사(日本郵船會社) 명령항로(命令航路)이다. 부산일본영사관, 『경상도사정』, 1904, 제27 교통 및 통신

50) 부산에 설립된 오사카상선회사(大阪商船會社) 명령항로(命令航路)이다. 이 회사는 항로를 3개선을 가졌는데 오사카~진남포선, 오사카~군산선, 오사카~성진선이 그것이다. 이들 모두가 부산을 경유하였다. 부산일본영사관, 『경상도사정』, 1904, 제27 교통 및 통신

51) 동청철로회사(東淸鐵路會社)의 기선 2척이 포염(浦鹽)을 기점으로 부산, 원산, 장기, 인천 등을 경유하여 천진, 상해에 이르렀으며, 대천운수주식회사(大川運輸株植會社)는 기선 1척으로 큐슈철도(九州鐵道) 연결선으로 부산과 당진간을 매주 2회, 매월 8회 왕복하여 쓰시마의 이즈하라(嚴原)에 기항하였다. 연안선항로로 두사조(頭司組)의 기선이 있어 진남포, 인천, 목포, 부산을 거쳐 원산까지 이르렀다. 부산일본영사관, 『경상도사정』, 1904, 제27 교통 및 통신

52) 교통관련 상점으로 일본우선회사지점과 오사카상선회사지점, 대치회조부(大池回漕部), 유천길회조부(由川吉回漕部), 삼목회조점(三木回漕店), 국중상점(國中商店), 부산운수조(釜山運輸組)가 있었다. 부산일본영사관, 『경상도사정』, 1904, 제27 교통 및 통신

3-1. 관청(官廳) 및 공공시설(公共施設)

3-1-1. 관리청 · 영사관 · 이사청

근대적 개항 이후 일본은 거류지로 설정된 왜관영역에 중요한 시설물을 설치하기 시작했는데 가장 먼저 건립된 건물이 과거 관수왜가의 부지 위에 건립된 관리청(官理廳)⁵³으로 화양식(和洋式)을 절충한 목조양풍건축(木造洋風建築)으로 진한다⁵⁴. ‘경상도사정’에 의하면 양풍 2층 건축(여기서는 樓라고 표현함)으로 관원의 관사가 이와 연결되고 고지에 있어 조망이 훌륭하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1879년 3월에 착공되어 10월 20일 준공하였고 다다미를 깔 일본식 건축물이었으며 그 건물모습은 그림 3-2와 같다. 1880년 4월 영사관(領事館)⁵⁵이 설치되었고, 앞서 언급한 관리청 부지에 2층 양옥 건물이 세워졌으며 후일 이사청(理事廳)건물⁵⁶로도 쓰여졌다. 부산거류지 설정 시기 일본의 건축은 대부분 의양풍⁵⁷(擬洋風)이 다수였다.

1906년 설치된 이사청은 부산일본거류지만 관할하는 앞서 영사관과는 달리 한국땅에 행정관청으로 설치되었고 그 자체로 동래부(東萊府)의 위상을

53) 1873년 일본정부는 외무주재관을 파견하여 초량왜관의 관리를 감독하다 개항 이후 1874년 관리청을 두고 관리관을 파견하였다. 1880년까지 존속하였고 영사관이 대체 되었다. 도영주·윤일주, 「1910년 이전의 부산의 양풍건축」, 향도부산 제3호, 1963, 246~247쪽.

54) 관리청(혹은 이사관청, 관리관청)은 1879년 3월 1일 착공하여 1879년 10월 20일 준공되었다. 도영주·윤일주, 앞의 논문, 256·262~264쪽.

55) 목조 2층 구조로 크기는 321.95평, 1884년 5월 7일 착공하여 1884년 10월 3일 준공되었다. 1936년 시청사가 준공될 때까지 부산부청(釜山府廳)으로 사용됨. 도영주·윤일주, 앞의 논문, 256·264~267쪽.

56) 여기서 두 가지 이론이 나타나는데 건축물의 대지는 동일하다. 도영주·윤일주의 논문에서는 1884년 영사관 건물이 그대로 이사청 건물로 쓰여졌고 이어 부산부청으로 이어졌을 것이라는 설과 김갑득의 논문에서는 부산이사청고시 제19호 「부산이사청 사무를 부산금평정 및 부산경찰서 누상에서 취급하는 건」(1909.6.29)과 부산이사청고시 제39호와 제40호 「부산이사청사무를 신청사에서 취급하는 건」(1909.12.26)을 근거로 1909년 신축론을 제시하고 있으며 1909년 신축설의 이사청 건물은 321.95평의 목조 2층 구조로 되어 있었다고 한다.

57) 의양식은 소위 ‘동량대목(棟梁大木)’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당시 일본인의 가옥은 관아건물이나 공공건물을 제외하고 일본전통건축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함. 도영주·윤일주, 앞의 논문, 247·252쪽

격하시키는 충분하였다. 이사청의 위상은 관할구역을 통해 알 수 있으며 최초 부산이사청의 구역은 경상도 동북부와 강원도 남부에 이르렀고⁵⁸⁾ 이어 개정⁵⁹⁾에 의해 표 3-1.과 같이 변경되었다. 이사청의 설치로 인해 동래 지역 행정중심은 거류지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사청 책임자였던 이사관(理事官)은 통감에 의해 일본인이 임명되었고 이사관에 대한 한국 지방시정(地方施政)에 관한 권한은 통감부령에 의해 규정⁶⁰⁾되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이사관은 한국인 이외의 외국인에 관한 사무를 통감의 명령을 계승하여 한국 지방관헌을 지휘 감독할 수 있으며, 한국 지방시정에 관하여 해당 지방관헌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그 사무의 집행에 방조감시(幫助監視)할 수 있으며 매월말일(每月末日) 통감에게 모두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다.

58) 통감부령 제6호 「이사청의 위치 및 관할구역」(1906.1.19)에 의한 내용, 통감부령 제28호에 의해 대구이사청이 신설되어 영역이 축소되었다.

명 칭	위치	관 할 구 역
부산이사청 (釜山理事廳)	부산	경상도 남부 일대의 지역 김해·밀양·영산·창령·현풍·고령·성주·지례의 각 군으로서 서남부와의 경계선으로 함. 단 그 각군은 본관구에 속함. 강원도 남부 일대의 지역 평창·정선·삼척의 각 군으로서 북부와의 경계선으로 함. 단 각 군은 본관구에 속함.

59) 통감부령 제28호 「이사청의 위치 및 관할구역 개정」(1906.8.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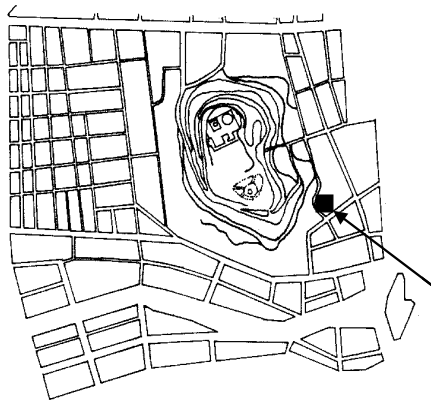
60) 통감부령 제48호 「한국 지방시정에 관한 이사관의 직무규정」(1906.11.18)

표 3-1. 부산이사청 관할구역 내용현황

명 칭	위치	관 할 구 역
부산이사청 (釜山理事廳)	부산	<p>경상도 남부 일대의 지역 북부는 대구이사청 관할에 접함. 서남부는 김해·밀양·영산·창녕의 각 군으로서 마산이사청 관구에 접함. 단 그 각 군은 본관구에 속함.</p> <p>경상도 동부연해안 일대의 지역 서부는 영일·홍해·청하·영덕·영해의 각 군으로서 대구이사청 관구에 접함. 단 그 각 군은 본관구에 속함.</p> <p>강원도 동부연해안 일부의 지역 북부는 원산이사청관구에 속함. 서부는 평해·울진·삼척의 각 군으로서 대구이사청 관구에 접함. 단 그 각 군은 본관구에 속함.</p>



그림 3-1. 부산이사청 소재지와 관할구역
(1909년 당시)



日本領事館 釜山理事廳[1880년 신축]
현재 없음 * 음식점 청림 부지사용

그림 3-2. 부산일본영사관

[그림출전 : 최해군, 『부산에 살으리랏다』, 부산을 가꾸는 모임, 2000, 203쪽]

3-1-2. 전신국 · 경찰서 · 거류민단역소

부산에서의 전신국 개설은 1883년으로 제국전신국(帝國電信局 : 원래 명

청은 부산우편전신국)이었으며 서정2정목 50번지의 토지에 신축 건물로 세워졌다.⁶¹⁾ 현재 그 자리에는 한국통신 소유의 건물이 들어서 있다.

거류지 설정 이후 일본은 ‘문명의 기관(文明の一機關)’으로 표현하는 우편국을 부산에 개설한 것은 1876년 2월 2일로서 ‘우편세를 내지(內地, 일본)와 동일하게 상정하여 초량공관 즉 부산관리청 내에 설치한다’고 하였다. 이와 함께 우편선(郵便船) ‘낭화호(浪花號)’를 전용선으로 하였다고 하며 우편업무는 11월에 개시하였고 우편선은 매월 1회 운항하였다. 1883년 전신분국(電信分局)이 설치되었는데 이것은 1887년 전신분국과 우편국이 합병되면서 서정2정목으로 이전하여 ‘부산우편전신국(釜山郵便電信局)’이라 개칭하였고 실질적으로 서정으로 이전한 것이라고 한다.⁶²⁾

그런데 1908년 지도⁶³⁾에 의하면 조선전신국(朝鮮電信局)⁶⁴⁾이 제국전신국 건물 맞은편에 표시되고 있으며 제국전신국은 일본우편국(日本郵便局)으로 기재되어 있다. 도영주·윤일주의 연구⁶⁵⁾에 의하면 부산에서의 우편국 역사를 1876년 11월 1일 부산에 최초 제국우편국(帝國郵便局)이 창설되어 관리청 건물 내에 설치되어 1884년 제국전신국과 우편사무가 합병되고 부산우편전신국(釜山郵便電信局)이 되었다. 이후 1905년 5월 한일통신기관합동협약이 성립⁶⁶⁾되어 대한제국 소속의 통신기관부산우편사(通信機關釜山郵便司) 및 부산전보사(釜山電報司)의 사무가 승계되어 부산우편국(釜山郵便局)⁶⁷⁾이라 개칭되어 통감부가 관리하였다고 한다.

61) 거류민총대에게 23원86전2리를 주고 사들인 토지에 썼으며 1883년 6월 1일 착공서를 시달하였고 실지 착공일은 미상이며 1884년 2월 15일 준공하였고 목조 건물로서 면적은 63.75평이었다. 도영주·윤일주, 앞의 논문, 257·264쪽

62) 부산부, 『부산부사원고』 5권 개항편, 민족문화, 1987, 191~192쪽

63) 통감부철도관리국, 『한국철도노선안내』, 1908년, 부산일본거류지평면도

64) 이 건물은 거류지 당시 행정영역에선 행정2정목에 속한다. 電信은 郵便局에서 취급하는 통신종류의 일종으로 電信事務를 당시에는 郵便局 혹은 郵便所에서 취급하였으며 우편과 전신이 동시 혹은 분리되어 취급되기도 하였다.

65) 도영주·윤일주, 앞의 논문, 277쪽

66) 한일통신합동조약(韓日通信合同條約)이 체결됨에 따라 한국의 우편기관은 일본의 손에 넘겨졌으며 이때 일본에 넘겨진 통신기관은 420개였다.

67) 통감부고시 제120호 「인천등 12개 우편국·제주등 5개 우편국출장소·인천정차장등 10개 우편취급소·동래등 4개 우편전보수취소·인천등 19개 우체소의 위치명칭변경」(1906.10.26)에서 부산우편국은 경상남도 동래부 부산일본거류지 내에 위치한다고 명시.

통감부법령자료에 의하면 부산일본거류지 내의 우편관련 기관으로는 부산우편국이 서정2정목에⁶⁸⁾, 부산본정우편국취급소는 본정1정목⁶⁹⁾에 위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스웨덴출신의 기자 아손 그랩스트의 기록⁷⁰⁾에 의하면 1905년 초 부산항 근처에는 부산우체국⁷¹⁾이 있었으며 단층건물의 사람 키 높이의 시멘트로 된 담이 둘러싸인 유약질이 된 바다 녹색빛의 기와집이었다고 되어있다. 그리고 우체국장은 프랑스어를 할 줄 아는 녹색두루마기를 입은 한국인이라 표현하고 있다.

1905년 기록된 ‘경상도사정’에서도 한국우체사 및 전보사(韓國郵遞司及電報司)는 행정2정목에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아마도 조선전신국을 지칭하는 것 같다. 대한제국 정부가 세운 우체국과 일본이 세운 우체국은 서로 다른 위치에 서 있었으며 그림 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한제국이 세운 것은 한식 기와구조의 건물이었다. 1906년 이후 일본이 세운 우편국이 부산우편국으로 계승되어 현재까지 기록에 남아있는 것이다. 부산우편국(釜山郵便局)은 서정에서 다시 매립지인 대창정으로 이전하여 1910년에 신축 우체국이 들어섰다.

통감부훈령 제1호 「통감부우편국장직무장정」(1907.1.10) 제3조 4항에서는 우편국은 우편소, 우편 및 전신취급소, 우체소, 우편 및 전신수취소 및 전화소를 관리하며 5항에서 부산우편국은 지정구역을 경상남도, 경상북도, 강원도 내 울릉도, 전라남도 내의 거문도로 한다고 규정.

68) 통감부고시 제112호 「인천·부산우편국의 위치 개정」(1907.8.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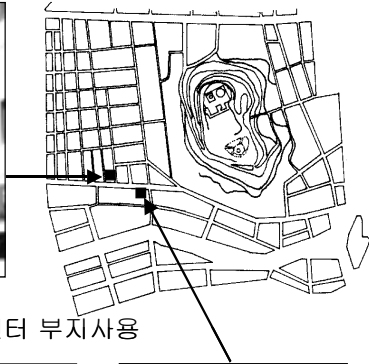
69) 통감부고시 제101호 「경성·남대문·군산·대구·원산우체국, 경성본정·경성신정·용산원정·평양대화우편소, 부산본정우편취급소 위치 개정」(1907.7.24)

70) 아손 그랩스트, 앞의 책, 26~30쪽

71) 한국에서 우편제도 기원은 1884년(고종 21)에 설치된 우정총국(郵政總局)이다. 1895년(고종 32) 6월 통신국 소속으로 24개의 우체사(郵遞司)가 설치됨으로써 근대적인 우편업무가 다시 시작되었다. 1900년에는 그 수가 38개소에 이르렀으나, 1905년 강압에 의해 일본과 한일통신합동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일제에게 통신권을 빼앗기게 되었다. 참고: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帝國電信局 [1884년 신축]
현재 없음 * 부산정보통신센터 부지사용



朝鮮電信局 (1895년 개설)
현재 없음 * 한일빌딩 부지사용

그림 3-3. 일본우체국과 조선우체국
[그림출전 : 아손 그랩스트, 김상열 역, 『코리아코리아』, 미완, 27쪽]

일본이 세운 경찰서(警察署)는 1880년 4월 영사관 경찰서로 창설되었고 창설당시 초량왜관 시기 세워진 건물에 입주해 있다가 영사관 맞은편 대지에 1890년 4월 14일 신축건물을 착공하여 9월 30일 준공하였다. 이 건물은 1903년 11월 화재로 소실되어 그 터에 다시 건물을 세워 1904년 11월에 준공하였으며 100평 면적에 목조2층 건물이었다.⁷²⁾ 1906년 이후 경찰서는 이

사청 소속으로 변경되면서 그 위치가 제도화되었고⁷³⁾ 당시 부산일본거류지에는 경찰서 1개소와 순사주재소(巡査駐在所) 7개소가 있었으며 경찰서 인력으로는 경시(警視) 1인과 경부(警部) 4인, 순사(巡査) 67인이 소속되어 근무하고 있었다.⁷⁴⁾

근대적 개항 이전인 1873년 초량왜관에는 일본인들의 모임기관이 설립되어 있었다. 이사관이 거류지를 담당하면서 1876년 거류지회의소(居留地會議所)를 설치하고 거류민 자치업무를 맡았으며 1877년 회의소 내에는 거류민 취학아동을 위한 수제학교(修濟學校)가 교사(校舍)를 일부 대여 받기도 하였다. 1881년 총대역소(總代役所)라 불리웠고 1901년 거류지역소(居留地役所)로 다시 1905년 거류민역소(居留民役所)로 변경되었다가 1906년 이사청의 설립과 함께 부산거류민단역소(釜山居留民團役所)가 되었다. 거류민단의 명칭과 건물의 변경 내역은 표 3-2와 같다.

표 3-2. 부산일본거류지 거류민 자치기관 변천과정

명 칭	설립연도	건물위치	건 물 내 용
거류지회의소	1876년	상반정	이사관청 일부 대여 사용
보장두취역소	1879년	상반정	명칭만 변경
총대역소	1881년	본정2정목	1889. 9~1890. 2. 6·목조2층
거류지역소	1901년	금평정	1901.1.11 준공·목조2층
거류민역소	1905년	금평정	위와 동일건물
부산거류민단역소	1906년	금평정	위와 동일건물

통감부와 이사청 설치 이후 1906년 7월에 시행된 「거류민단법시행규칙」⁷⁵⁾에 의해 부산거류민단은 설치되었다. 시행규칙을 내용을 살펴보면 통감과 이사관의 감독 하에 거류민단의 설치 및 폐지가 이루어지며 거류민단 지구 내에 거주하는 자는 그 거류민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거류민

72) 도영주·윤일주, 앞의 논문, 267~268쪽

73) 통감부훈령 제3호 「통감부·이사청 경찰관의 예식·칭호·복장·제정휘장·순열·비상소집·상여·징벌·점검·훈수·정근증서·대검심득·휴가는 청부원경찰관의 예에 의하는 건」과 통감부훈령 제4호 「이사청경찰관·경찰분소 문표양식」(1906.4), 통감부령 제14호 「통감부 및 이사청 순사임용규칙」(1906.6)

74) 통감부, 앞의 책, 58쪽

75) 통감부령 제21호 「거류민단법시행규칙」(1906.7.14)

은 거류민단의 재산 및 조영물의 사용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그 부담에 대해 분임할 책임을 가진다. 책임자는 민장(民長)이라 하는 임기 3년의 1인이 거류민회에서 선출하여 통감의 인가를 받아야했으며 민장 아래 조역(助役) 및 회계역(會計役)은 임기 3년의 각 1인씩 민장의 추천에 의해 거류민회에서 선출하여 이사관이 인가하도록 하였고 민단역소에는 서기(書記)가 서무(庶務)를 보며 민장이 임면(任免)하였다. 거류민회 의원(議員)은 임기 2년의 명예직(名譽職)으로 8인 이상 24인 이하로 이사관이 정하도록 하였고, 선거권을 가지는 거류민은 피선거권도 가지나 관리나 거류민단 이원(吏員), 신관(神官)이나 신직(神職), 승려(僧侶) 기타 제종교사(諸宗教師) 그리고 학교 직원(學校職員)에 한해 주지 않았다. 또한 「거류민단법시행규칙실시심득」 76)에서는 거류민회위원의 정수를 표준으로 규정77)하고 있으며 거류민단세(居留民團稅)에 관한 내용도 언급78)하고 있다. 「거류민단에 관한 명칭」 79)에서는 거류민단 명칭과 그 소속 임원에 대한 명칭을 정리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그림 3-4와 같다.80)

76) 통감부훈령 제15호 「거류민단법시행규칙실시심득」 (1906.7.15)

77) 제7조 거류민회위원의 정수는 표준에 의해 이를 정함.

1. 인구 2만 이상의 거류민회 의원 24인
2. 인구 1만 이상의 거류민회 의원 20인
3. 인구 5천 이상의 거류민회 의원 16인
4. 인구 1천 5백 이상의 거류민회 의원 12인
5. 인구 1천 5백 이하의 거류민회 의원 8인

78) 제8조 거류민단법시행규칙 제38조에 의하여 발포하여야할 거류민단규칙 중 규정한 과료의 액수는 그 거류민단세에 관한 것에 있어서는 25원 이하로 하고 기타의 것은 5원 이하로 함. 거류민단세에 대한 내용은 본 논문의 교육시설에서 다룬다.

79) 통감부훈령 제17호 「거류민단에 관한 명칭」 (1906.7.29)

80) 거류민단역소의 명칭변경은 6차례, 직명변경은 7차례에 걸쳐 13명의 감독자가 바뀌었다. 감독자의 명칭변경은 아래와 같다. 참고: 大曲美太郎, 김의환 역, 『부산 고적과 유물』, 향도부산 제7호, 1969, 267쪽

연도	1876년	1879년	1881년	1882년	1894년	1901년	1904년	1906년
명칭	會議所	保長頭取役所	總代役所	總代役所	總代役所	居留地役所	居留民役所	居留民團役所
직명	用番	保長頭取	保長總代	居留人民總代	居留民總代	居留民長	居留民長	居留民團民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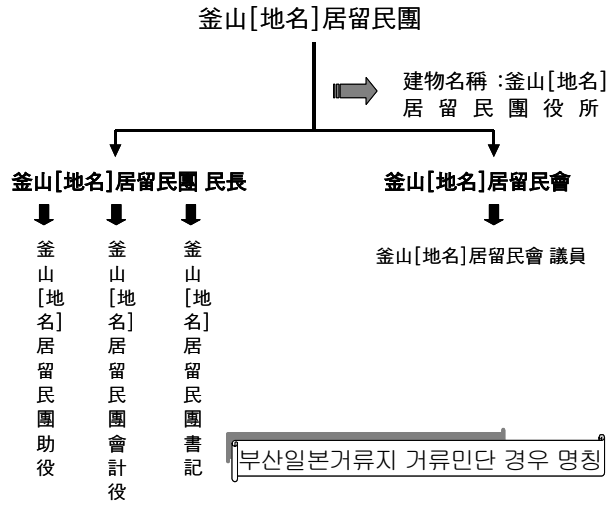


그림 3-4. 일본거류민단 명칭



왼편건물이 거류민단역소

釜山居留民團役所와 警察署 [1901년과 1904년 신축]
현재 없음 * 박용상피부비뇨기과의원 부지사용

그림 3-5. 부산일본거류민단과 부산경찰서
[그림출전 : 도영주·윤일주, 「1910년 이전의 부산의 양풍건축」, 향도부산 제3호, 1963, 268쪽]

부산거류민단은 1906년 통감부 고시로 설립⁸¹⁾하게 되었고 구역도 지정받

81) 통감부고시 제76호 「경성·부산·진남포·군산거류민단 설립」(1906.8.2)

았다. 거류지의 확대는 곧 거류민단의 지구 확장과의 연계되었으며 거류지로의 일본인의 급격한 이주는 거류민단의 확대와 함께 하였다. 거류지와 거류민단 구역의 확장 근거는 여러 법령들⁸²⁾을 통해 알 수 있다. 표 3-3.⁸³⁾은 부산거류민단 설립 당시 규모를 짐작하게 해 주는 자료로서 부산이사청 관할구역 인구의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거대 자치단체였다고 할 수 있다. 거류민단법 시행지역 이외에 사는 일본인은 따로 일본인회(日本人會)⁸⁴⁾를 조직하였으며 조직된 지역은 방대하였다. 당시 얼마나 많은 일본인이 이주해와서 살았는지를 짐작할 수 있으며 그들의 생활기점은 이사청과 거류민단이 설립되어 있던 부산이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표 3-3. 1906년 당시 부산이사청과 부산거류민단 인구비교

	호 수	남(명)	여(명)	합계(명)
부산이사청	4,599	10,152	8,084	18,236
부산거류민단	3,933	8,451	7,251	15,702

3-1-3. 헌병대 · 상업회의소 및 상품진열관

부산거류민단의 관할영역

명 칭	관할이사청	민 단 구 역
釜山居留民團 [1906년8월15일 설립]	부 산 (釜山)	부산전관거류지(釜山專管居留地) · 구관(舊館) 절영도(絶影島) · 초량(草梁) · 부산진(釜山鎭)

82) 부산일본거류지의 공식 확장에 관한 법률은 부산이사청령 제4호 「부산일본제국전관거류지의 부속지에 관한 건」(1908.8.22)과 부산이사청령 제1호 「부산일본제국전관거류지의 부속지에 관한 건」(1909.2.3) 이 있으며, 부산거류민단 지구 변경은 통감부고시 제16호 「부산거류민단 지구변경」(1908.2.22)이 있다.

83) 통감부, 앞의 책, 24쪽

84) 부산이사청령 제7호 「일본인회령」(1908.10.20)에 의하면 거류민단법 시행 이외에 거주하는 일본인은 교육 · 위생 기타 공공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일본인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설립시 일정지역 이외 독립생계를 영위 하는자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3명 이상의 창립위원을 세우도록 하였고 설립시 지역내 거주하는 모든 일본인은 회원이 되도록 하였다. 부산이사청령으로 설립된 일본인회는 그 해 12월 동래일본인회를 시발로 울산, 김해, 밀양, 삼랑진, 낙동 1909년에는 울릉도, 하단, 구포, 물금 1909년에 진영, 방어진에 설립되었다.

1909년 한국의 사법(司法) 및 감옥사무(監獄事務)가 일본에 의해 강제위탁 형식⁸⁵⁾으로 상실된 이후 그해 10월 통감부령⁸⁶⁾으로 한국에 헌병대가 설치되었다. 이때 헌병대 본부는 경성대화정(京城大和町)에 위치하였고 경상남북도를 대구(大邱)에 주둔하는 헌병분대(憲兵分隊)가 맡게 되었다. 다음해 1910년 헌병대 관구의 재조정에 관한 법률이 공포⁸⁷⁾되면서 부산에 헌병분대가 설치되었다. 설치된 헌병대는 당시 헌병경찰로서 경찰인 동시에 행정관리의 역할을 함께 담당하였으며 1910년 당시 육군 영관급이, 분대는 육군 위관급이 장으로 임명되었다고 한다.⁸⁸⁾

부산헌병분대가 주둔한 곳은 대청정(大廳町)으로 용두산 북편에 위치하였으며 분대의 크기와 주둔인원은 상세히 알 수는 없으나 대략 대대 정도의 크기였다고 추측된다. 조선총독부 자료⁸⁹⁾중 경찰서 직무를 취급한 헌병에 대한 자료에서 경상남도에는 555명의 헌병⁹⁰⁾이 근무하였다고 한다.

현재 대청동에 소재한 옛 헌병분대 부지에서는 당시 산중턱을 깎아 만든 무기창으로 사용된 듯한 장소가 남아 있으며, 1910~1911년경 준공되었던 사무실로 쓰여졌던 벽돌 단층구조의 건물은 그림 3-6.과 그림 3-7.과 같이 현재 2층으로 나누어 크게 개조하여 쓰이고 있으며 무기창으로 쓰여진

85) 통감부고시 제66호 「한국의 사법 및 감옥사무를 일본국 정부에 위탁하는 건에 관한 각서」(1909.7.24)로 일본으로 사법에 관한 업무가 넘어 갔고 이어 각 지방 이사청은 통감부훈령 제22호 「이사청 감옥사무 인계수속」(1909.10.21)으로 감옥을 통감부로 이관하였으며 이때 대청정의 부산감옥[1904.10 준공]도 이관됨.

86) 통감부령 제50호 「한국주둔헌병대 배치 및 헌병분대 관구표」(1909.10.28)

87) 통감부령 제43호 「헌병대관구 및 배치표」(1910.8.5)에 의해 부산에도 헌병분대가 설치되었다.

헌병대 관구 및 배치표

헌병대	헌병대 본부위치	헌병대관구	헌병분대	헌병분대위치	헌병분대관구
진주	경상남도 진주	경상남도 일원	부산	경상남도부산	경상남도 양산군·연양군·밀양군· 동래군·울도군·울산군·기장군

88) 김용욱, 「일제강점기 부산의 행정조직과 일제의 통치구조」, 향도부산 제15호, 1998, 36~37쪽

89)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통계연보』, 조선총독부관방인쇄소, 1913, 554쪽

90) 상세히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道	將校	準士官	下士	上等兵	補助員	합계(명)
경상남도	6	2	50	179	318	555

곳은 운동도구 창고로 사용되고 있었다.

부산에서의 상업회의소(商業會議所) 창설은 1879년 8월이었다. 서정(西町)에 위치하였고 건물은 1881년 7월 15일에 준공하였으며 평범한 목조 단층이었다고 한다.⁹¹⁾ 그러나 상업회의소는 1903년 전후로 서정에서 금평정으로 이전하여 양풍건축으로 신축⁹²⁾하고 그 자리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는 상품진열관(商品陳列館)은 당시 일본의 상품광고 및 홍보 그리고 그들의 우수성을 표방하기 위해 세워진 3층 건물이었다. 세워진 대지는 본래 소학교(小學校)부지로 일부인 1,000평의 대지 위에 1903년 6월부터 1904년 12월에 준공, 1905년 4월 17일에 개관식을 가졌다.⁹³⁾

일본인들은 일찍부터 박람회를 잘 알고 있었고 그 유용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당시 박람회는 국가의 공업화를 상징하는 장소로 여겨졌고 박람회의 물품들은 당시 선진적인 상품에 해당하였다. 일본이 자체적으로 박람회를 개최한 것은 1877년 우에노(上野)에서 열린 ‘제1회 일본산업박람회’로 당시 태정대신(太政大臣)이 준비위원장이었다. 진열품은 10만여 점에 출품자는 1만 6천명에 달하였다고 하며 관람객은 당시 도쿄인구에 이르렀다고 한다. 메이지시대에는 가끔 박람회가 개최되었고 1881년 제2회 박람회 이후 도쿄에는 영구적인 상품진열관이 생겼으며 이것은 콘더(Josiah Conder)가 설계한 벽돌 건물로 1878년 착공하였다.⁹⁴⁾ 1904년과 1905년은 러시아와의 전쟁을 끝낸 이후로서 일본 내부에서는 애국심의 고취와 전후 불경기를 극복하고자 소비심리를 크게 자극시키는 경제적인 목적의 정책이 다분하였던 시기였다. 1904년 6월 제5회 박람회⁹⁵⁾는 오사카(大阪)에서 개최되었으며, 도영주·윤일주의 논문에서는 부산의 상품진열관 신축 중 재료의 일부가 오사카박람회에 출품된 아이치켄(愛知縣) 매점에서

91) 도영주·윤일주, 앞의 논문, 268~269쪽

92) 1904년 8월에 발간된 『경상도사정』에서 상업회의소는 양풍건축으로 영사관 아래 금평정에 있으며 통상·무역의 기관으로 의원 25인이 있다고 기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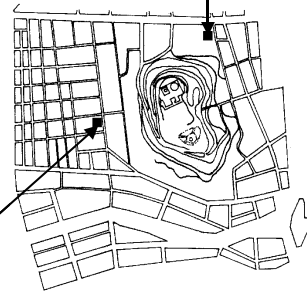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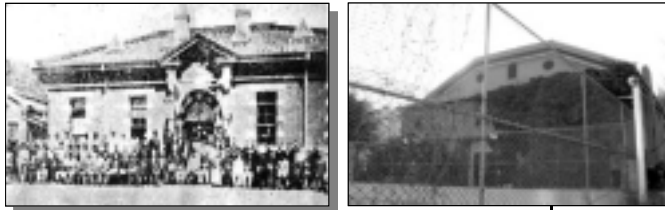
93) 3층으로 건평 165평, 총공사비 80,000원, 상품총출품수 3,600여점이었으며 1909년에는 한국정부에서 500원 1910년 2,000원을 연차적으로 보조해주었다고 한다.

94) 에드워드 사이덴스티커, 허호 역, 『도쿄이야기』, 이산, 143쪽

95) 당시 명칭은 제5회 내국권업박람회(內國勸業博覽會)라 불렀다.

구입한 것으로 상량식(上梁式)을 거행했다⁹⁶⁾고 언급하고 있다. 아마도 상품진열관은 노일전쟁 직후 경기부양의 하나로 세워진 건축물로 인식되며 부산에서 획기적인 건축물의 하나로 자리잡은 것에는 당시 일본정부에 의한 고도의 경기부양책 중의 하나였다고 추측된다.

憲兵分隊[1910년 신축] 현재 있음 * 남광초등학교 부지사용



商品陳列館[1904년 신축]
현재 없음 * 쇼핑센터 미라지오 부지사용

그림 3-6. 부산헌병분대와 부산상품진열관
[그림출전 : 도영주·윤일주, 「1910년 이전의 부산의 양풍건축」,
향도부산 제3호, 1963, 270·301쪽]

96) 도영주·윤일주, 앞의 논문, 274쪽



(a) 입구부분



(b) 출입구의 흔적



(c) 옛 무기고 흔적



(d) 건물축대 모습

그림 3-7. 옛 부산헌병분대 부지 현재 모습

3-2. 농·공·상업시설(農·工·商業施設)

농·공·상업시설에는 은행을 비롯한 금융 및 운송, 보관, 상업 및 유통 등을 제공하는 회사와 공장들을 넣었다. 이 장에서는 시설의 설치에 관한 통계자료를 통해 건축물의 건립을 다루고자 한다

3-2-1. 부산거류지로 이주한 일본인의 활동

부산일본거류지에 거주하던 일본인은 1876년 82명에 불과하였으나 1900년대 들어서면서 급격한 수치로 증가하였으며 이런 사회적 증가현상은 경제적 요인이 중요하였다고 추측된다. 일본의 급격한 근대화 과정에서 나타난 대자본가(大資本家)와의 경쟁에서 경쟁력을 상실한 소자본가(小資本家)들의 일부는 해외 팽창정책을 시도하는 정부의 정책에 맞추어 모험적인 해외 도항자(渡航者)가 되었다.

개항 초기 부산항에서 이루어진 일본과 한국과의 무역은 한국의 미곡과 일본의 면화를 교환하는 이른바 ‘면미교환체제(綿米交換體制)’였다. 이것을 위해 물품을 저장하고 가공하여 운반하는 관련업종이 그 주종을 이루었다. 또한 이들 교역에서의 양 국가간의 환전(換錢) 또한 중요한 사업의 하나로 인식되었다. 초기 무역형태는 소규모 형태로 이루어졌고 또한 그 무역의 이윤도 대부분 독점적으로 일본이 누리게 되었다. 더불어 일본은 당시 메이지유신 이후 근대화과정에서 무너져 버린 농민들을 점차 해외이주의 형식으로 거류지를 기반으로 식민정책을 기도하였는데 그 과정은 부산일본거류지와 그 인근의 토지점유형태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1904년의 ‘경상도사정’에서 제33 거류지내 토지종별에서는 일본인소유 토지에서 거류지외(居留地外)지역으로 대청정, 부평정, 보수정에 민유지(民有地)로서 435,000평이 있었다고 하며, 이것은 조약상 불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헐값으로 취득⁹⁷⁾하였다. 1904년 당시 거류지 전체토지가 110,000평이었음을 감안한다면 무려 약 4배에 달하는 토지를 편법으로 일본인이 보유

한 것이다. 대청정 등 3정을 제외하고 인근 김해와 밀양까지 그 토지의 소유범위가 광범위하였다. 거류지의 일본인소유 토지들은 미곡 수확을 위한 경영과 수로의 개발을 통한 관개(灌溉)나 양잠(養蠶) 등의 사업에도 이용되었다.⁹⁸⁾

1905년 동래부 사중면(東萊府 沙中面)의 상존위(上尊位 : 오늘날 면장)의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인과 일본인 사이 토지거래의 내역을 살펴보면 토지와 가옥 총 72건의 거래에서 하사마(迫間房太郎)와 오오이케(大池忠助)에게 넘어간 수는 각각 11건과 5건으로 보고되고 있다. 즉 소수의 일본인이 집중적으로 토지와 가옥을 보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⁹⁹⁾

많은 토지와 가옥을 소유하게 된 일본인들은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고 그에 따른 일본인들의 종사 직업도 다양해 졌다. 1880년 12월에 처음으로 거류주민의 영업별과 호수를 영사관이 조사·작성한 것을 토대¹⁰⁰⁾로 만들어진 일본거류민 영업규칙(1881.12.15)은 최초로 부산일본거류지에 존재했던 직업 및 직종에 대한 법령으로 당시 영사관이 거류지 내 일본인의 영업에 대한 통제를 위해 만든 것으로 보이며, 규칙에 명시된 영업은 모두 15종이었다.¹⁰¹⁾

97) 1905년 동래부 사중면(東萊府 沙中面)의 상존위(上尊位 : 오늘날 면장)의 보고서에 의하면 토지매매가격과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국사편찬위원회, 『각사등록(各司謄錄)』 14 경상도편, 「사중면상존위보고서」(동래감리각면서보고서), 광무9년5월29일~광무10년10월19일에 상세수록

98) 일본농상무성, 『한국토지농산조사보고서』(1906) 경상도, 전라도, 제6편(서울, 이문사, 1977년), 549쪽, 재인용 : 부산상공회의소·부산경제연구원, 『부산경제사』, 1989, 355쪽

99) 하사마는 1935년 당시 자산이 5,000만원을 넘었고 부산수산주식회사, 조선가스주식회사 기타 회사의 중역으로 명성을 떨쳤고 오이케는 조선인 상대의 고리대업과 무역업으로 부산명사가 되었다. 부산명사록간행회, 『부산명사록』, 1935, 16~17쪽, 재인용 : 부산상공회의소·부산경제연구원, 『부산경제사』, 1989, 353~354쪽

100) 부산부, 앞의 책, 160쪽, 이 논문 3-5-3장 참조

101) 영업규칙에 명시된 15종은 다음과 같다. 무역상(貿易商)·은행업(銀行業)·해운업(海運業)·선박객주(船舶客主)·중매상(仲買商)·소매잡상(小賣雜商)·전당포(典當舖)·여인숙(旅人宿)·요리점(料理店)[洋式,日式]·음식점(飲食店)[魚類,鳥獸肉 등]·잡점잡업(雜店雜業)[沐浴湯,理髮所,時計店,寫眞師 등]·제흥행업(諸興行)제유기장(諸遊技場)[劇場 등]·제공(諸工)[木工,土役,鐵工,石工 등]·고용(雇傭)·대거대마(貸車馬業)

거류지 주민들의 직업은 매우 다양하게 분화되었으며 부산일본거류지의 특성상 항구를 중심으로 하는 업종¹⁰²⁾이 발달하였다. 각종 산업종사자의 증가는 자연히 상업회의소(商業會議所)의 설립¹⁰³⁾으로 이어졌다. 그림 3-8.은 상업회의소 설립 후 조사되었던 직업별 종사자 내역¹⁰⁴⁾을 나타낸 것으로 부산거류지엔 다양한 직종의 직업과 그 종사자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거류지 초기 회사의 조직 형태는 주식회사(株式會社)인 소수의 기업을 제외하고 소규모의 조직형태를 갖춘 상점이 다수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주식회사와 합자회사¹⁰⁵⁾(合資會社) 그리고 합명회사(合名會社)의 형태로 여러 회사들이 설립되었다. 표 3-4.는 1906년 당시 조사된 회사들의 세부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자본금이 1,000원이 넘는 회사가 다수였다.

3-2-2. 부산거류지에 설립된 여러 회사와 공장

회사와 함께 여러 공장들도 거류지에 설립되었으며 대부분 일상생활에 필요했던 다양한 소규모 제품들을 생산하는 공장이 대부분이었다. 이들 공장들은 회사들과는 달리 큰 규모를 요구하였기 때문에 비교적 변두리에 속하는 서정¹⁰⁶⁾과 거류지 이외 지역인 부평정¹⁰⁷⁾에 다수 존재하였다.

102) 『통감부통계연보』에 나타나는 영업업종은 매우 다양하며 은행업, 해상운송업, 화물보관업, 해산물업 등이 주종을 이룬다.

103) 부산상의회회의소는 의원수 20인, 특별의원수 4인을 가지며 구역 내 637인(선거 및 피선거권 동시에 가지는 자가 431인, 선거권만 가지는 자가 206명)을 갖는 조직(1906년 당시)으로 1879년 2월 1일 설립되었다. 설립지 구역은 부산일본거류지와 거류지 일원 1리(里)이내였다. 참고: 통감부, 『통감부통계연보』, 고도환판소, 1907, 143쪽

104) 부산상공회의소·부산경제연구원, 『부산경제사』, 1989, 336~337쪽

105)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복합적 조직의 회사로 무한책임사원이 있는 점은 합명회사(合名會社)와 같으나,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출자액의 한도 내에서만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사원이 있는 점이 합명회사와 다르다. 유한책임사원은 유한의 책임을 지는 데 불과한 반면, 출자는 재산출자에만 한하고, 회사의 업무집행·대표로는 참여하지 않는다. 합자회사도 사단법인이지만 사원간의 개인적 신뢰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조합적 성격을 띠며 인적(人的) 회사에 속한다. 합자회사는 유한책임사원의 책임의 유한성에서 생기는 결과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합명회사와 마찬가지로 취급할 수 있다. 따라서 상법도 별단의 규정이 있는 외에는 합명회사의 규정을 준용하여, 합명회사의 한 변형으로 하고 있다. 참고: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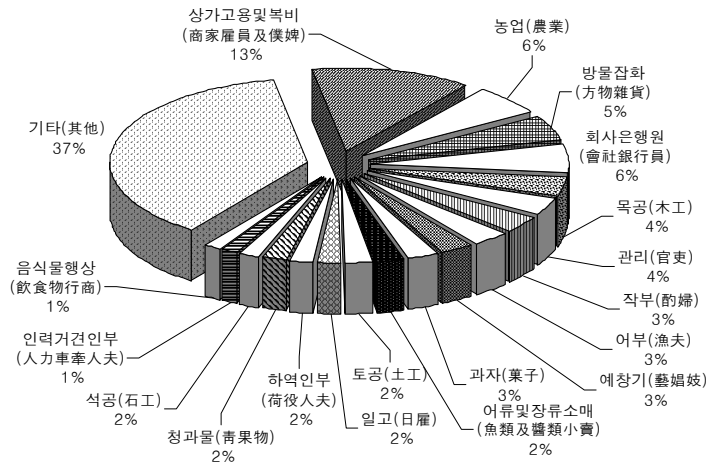


그림 3-8. 부산일본거류지 일본인 직업별 종사자 분류
[출전 : 『부산경제사』]

개항 초기 군사적·경제적 침략의 거점으로 출발한 부산에 있어서 산업의 전반을 일본인이 경영하였으며 미곡과 면화의 교환무역체제에서의 많은 제약은 원료 획득의 용이성과 저렴한 자금이라는 조건에 합당한 장류(醬類)나 주조(酒造), 정미(精米), 철공업(鐵工業) 등으로 한정되어 소규모 개인경영형식에 불과하였다.¹⁰⁶⁾ 그러나 청일전쟁(淸日戰爭)과 노일전쟁(露日戰爭) 이후 일본의 무역과 통상에 대한 독점이 점차 확대됨으로 인해 일본인들의 회사와 공장성립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두 차례의 전쟁을 거치면서 원료 및 물자 공급지 역할을 수행한 한국 내 여러 일본거류지들에서는 물자공급을 통해 부를 축적한 많은 신흥재벌들이 나타났다.¹⁰⁹⁾ 한국에서

106) 1906년 당시 서정에 있었던 공장은 철공장(鐵工場)으로 1893년 12월에 기계수리업으로 창업되었고 자본금 300원으로 직공 일본인 6인과 조선인 3인이 종사하였다.

107) 부평정에는 농구수리, 연초, 금물 등의 공장들이 많이 설립되었고 다수의 조선인이 직공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참고 : 통감부, 앞의 책, 147~148쪽

108) 부산상공회의소·부산경제연구원, 『부산경제사』, 1989, 363쪽

109) 두차례 전쟁 이후 부산에서 나타난 명사로는 迫間房太郎이 유명하다. 1935년 출판된 『부산명사록』에는 ‘…그는 약관에 부산으로 건너와 일본상점 사환으로 시작하여 1905년경에 토지가옥(土地家屋)을 경영하고 겸하여 무역상(貿易商)도

표 3-4. 부산일본거류지 일본인 설립 여러 회사[참고: 『통감부통계연보』]

회 사 명	소재지	창업 연월일	영업종류	조직	자 본 금(원)	
					총액	불입금
제일은행부산지점 (第一銀行釜山支店)	본 정	1878. 6	은행업	주식	10,000,000	10,000,000
십팔은행부산지점 (十八銀行釜山支店)	금평정	1897. 7	은행업	주식	30,000,000	1,950,000
제오십팔은행부산지점 (第五十八銀行釜山支店)	임강정	1896. 1	은행업	주식	5,000,000	3,218,750
일본우선주식회사부산지점 (日本郵船株式會社釜山支店)	본 정	1885.10	해상운송업	주식	22,000,000	22,000,000
대관상선주식회사부산지점 (大阪商船株式會社釜山支店)	본 정	1884. 5	해상운송업	주식	16,500,000	12,375,000
일한창고주식회사 (日韓倉庫株式會社)	상반정	1905.12	화물보관업	주식	200,000	125,000
부산창고주식회사 (釜山倉庫株式會社)	상반정	1906.11	화물보관업	주식	25,000	13,000
부산매축주식회사지소 (釜山埋築株式會社支所)	좌등정	1902. 7	매축특약업	주식	250,000	250,000
부산잔교주식회사 (釜山棧橋株式會社)	좌등정	1904.11	잔교업	주식	150,000	25,700
부산전등주식회사 (釜山電燈株式會社)	본 정	1901. 9	전기업	주식	100,000	75,000
부산수산주식회사 (釜山水產株式會社)	남빈정	1903. 1	해산물업	주식	100,000	60,000
부산농산주식회사 (釜山農產株式會社)	남빈정	1905.12	식량품위탁 판매	주식	20,000	5,000
한국대염판매합자회사 (韓國臺鹽販賣合資會社)	임강정	1904.10	대만염한국 일수판매	합자	60,000	60,000
부산토목합자회사 (釜山土木合資會社)	서 정	1901. 6	토목청부업	주식	50,000	17,500

* 주 기 : 백삼십은행은 오십팔은행을 1909년 4월 10일 합병함.
 제일은행은 1909년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이 됨에 따라 주요업무를 인계하고 1910년 2월 인천지점 등 12개 지점 및 출장소가 폐지됨.
 한국대염판매합자회사는 대만산(臺灣產)인 염(소금)을 한국에 일수(一手:독점판매)로 판매하는 권리를 가진 회사로서 당시 대만은 일본의 식민지였음.

일어난 이들 전쟁은 일본거류지를 부유하게 해주는 촉진제 역할을 하였고, 이후 부산일본거류지 경제활동의 활성화는 전반적인 분야에 영향을 주었을

운영하였다. 노일전쟁(露日戰爭)의 호황에서는 거만(巨萬)의 부를 축적하여...’라고 기록하고 있다. 개인용 : 부산상공회의소·부산경제연구원, 『부산경제사』, 1989, 352~353쪽

것이라고 추측된다. 부산일본거류지의 일본인들은 다양한 방면에 걸친 경제활동을 수행하였으며 그 세부적인 사항은 표 3-4.와 표 3-5.를 통해 추측 가능하다. 그림 3-9.와 그림 3-10.은 1885년에서 1909년까지 25년간 부산에서 이루어진 무역에 관한 수출입자료¹¹⁰⁾로서 무역총액의 약 80%를 일본과의 무역이 차지하고 있다. 특히 수출은 일본의 경우 약 90%이상을 점유하여 압도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수입 중에서는 일본을 경유한 내국제품(內國製品)항목이 나타나며 이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보면 아마 1904년경엔 이미 부산의 경제가 더 이상 내국제품의 수입을 통한 물품조달이 불필요할 만큼 성장하지 않았을까 추측된다.

표 3-5. 부산일본거류지 일본인 설립 여러 조합

[참고: 『통감부통계연보』]

명 칭	소재지	개시연월	업 체 별
[유한책임]부산신용조합 ([有限責任]釜山信用組合)	남빈정	1906.10	자금대여·저금권행
조선해수산조합 (朝鮮海水産組合)	본 정	1902.11	어업자관리
부산해산상조합 (釜山海山商組合)	본 정	1905. 7	해산물업
부산항곡물상조합 (釜山港穀物商組合)	금평정	1901.10	곡류업
부산항곡물수출상조합 (釜山港穀物輸出商組合)	금평정	1901.10	곡류업
관제연초상조합 (官製煙草商組合)	본 정	1906. 2	일본관제 연초판매
송함석유평약조합 (松函石油特約組合)	금평정	1901. 9	미국 스탠다드석유회사 석유평약판매
부산수출우피상조합 (釜山輸出牛皮商組合)	본 정	1901.10	우피업
부산매약상조합 (釜山賣藥商組合)	본 정	1897. 9	매약업
부산해륙운반업조합 (釜山海陸運搬業組合)	입강정	1905.12	해륙운반업
한진중차업조합 (韓錢仲次業組合)	입강정	1882	한진(韓錢)증개

회사와 공장 이외에도 부산거류지에 많이 설립된 조합(組合)은 각종 공동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단법인의 한 형태로서 당시 각종 경제활동에 관

110) 相澤仁助, 『부산항세일반』, 大阪, 日韓昌文社, 1905, 93쪽, 재인용 : 부산상공회의소·부산경제연구원, 『부산경제사』, 1989, 379쪽

한 사업수행을 위한 각종 협동조합의 업체로서 활동하였다. 조합의 조직이 이루어진 업체는 다양하였고 거류지의 각종 종사자들은 업종별 조직으로서 그들의 이권을 유지해 나갔다. 표 3-4.는 설립된 여러 회사들을 표 3-5.는 1906년 당시 조사된 여러 업종의 조합에 관한 내용이다.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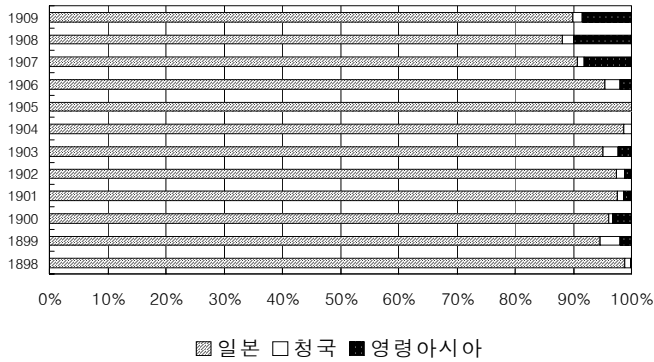


그림 3-9. 부산 국가별무역 수출현황
[출전 : 『부산경제사』]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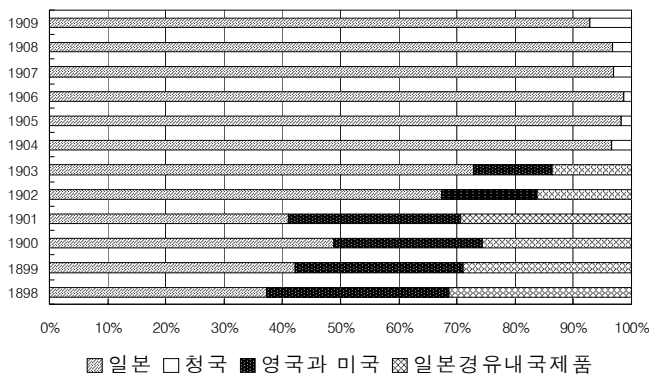


그림 3-10. 부산 국가별무역 수입현황
[출전 : 『부산경제사』]

표 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설립된 조합들을 통해서 거류지 이권사업이 어떤 업종이었던지를 추측할 수 있으며, 흥미로운 것은 거류지에서의 부산

항의 중요성과 조합의 대부분이 관공서가 밀집한 지역에 인접 분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조합이란 여러 뜻이 있으나 보통 각종 공동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단법인의 한 형태 혹은 공공사업의 수행을 위한 각종의 공공조합, 경제활동에 관한 사업수행을 위한 각종 협동조합이라 할 수 있다.¹¹¹⁾ 부산항을 중심으로 일본인들에게 이권사업(利權事業)이라 부를 수 있는 어업, 곡물의 수송 및 보관 또는 당시 교역품 중 중요한 물품이었던 우피(牛皮) 등의 제품에 관련된 사업 등에 대한 경제행위는 중요한 문제였으며, 특히 환전(換錢)은 중요한 경제활동 중의 하나였다. 당시 부산항에는 일본인뿐만 아니라 조선인들도 무역에 참가하고 있었으며 그들도 일본에 맞서 객주(客主)나 여각(旅閣)이라는 명칭으로 활동하고 있었다.¹¹²⁾ 부산의 객주들도 일본인이 활동에 맞추어 1889년 ‘부산객주상법회사(釜山客主商法會社)’를 설립하기도 했다.

부산일본거류지의 사업체들이 일본의 침략 농후화와 함께 다양화와 거대화로 변화되어 갔다는 사실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소자본업자의 진출로 시작된 거류지의 경제는 점점 그 규모가 팽창됨에 따라 이에 따른 경제측면의 구조조정이 거류지 내부에서 서서히 일어날 것임은 추측 가능한 일이다.

3-2-3. 부산일본거류지에서의 경제활동과 건축

부산일본거류지에서 가장 획기적인 경제적 변화를 지적한다면 단연 1878년 제일은행 부산지점의 설립이다. 제일은행 지점의 설치에 부산이 개항장으로서, 외국인거류지로서 갖는 의미보다 더 큰 경제적 충격을 당시 조선 사회에 안겨 주었다. 당시 일본상인 대부분은 소자본업자들이었고 상품판

111) 참고 :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중 ‘조합(組合)’ 출전

112) 초량왜관 시기부터 동래부를 중심으로 내상(萊商)이란 명칭으로 무역상들의 활동이 있었다. 근대적 개항 이후 객주나 여각이란 이름으로 활동하였다. 이들에 대해 1890년 통리아문(統理衙門)의 『부산항영업세장정(釜山港營業稅章程)』에 그들에 대한 상세내용이 전한다. 참고 : 규장각도서, 도서목록번호 18139, 통리아문 1890년 3월 자료

매를 중심으로 종사하며 무역잡화상(貿易雜貨商)으로서 빈약한 자본력과 전통적 경영방식은 대규모 사업으로 진출하기에는 무리였다.

전통적인 일본인의 무역에 있어서 환전(換錢)은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1882년에 이미 환전증개를 목적으로 하는 한전증차업조합이 입강정에 설립되었다. 당시 한국과 일본사이 화폐가치의 차이는 엄연히 존재하였다. 당시 국제통화는 은화(銀貨)가 통용되었고 일본도 1872년 근대적 은행의 설립과 함께 은행권(銀行券)을 발행하였다. 근대적 개항 이후 일본은 한국통화인 ‘상평통보(常平通寶)’¹¹³⁾와 자국화폐와의 교환비율에 관해 관심을 가졌다. 개항 이전에는 일본의 화폐 ‘관영통보(寬永通寶)’는 동전(銅錢)으로서 일본 은(日本銀) 1원에 해당되었고 보통 한전(韓錢) 1,000문(文)[=1貫文]을 일본 통화 1.6원으로 교환하였다. 환전시세(韓錢時勢)의 변동은 거류지 경제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부산일본거류지의 환전중매인들은 그들의 이윤을 위해 스스로가 환전시세를 지배하고자 하였다.¹¹⁴⁾

환전을 통한 무역에서 가장 중요한 물품이 미곡(米穀)이었다. 미곡은 양국간의 가장 큰 거래물품으로 모든 물가와 연동을 가지고 있었고 한국에서의 미곡에 대한 풍흉작(豐凶作)은 부산항의 환전을 좌우하였다.

부산항에서의 환전시세를 좌우하는 한일간의 무역수지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인가는 당시의 ‘일본외교문서(日本外交文書)’에서 아래와 같이 언급하

113) 1633년(인조 11)에 최초로 주조되고 1678년(숙종 4) 제주조 이후 널리 통용되었다. 1894년(고종 31) 신정화폐장정(新定貨幣章程)의 발표와 백동화(白銅貨 : 백동전)가 쓰여졌고 1905년(광무 9) 일본인 재정고문 메가타 슈타로(目賀田種太郎)에 의해 화폐개혁에서 백동화의 갑종만을 정화(正貨)로서 인정되고 정리되었다. 1909년에 조선은행의 설립으로 조선은행권이 발행되었다. 참고 :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114) 부산상공회의소·부산경제연구원, 『부산경제사』, 1889, 293·296~297쪽, 원전: 『일본외교문서』 24권, 379쪽

부산항에서 환전시세변동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1원:韓錢(문)
1889	1.34	1.35	1.33	1.35	1.39	1.45	1.50	1.57	1.75	1.83	1.69	1.64	1.52	658
1890	1.70	1.95	2.20	2.07	1.89	2.18	2.11	1.97	1.85	1.86	1.82	1.95	1.96	510
1891	1.98	2.09	2.09	2.07	1.84	2.19	-	-	-	-	-	-	2.03	493

고 있다.¹¹⁵⁾

“당항(當港:부산항)에 있어서 수출화물(輸出貨物) 가운데 가장 많은 액을 차지하는 것이 쌀이고 그 다음이 콩, 보리 등이기 때문에 한전의 시세는 이 나라에 있어서의 곡물의 풍흉(豐凶)에 따라 등락(騰落)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산일본거류지에서는 일본인 상인들에 의해 일본화폐가 그대로 통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일본화폐가 조선사회에 그대로 유입되어 유통되는 것에 한계를 느낀 일본은 은행의 설립을 통해 한전의 유치와 한전어음(預金證書를 말함)의 발행을 통해 신용을 창조하고 일본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시켜 나갔다.¹¹⁶⁾ 본래 일본은 한전이 미국의 흥풍에 결정되는 불안한 한전 결핍(韓錢欠乏)을 극복하기 위해 먼저 일본의 보조통화였던 소동화(小銅貨) 관영통보의 한국 내 유통을 획책했으나 실패하였고 이어 당시의 한국정부의 신화주조(新貨鑄造)를 건의하기도 했다. 또 일본인의 광산경영(鑛山經營)과 연결하여 한전의 일본 내 주조까지 계획하였다.¹¹⁷⁾

부산일본거류지 시기 물가(物價)에 대한 내용에 관해서는 1904년에 쓰여진 ‘경상도사정’에 어느 정도 찾아볼 수 있다. ‘경상도사정’이 노일전쟁 중에 기록되어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서술되고 있으나 여기서 언급되는 물가의 기준은 대저첩(大抵疊) 1장(丈)을 1원(圓)으로 표준으로 정하고 있으며 차지료(借地料)에 대해 거류지내는 평당 1원 내외, 거류지외는 평당

115) 『일본외교문서』, 제24권, 379쪽, 재인용 : 부산상공회의소·부산경제연구원, 『부산경제사』, 1889, 297쪽

116) 부산상공회의소·부산경제연구원, 앞의 책, 302쪽

제일은행 각 지점의 제예금·제대출의 민족별 구성(1907년)

	일본인	조선인	기타외국인	합계
諸預金	(2.8) 35.2%	(97.2) 51.6%	(-) 13.2%	(5,164,674) 11,310,874원
諸貸出金	66.9%	5.9%	27.2%	7,103,557원

* 주 : ()는 公金 預金計定の 比率과 金額을 표시

* 원전 : 高嶋雅明, 『朝鮮における植民地金融史の研究』, 東京, 大原新生社, 1978, 177쪽

117) 高嶋雅明, 『朝鮮における植民地金融史の研究』, 東京, 大原新生社, 1978, 37·40쪽, 재인용 : 부산상공회의소·부산경제연구원, 앞의 책, 298쪽

10전 내지 20~30전을 호가하였다고 한다. 당시 백정미(白精米) 1석의 가격은 13.5원이었고 중상백미(中上白米)나 중백미(中白米) 1석을 11.7원에서 12원 정도는 지불해야했다.¹¹⁸⁾

앞선 표 3-4와 표 3-5를 통해 회사설립의 연도를 살펴본다면 대자본의 회사가 부산으로 입주하기 시작한 것은 역시 1900년대 이후라고 보면 될 것이다. 개항 이후 1900년까지 부산의 일반적인 일본인들은 여전히 소규모 상품판매사업을 벗어나지 못했고 그에 따른 상업시설의 규모도 그리 크지 못했을 것이다. 거류지 일본인 사업규모의 확대와 팽창시기를 일본의 경제 성장과 비교하여 고려하면 1904년 노일전쟁 전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그 이전엔 무역을 통한 환전의 차익이윤이나 물품중개판매, 항구를 통한 중개업이 주류를 이루며 활발하였다.

노일전쟁 당시 일본영사관 기록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¹¹⁹⁾

“부산거류지는 전혀 일본내지(日本內地)와 그 광경을 같이 하며, 만내(灣內)에 정착하는 대조선박의 10중 8, 9까지가 모두 일장기(日章旗)를 휘날리고 육지의 시가(市街)는 모두 본판(本判; 日本)가옥이 아닌 것이 없으며 전등(電燈)이 비치고 수도(水道)가 통하며 전화(電話)의 설비가 있어서 호시무역(互市貿易)이 매우 번성을 극하여 한국 가운데 부유(富裕)로 이름높은 경상도의 전부와 그리고 충청, 강원방면으로 향하는 화물은 하나도 부산항을 경유하지 않은 것이 없고 또 낙동강 유역에서 산출되는 미곡 및 수피(獸皮)같은 수출품도 거의 부산에 집중하기 때문에 한국 여러 개항장 가운데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질 뿐만 아니라 그 무역상도 또한 수위를 점한다.”

1906년 자료와 1909년의 자료의 비교에서는 거류지 경제가 변화되고 있음을 암시해 주고 있다. 먼저 부산상업회의소의 구역 내 업체 수 자료¹²⁰⁾

118) 부산일본영사관, 『경상도사정』, 1904, 제41 거류지의 제물가(諸物價)

개항 당시 일본인의 기록에 의하면 ‘조선인은 하루 10문만 있으면 세끼를 먹을 수 있으며 일본인이 고용할 시 40~50문을 주었다’고 하며, 한전 650문이 일본돈 1원 가치로 통용되었고 쌀 1석의 비용은 8원 정도였다. 인용 : 부산상공회의소·부산경제연구원, 앞의 책, 314·341쪽

119) 부산상공회의소·부산경제연구원, 『부산경제사』, 1989, 377~379쪽, 재인용 : 부산일본영사관, 『경상도사정』, 1904, 제30 부산항 무역일반

에서 사업체 수는 과거에 비해 감소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1909년 사업체 자료¹²¹⁾에서는 여러 회사와 조합의 수가 급격히 증가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으로 볼 때 1910년이 가까워질수록 가입회사들의 자본 및 사세의 격차가 점차 심해지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으며, 과거에 비해 더욱 다양한 일본인들이 부산에 건너 왔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표 3-6.는 1909년 거류지에서의 여러 회사들에 대한 자료를 표로 나타낸 것이다. 1909년 자료에는 당시 자본금 1,000원 이상의 회사들이 다수 존재했으며 주식회사 형태 이외 합자회사 및 합명회사 등의 형식으로 설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들을 통해서 여러 회사와 공장, 조합들이 자신들의 영업특성에 맞추어 알맞은 장소에 사옥(社屋)을 소재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며, 살펴보면 본정과 금평정, 변천정에는 관공서와 향구가 인접해 있으므로 영업활동에 관련된 업종들이 많이 있었으며 남빈정과 입강정에는 바다와 면하여 수산업에 관련된 회사와 조합이 설립되었고 서정과 행정에는 생활에 관련된 산업이 들어서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운수업의 발달은 부산에서의 항구 위상과 함께 거류지에서의 입지를 짐작하게 해 준다.

노일전쟁 전후로 갑자기 거류지의 경제상황이 변화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전쟁을 기점으로 한국내 일본인의 자본구조에 큰 변화를 맞게되었는데 그 변화의 첫 신호는 1906년 ‘토지건물증명규칙(土地建物證明規則)’과 ‘토지건물전당집행규칙(土地建物典當執行規則)’의 입법에 의해서였다. 이는 부동산거래의 근대화란 취지아래 시행되었으나, 그 이면에는 일본인의 무

120) 1909년의 부산상업회의소는 선거권과 피선거권 동시에 가지는 자가 207인, 선거권만 가지는 자가 21인으로 1906년에 비해 축소되고 있다.

121)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통계연보』, 빈진출판소, 1911, 854~868쪽 참조. 1909년 자료부터는 업체들을 ‘업종별’로 나누어 상세하게 표시하고 있다.

표 3-6. 1909년 당시 부산일본거류지 여러 회사와 조합

[참고: 『통감부통계연보』]

업종	명칭	소재지	창업연월	영업종류	조직	자본금(원)	
						총액	불입금
농업	한국산업주식회사 (韓國産業株式會社)	매립 신정	1907. 3	식림업 및 대금업	주식	100,000	25,000
	일한임업주식회사한국출장소 (日韓林業株式會社韓國出張所)	서정	1907. 2	임업	주식	50,000	17,500
	한국흥업주식회사부산지점 (韓國興業株式會社釜山支店)	좌동정	1904. 9	농업·대금 ·창고업	주식	1,300,000	900,000
공업	부산전등주식회사 (釜山電燈株式會社)	본정	1901. 9	전기업	주식	100,000	100,000
	부산제분주식회사 (釜山製粉株式會社)	입강정	1908. 3	제분업	주식	100,000	100,000
상업	부산수산주식회사 (釜山水産株式會社)	남빈정	1903. 1	수산물판매업	주식	600,000	180,000
	제일은행부산지점 (第一銀行釜山支店)	본정 [東京]	1878. 5	은행업	주식	-	-
	백삼십은행부산지점 (百三十銀行釜山支店)	입강정 [大阪]	1878.11	은행업	주식	-	-
	십팔은행부산지점 (十八銀行釜山支店)	금평정 [長崎]	1879. 7	은행업	주식	-	-
	주방은행부산지점 (周防銀行釜山支店)	행정 [山口]	1908. 7	은행업	주식	-	-
	부산식량품주식회사 (釜山食糧品株式會社)	남빈정	1907. 4	식량품판매	주식	50,000	17,500
	동아연초주식회사부산지점 (東亞煙草株式會社釜山支店)	좌동정 [東京]	1907.12	연초판매	주식	1,000,000	1,000,000
	부산대염판매합자회사 (釜山臺鹽販賣合資會社)	입강정	1904.11	소금의 분쇄·제제 및 판매	합자	60,000	60,000
	담성상회(淡盛商會)	본정	1906.11	무역	합자	80,000	80,000
	오도합명회사 (五島合名會社)	본정	1908. 5	무역	합자	40,000	40,000
	부산송함석유특약조합 (釜山松函石油特約組合)	매립 신정	1901. 9	석유판매	조합	-	-
	부산어중매조합 (釜山魚仲買組合)	남빈정	1877.10	어류중매	조합	3,060	3,060
	부산활우매매동업조합 (釜山活牛賣買同業組合)	남빈정	1907.12	활우매매	조합	3,000	3,000

* 주기 : []안의 지명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

표 3-6. 1909년 당시 부산일본거류지 여러 회사와 조합(계속)

[참고: 『통감부통계연보』]

업종	명칭	소재지	창업연월	영업종류	조직	자본금(원)	
						총액	불입금
상업	부산해산상조합 (釜山海産商組合)	금평정	1906.10	해산물 매매	조합	-	-
	부산우피수출상조합 (釜山牛皮輸出商組合)	금평정	1906.11	우피수출	조합	-	-
	부산곡물수출상조합 (釜山穀物輸出商組合)	금평정	1906.11	곡물수출	조합	-	-
	부산곡물시장 (釜山穀物市場)	금평정	1906.11	곡물현물 취인	조합	-	-
	대일본맥주주식회사 제품부산판매조합 (大日本麥酒株式會社 製品釜山販賣組合)	본정	1907.10	맥주판매	조합	10,000	10,000
	부산약업조합 (釜山藥業組合)	본정	1909. 2	약판매	조합	-	-
	첩판매동업조합 (疊販賣同業組合)	서정	1909. 3	첩판매	조합	-	-
	고물상조합 (古物商組合)	변천정	1909. 3	고물상업	조합	-	-
	부산수입상조합 (釜山輸入商組合)	서정	1909.11	수입상	조합	-	-
	부산두부제조조합 (釜山豆腐製造組合)	서정	1908.12	두부제조	조합	-	-
유통	부산기선주식회사 (釜山汽船株式會社)	본정	1908.12	해운업	주식	600,000	150,000
	만한운수주식회사 (滿韓運輸株式會社)	본정	1907. 9	운송업	주식	50,000	12,500
	부산궤도주식회사 (釜山軌道株式會社)	남빈정	1909. 8	운송업	주식	100,000	25,000
	부산잔교주식회사 (釜山棧橋株式會社)	좌등정	1904.11	잔교업	주식	150,000	150,000
	일본우선회사부산대 리점(日本郵船會社釜 山代理店)	본정	1885.10	해운업	주식	22,000,000	22,000,000
	대관상선주식회사부 산지점(大阪商船株式 會社釜山支店)	본정	1890. 7	해운업	주식	16,500,000	16,500,000
	대지회조합자회사 (大池回漕合資會社)	본정	1907. 9	운송업	합자	20,000	20,000
	부산운수합자회사 (釜山運輸合資會社)	지정	1909. 1	운송업	합자	3,000	3,000
	일한조운수합자회사 (日韓組運輸合資會社)	본정	1909. 8	운송업	합자	5,000	5,000

표 3-6. 1909년 당시 부산일본거류지 여러 회사와 조합(계속)

[참고: 『통감부통계연보』]

연월	명칭	소재지	창업연월	영업종류	조직	자본금(원)	
						총액	불입금
기타	조선시보사 (朝鮮時報社)	변천정	1892. 7	신문업	합자	24,000	24,000
	부산연극합명회사 (釜山演劇合名會社)	서정	1907. 4	극장업	합명	30,000	20,000
	조선해수산조합 (朝鮮海水產組合)	본정	1902.11	어업자관리	조합	-	-
	부산잠수기업조합 (釜山潛水機業組合)	남빈정	1907. 6	해산물포획	조합	-	-

제한적인 토지소유의 공인과정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과거 상품(商品)과 신용(信用)으로 이루어진 은행에 대한 대출담보(貸出擔保)에서 부동산 즉 토지와 건물이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1906년~1910년 통감부통계연보에서는 표 3-7.과 같이 은행의 담보 대출금(貸出金)에 대해서 ‘상품과 신용’에서 ‘토지와 건물’의 담보로 그 비중이 점차 커져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부산일본거류지가 항구를 중심으로 하는 단순 교역지로서의 의미에서 점차 거주지로서 인정되어 가는 것으로 해석 할 수도 있다. 당시 부산의 거류민들에게는 건물의 대한 가치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라 하겠다.

표 3-7. 부산의 여러 은행 대출금 담보별 구성추이(단위: 원, %)

	유가증권		상 품		토지·건물		신 용		기 타		합 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1906년	243,611	9.3	557,505	21.2	875,791	33.3	946,056	35.9	8,560	0.3	2,631,523	100.0
1907년	258,657	8.9	568,291	19.5	842,366	28.9	1,109,356	28.0	139,114	4.7	2,917,785	100.0
1908년	226,232	8.7	507,364	19.5	806,612	30.9	951,040	36.5	114,390	4.4	2,605,640	100.0
1909년	242,686	10.1	397,245	16.6	815,129	34.1	840,870	35.1	97,284	4.1	2,392,214	100.0

* 주기 : 부산상공회의소·부산경제연구원, 『부산경제사』, 1989, 471쪽, 『통감부통계연보』와 『조선총독부통계연보』에서 재인용

1903년 작성된 부산일본거류지 관련 그림 3-11.¹²²⁾을 살펴보면 지도에 표시된 회사 건물들의 명칭이 나온다. 대부분 관공서나 종교시설이 자세히 나와 있고 비교적 규모가 크다고 생각되는 여러 회사들의 이름이 표시되어 있다. 1903년 지도에 나오는 관공서 이외의 건물명을 나열해 보면 본정 부근에 매축회사, 제일은행부산지점, 일본우선회사, 일한상선회사, 전등회사가 입강정 부근에 어시장이 변천정 부근에 오십팔은행과 대지상회, 상선회사 금평정 부근에 백팔은행이 북빈정 부근에 부산창고회사와 부산무역회사 서정 부근에 부산정미소가 보인다.

당시 지도에 나타나는 여러 회사명에 대한 회사내용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자본금 10,000원이 넘는 액수를 가지는 사세(社勢)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대부분 주식회사 형태를 취하고 있다. 아마도 거류지 당시 이 정도의 자본금을 가지는 기업이나 조합이라면 독자적인 회사 사옥(社屋)을 지닐 수 있지 않았나 추측되며, 지도에는 비록 나타나지 않으나 앞서 언급한 사세 정도를 지니고 있는 회사라면 당시에는 스스로 영업에 필요한 회사건물을 소유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1910년 이전 근대건축 중 부산에서는 획기적 건물 중의 하나로 손꼽히는 1904년의 상품진열관 설립은 당시 이러한 대규모 회사의 부산 입주 및 사옥 설립과 함께 활발히 진행되었던 건축활동의 일부가 아닌가 추정된다.

앞의 표 3-6.과 표 3-8.을 통해 부산일본거류지에 있었던 여러 회사와 조합을 연대순으로 살펴보면 거류지 초기에는 기초적인 주요시설들의 설립에서 점차 일상적인 시설들이 그 뒤를 이어 설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설물의 다양화 그것은 부산일본거류지가 점차 일본인들에게 합당한 주거지로서 안정된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점차적으로 이 지역이 변화한 지역으로 성장하였음을 나타낸다고 추정할 수 있다.

122) 1903년 지도는 손정목의 『한국개항기도시변화과정연구』 중 103쪽에서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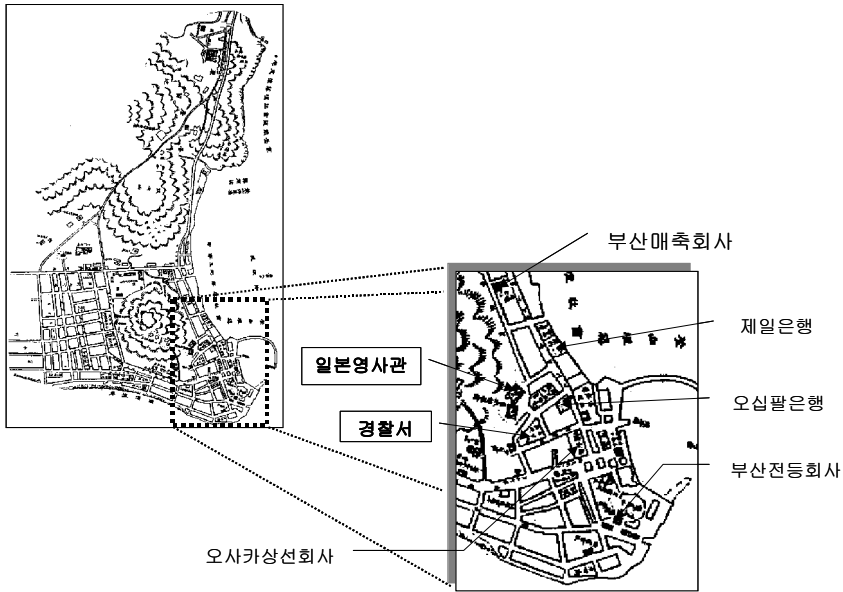


그림 3-11. 1903년 당시 부산일본거류지
 [그림출전 : 『한국개항기도시변화과정연구』 중 103쪽]

부산일본거류지 내 세워진 공장건축은 대부분 변두리 시가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입주 후로 관련업종에 관련된 규칙(規則)과 취체(取締)¹²³⁾가 함께 시행되었다. 공장의 설립은 일반 회사건축물의 설립과는 달리 막대한 투자와 시간 그리고 계획이 소요되는 건축활동의 하나이다. 공장건축의 활성화는 그만큼 부산일본거류지의 성장이 일본인 사업가들에게는 매력적인 지역으로 변모하고 있음을 뜻할 수 있다. 그리고 장기간의 투자를 통해 그 이윤이 보장된다는 확신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 공장건축의 설립은 표 3-8.에서 볼 수 있듯이 부산이사청 설치를 전후하여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취체란 메이지시기부터 1945년 이전까지 자주 쓰이던 단어로 ‘취체규칙(取締規則)’이란 형식으로 공포되곤 하였다. 취체가 적용되는 곳은 어김없이 경찰력이 동원되는 영역에 속하였다. 영사관시기에서도 다양한 취체가 공포되었으며 건축물의 설립에서도 취체규칙이 적용되었다.

123) 취체란 일본어 ‘取り締まり’에서 유래하며 ‘단속함’을 뜻함.

[참고 : 민중서림, 『옛센스 일본어한자읽기사전』, 2000, 제2쇄]

건축활동에서 적용된 규칙과 취체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며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된 부분이 시가지구획에 있어 직업별·직종별로 구역을 나누어서 구역을 지정해 주었다는 것이다. 그 예로 1890년 3월 달(達) 제7호로 시행된 「통공(桶工) 및 단야공(鍛冶工) 영역구역의 건」과 5월 달 제11호 「단야직영업자의 주거구역」에서는 통 만드는 직공과 대장장이는 시가지에 그 작업장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고 또한 거주도 제한하는 등의 제약을 가함으로서 그 결과 대부분 외곽의 부평정에 위치하게 되었다.¹²⁴⁾ 공장건립에 관한 규칙이 완성된 시기는 부산이사청령 제9호 「공장취체규칙」(1909.12.12)의 공포 이후이다. 이 취체규칙에서는 제1조에서 증기력(蒸氣力), 전기력(電氣力), 와사력(瓦斯力), 그 외의 동력을 사용하는 공장이거나 화로(火爐)를 사용하는 공장, 이사관이 사업의 성질상 위험의 염려나 공익상 혹은 위생상 유해의 염려가 인정되는 공장은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양한 규제로 인해 공장건축은 대부분 시가지 외곽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표 3-8.과 같다.

124) 이 규정들은 부산이사청령 제12호 「부산영사관법령 폐지」(1908.12.29)로 폐지되었다. 1908년 통감부자료에 의하면 부산일본거류지 주변에는 50개의 단야공장이 있었고 그 중 규모가 큰 공장이 3곳, 그중 규모가 가장 큰 2곳이 모두 부평정에 있었다.

1908년 당시 부산일본거류지 부근 단야계열 여러 공장

명칭	소재지	창립연월일	제품	자본금	기술자	직공		생산품 가격
						일본인	한국인	
角野製作所	富平町	1906. 7	機械・船具類・修繕	5,000원	1인	14인	9인	20,000원
西條鐵工場	富平町	1906. 5	汽管類・鑄造 및 修繕	6,000원	-	10인	5인	10,000원

표 3-8. 1909년 당시 부산일본거류지 여러 공장[참고: 『통감부통계연보』]

명칭	소재지	창립연월	제품	자본금 (원)	기술자	직공		생산품 가격(원)	원동력
						일본인	조선인		
부산정미소 (釜山精米所)	행정	1902.11	정미	70,000	2인	7명	15명	796,100	증기
나수정미소 (那須精米所)	매립 신정	1907. 7	정미	20,000	1인	2명	9명	218,700	증기
토비정미소 (土肥精米所)	매립 신정	1908.10	정미	10,000	1인	1명	4명	97,200	석유 발동기
상진정미소 (上田精米所)	서정	1908. 7	정미	15,000	1인	-	8명	182,250	석유 발동기
기곡정미소 (磯谷精米所)	대청정	1908. 7	정미	10,000	1인	2명	6명	146,400	석유 발동기
금서양조장 (今西釀造場)	서정	1883.10	청주	100,000	1인	9명	-	37,000	-
복전양조장 (福田釀造場)	서정	1900. 3	청주	50,000	1인	7명	-	10,000	-
	서정	1900. 3	장유	10,000	1인	7명	-	6,500	-
오도장유양 조장(五島醬 油釀造場)	서정	1895. 3	장유	6,000	1인	1인	-	5,400	-
산본장유양 조장(山本醬 油釀造場)	서정	1886. 8	장유	7,200	1인	8인	1인	4,250	-
송진장유양 조장(松前醬 油釀造場)	서정	1892. 4	장유	7,000	1인	-	2인	4,850	-
이등장유양 조장(伊藤醬 油釀造場)	서정	1892. 4	장유	5,000	1인	1인	-	5,400	-
목사장유양 조장(木寺醬 油釀造場)	행정	1909.10	장유	5,000	1인	1인	-	1,600	-
야구철공장 (野口鐵工場)	서정	1892.11	기관류 · 구조 및수선	2,000	1인	8인	1	6,000	증기
길전관힐제 조소(吉田罐 詰製造所)	대청정	1908. 2	조어패 류관힐	2,000	-	3인	-	3,000	-
가납관힐제 조소(加納罐 詰製造所)	변천정	1894. 6	조어패 류관힐	10,000	-	4인	-	12,000	-

표 3-8. 1909년 당시 부산일본거류지 여러 공장(계속)

명칭	소재지	창립연월	제품	자본금 (원)	기술자	직공		생산품 가격(원)	원동력
						일본인	조선인		
부산전등회사 발전소(釜山電 燈會社發電所)	본정	1901. 9	전기	100,000	2인	13인	1인	38,000	증기
아부제도소 (阿部製餡所)	서정	1909.10	제도	1,000	-	4인	2인	2,840	-
소야염공장 (小野染工場)	서정	1909.12	염물	5,000	-	5인	-	6,000	-
산구레몬수제 조소(山口레몬 水製造所)	서정	1901. 5	레몬수	1,200	-	2인	2인	3,000	-
촌상형제상회 (村上兄弟商會)	서정	1907. 5	연초	10,000	-	20인	50인	76,000	-

당시 설립된 공장 중에서 그 위치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행정에 있었던 부산정미소와 서정의 복전양조장 그리고 용미산에 있었던 부산전등회사 발전소 등이다. 남아있는 자료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공장건축의 특징은 그다지 보이지 않으나 규모가 컸었기 때문에 오늘날 그 자리들에는 큰 건물이 들어서 있는 것이다. 부산정미소 부지에는 은행이, 복전양조장 부지에는 복합상가아파트가 들어서 있다.

그림 3-12.는 1910년 이전 부산일본거류지 부근에 설립되었던 여러 회사와 공장들에 관한 그림으로서 비록 앞선 표들에 기록된 회사는 아니나¹²⁵⁾ 당시에 세워진 것으로 어떠한 건물들이 일반적으로 성립하고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일부 추측할 수 있다. 당시 회사나 공장들은 관공서나 공공시설 같이 시대를 대표하거나 유행을 따른다고 생각되는 특징은 보이지 않는다. 대부분 서구식 건축술에 의해 개량된 일본식 의양화된 건물들로서 2층 목구조가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

125) 서조(西條)철공소에 대한 기록은 1908년 통감부 통계자료에서 보인다. 본래 명칭은 서조철공장(西條鐵工場)이며 소재지는 부평정으로 1906년 5월 창립하였고 기관류와 주물 및 수선을 주업종으로 하였다. 자본금은 6,000원이었고 일본인 10인, 조선인 5인이 종사하였으며 생산품가격은 10,000원에 달하였다.



(a) 굴(堀)형제상회
[1898년 창설*초장동 소재]



(b) 수도(手島)소다비누공장
[1908년 창설*대신동 소재]



(c) 서조(西條)철공소
[1904년 창설*영도 소재]



(d) 산내(山內)양조장
[1898년 창설*토성동 소재]

그림 3-12. 1910년 이전 부산일본거류지 부근에 설립된
여러 회사와 공장 건축물

[그림출전 : 「항도부산」 제6호, 1967, 사진부록]

그림 3-13.에서 그림 3-17.까지는 1910년까지 설립되었거나 혹은 설립을 유추할 수 있는 근대건축에 대한 과거와 현재 건물과 부지의 자료이다. 건물에 대한 자료가 남아 있는 것은 현재 부지 모습과 함께 실었으며 여기서 언급되는 회사들은 당시 설립된 상업시설 중의 일부로서 대다수 상당한 규모의 자본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 회사들은 부산일본거류지의 경제분야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영향력도 대단했을 것이다. 또한 그들의 사세에 어울리는 사옥들을 소유하고 있었을 것이라 추정되며, 비록 현존하는 건축물은 없으나 앞서 언급한 자료들을 통해 그 부지를 파악할 수 있었으며 토지이용측면에서 현재까지 부지의 성질이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본정2정목 3번지에 위치했던 제일은행 부산지점 부지는 초량왜관때 왜관출입자를 단속하고 감시하던 수문(守門)이 있던 자리였다.



朝鮮銀行 出張所
 [1909년경 신설]
 현재 없음 * 한국은행
 부산지점 부지사용

第一銀行 釜山支店
 [1878년 개설 1913년 신설]
 현재 없음 * 동광상호신용금고
 부지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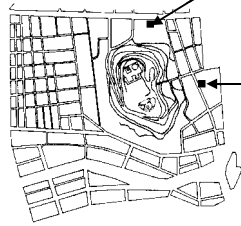


그림 3-13. 제일은행 부산지점과 조선은행 출장소
 [그림출전 : 도영주·윤일주, 「1910년 이전의 부산의 양풍건축」, 향도부산 제3호, 1963, 286·288쪽]



十八銀行 釜山支店(1896년 개설)
 현재 없음 * 한빛은행 부산지점 부지사용

百三十銀行 釜山支店
 옛 五十八銀行 [1910년경 신축]
 현재 없음 * 대한생명 부산지점부지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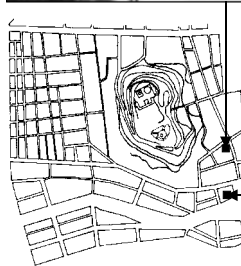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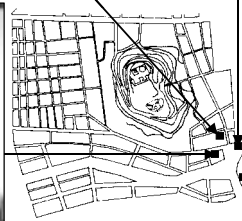
그림 3-14. 십팔은행 부산지점과 백삼십은행 부산지점
 [그림출전 : 도영주·윤일주, 「1910년 이전의 부산의 양풍건축」, 향도부산 제3호, 1963, 286쪽]



大阪商船會社 釜山支店(1890년 개설)
옛 상업은행 부산지점 부지사용



日本郵船會社 釜山代理店(1885년 개설)
중앙로 도로 부지사용



大池商店(1898년 개설)
농협 부산지점 부지사용



그림 3-15. 부산일본거류지에 진출했던 여러 회사와 공장(I)



釜山倉庫會社(1906년 개설)
현호빌딩 및 창국빌딩 부지사용



五百井支店(1881년 개설)
삼성증권 부산중앙지점 부지사용



釜山商業會議所(1882년 개설)
한일주차장 부지사용



五島合名會社(1909년 개설)
LG투자증권 부산중앙지점 부지사용

그림 3-16. 부산일본거류지에 진출했던 여러 회사와 공장(II)



그림 3-17. 부산일본거류지에 진출했던 여러 회사와 공장(III)

3-3. 교육시설(教育施設)

3-3-1. 초기 교육시설의 형성

부산항 주변에 가장 먼저 설립된 교육기관은 ‘초량어학소(草梁語學所)’로서 1873년 10월 초량왜관 내 침사옥(兪舍屋)에 개설되었으며 무역을 위한 일본인의 조선어학습을 위해 세워졌다. 어학소는 거류지 설정 이후 서정에 위치한 대곡사본원사별원(大谷寺本願寺別院)에 있었고 생도수는 모두 일본인들로 10명이었다.¹²⁶⁾ 원래 이 학교는 쓰시마(對馬) 이즈하라마치(嚴原町)의 광청사(光淸寺)에 있었던 조선어학소(朝鮮語學所)가 폐지되어 이전된 것으로 조선어에서 대화와 풍습 습득에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을 가르쳤고 1880년 도쿄의 외국어학교에 조선어학과가 생기자 폐지되었다.

거류지 설정 이후 목적에 의한 교육시설 보다는 거류주민의 자녀들을 위한 정규적인 교육시설설립의 요구가 점차 커져갔고 이에 1877년 거류민회의소 내 1실을 빌려 독서, 미술, 습자를 가르켰다. 그러나 장소의 협소함에 따라 본원사별원으로 이전하여 교육법규에 준거하여 교육했으나 소학교 수준은 아니었다. 1880년 관사의 일부를 불하 받아 수제학교(修濟學校)가 설치되었으며 7월부터 수업을 개시하였다. 1888년 서정1정목에 처음으로 학교를 신축하여 그해 11월에 완공하였다. 1885년 여아교육(女兒教育)에 관계하던 본원사별원이 학교를 개설하였으나 학교가 신설되자 합병시켜 부산공립소학교(釜山公立小學校)라 정하고 일본의 소학교령 규칙에 따라 수업연한을 심상(尋常), 고등(高等) 각 4년으로 하고 학교 유지비용을 전부 거류지 주민이 부담하였다.¹²⁷⁾ 처음 소규모의 교사(校舍)에서 시작한 교육시설은 거류지 인구증가와 함께 점점 확장되었으며 1902년 서정에서 대청정으

126) 大曲美太郎, 김의환 역, 「부산의 고적 및 유물」, 향도부산 제7호, 1969, 285쪽
초량어학소 생도내역

성명	淺山顯藏	吉副喜八郎	阿比留祐作	吉村平四郎	大石又三郎	武田甚太郎	津江直助	武田邦太郎	黑岩清美	中村庄次郎
연령	당24세	당28세	당19세	당22세	당20세	당19세	당17세	당20세	당20세	당18세

127) 부산일본영사관, 『경상도사정』, 1905, 제5교육

로 교사를 이전한 것이 그 정점이라고 할 수 있다.

3-3-2. 거류민단 사업과 교육시설

1905년 11월에 체결된 을사보호조약(乙巳保護條約)으로 각 지방의 이사청(理事廳)이 행정권을 담당하게 되어, 부산에서도 영사관이 이사청으로 대체되었다. 거류민단(居留民團)은 1906년 8월 15일 통감부령 제21호에 근거한 통감부고시 제76호로 부산의 전관거류지 및 절영도(絶影島), 초량(草梁), 부산진(釜山鎭), 구관(舊館)을 영역¹²⁸⁾으로 설립되었다. 그리하여, 이사청은 거류지의 정치·행정을 맡고 거류민단은 민정부분(民政部分) 곧 공공의무(公共義務)를 맡는 이원체계(二元體系)를 형성했다.

거류민단은 거류지 내의 공공사업을 주로 계획하고 집행하였고, 소위 “거류민단사업(居留民團事業)¹²⁹⁾”은 거류지 주민들의 민생(民生)에 관련된 건축물들의 신축(新築)·증축(增築)·개축(改築)에 관한 사항들이었다.

당시 거류민단은 여러 규칙들¹³⁰⁾에 의해 이사청의 관리·감독 하에서 거류지 일본인으로 구성되었고 소속 거류민들로부터 일정한 액수의 거류민세(居留民稅)를 징수¹³¹⁾하여 운영재원(運營財源)으로 삼았다. 거류지 내 주민이 거류민단원이 아닐 지라도 거류민단은 그들로부터 세금을 거두고 받을 수 있는 권리¹³²⁾를 소유했고 이렇게 징수한 세금으로 규정된 각종 공공사업을 시행하였다. 거류민단역소(居留民團役所) 사무조직에는 총무(總務)·서

128) 절영도는 오늘날의 영도를, 구관은 1678년에 설립된 초량왜관을 뜻한다.

129) 통감부훈령 제1호 「거류민단법시행규칙심득개정」(1909.2.6)에 의하면 세출부분에 土木費, 教育費, 勸業費, 衛生費, 救助費, 公園費, 墓地 및 火葬費 등 세부적으로 나누어 관리하였으며 학교는 교육비에 속함.

130) 통감부령 제21호 「거류민단법시행규칙」(1906.7.14) 및 통감부훈령 제15호 「거류민단법시행규칙실시심득」(1906.7.15)

131) 통감부 제21호 거류민단법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해 거류민단은 거류민단세·사용료·수수료 및 부역현품(賦役現品)을 부과, 징수할 수 있음을 규정

132) 통감부 제21호 「거류민단법시행규칙」 제24조에서는 거류민이 아니라도 거류민단의 지구 내 토지, 가옥, 물건을 소유·사용하거나 혹은 점유·영업하거나 지정행위를 하는 자는 토지, 가옥, 물건, 영업 혹은 그 수입 또는 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류민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니며 법인(法人)일 때도 동일하게 규정함.

무(庶務)·토목(土木)·징세(徵稅)·회계(會計) 및 수도(水道)의 6계(係)를 두었고, 그 중에 토목계(土木係)가 토목공사, 건축설계, 공유건물의 영선(營繕) 등을 맡았다.¹³³⁾

거류지에서 건축물은 설립주체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영사관이나 이사청이 주관한 경찰서나 전신국, 우편국 등의 관청건물이고, 두 번째는 거류민단이 주도한 학교, 병원, 수도시설, 교량, 가로 등이다.

거류민 인구의 증가와 함께 점차 학업 적령기의 인구도 함께 늘어남에 따라 새로운 학교의 건립이 요구되었다. 거류민의 증가는 사회적인 증가와 자연적인 증가를 들 수 있으며 앞선 그림 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00년 경부터는 호수에 비해 인구의 증가가 급속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이것은 부산거류민의 사회적 이주와 함께 출산에 의한 자연증가가 크게 늘어났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표 3-9.는 1906년부터 1908년까지 인구의 증가에서 본 출산율에 대한 대비를 나타낸 자료로서 출생에 의한 인구증가가 어느 정도 인지 추측 가능하다. 그림 3-18.은 남녀 성별·연령별로 면학가능 인구에 대한 비교를 나타낸 것이다.¹³⁴⁾

초기 생활영역이었던 서정주변에 건립되었던 교육시설들은 거류민단 설립에 발맞추어 정규적인 정도(程度)와 수업연한(修業年限)을 갖는 학교들로 발전하였다.¹³⁵⁾ 교육시설로서 신축된 건물은 1888년 11월 서정에 세워진 것으로 1893년과 1896년 두 차례의 교사 증축이 있었다. 건물의 규모는 교실 15개소(166평), 직원실 1개소(14평), 제실(諸室) 4개소(20평), 기타 14개소(77평)으로 총 33개소 277평이었다고 한다.¹³⁶⁾ 그러나 거류지 인구의 급

133) 도영주·윤일주, 앞의 논문, 247쪽

134) 통감부통계자료 중 1906년판과 1908년판 참조.

135) 통감부령 제3호 「소학교규칙」(1909.2)에서는 소학교를 분립하여 심상소학교와 고등소학교를 나누고 있다. 심상소학교와 고등소학교를 한 학교에 병치하여 설립할 수 있었다. 각각 4년제로서 고등소학교에서는 조선어도 가르치기도 하였다. 설립 시 반드시 이사관의 인가를 받아야 했고 인가 받을 시 학교의 위치와 평면도, 지명, 평수, 방위, 교사의 위치 및 건축현황, 그리고 통학구역과 인구, 경비 및 유지방법 등도 보고해야 했다.

136) 수제학교의 교사로 신축되었으나 그해 12월 수제학교와 여아학교를 폐지하고

속한 증가로 인해 그 수요를 증축을 통해서는 충족하지 못하게 되고 이어 1901년 3월 소학교령 시행규칙에 의해 설비준칙(設備準則)의 규정에 따라 아동 1,000명을 취학시키기 위한 교사개축의 논의가 일어났다. 새로운 부지를 물색하여 1902년 6월 외곽지역이던 대청정에 1,000명을 수용 할 수 있는 건물을 신축하게 되어 10월에 이전하였다. 이 건물은 공비 4만여원을 투자한 ‘부산 제일의 건물’이라는 찬사를 받을 정도로 규모가 대단했다.¹³⁷⁾ 교사부지가 365평, 기타 부지 41평, 체조장 1천평, 기타용지 694평으로 총 2,000평이었고 교사에는 교실 18개소 413평, 직원실 1개소 32평, 제실 6개소 171평, 기타 건물 150평으로 총 건평수 771평이었다.¹³⁸⁾ 이전 이후 거류지에 소학과정 밖에 없어 2년의 중학과정인 보습과(補習科)를 개설하였다.¹³⁹⁾

그러다가 1904년 11월 화재로 학교가 소실되어 다시 1905년 4월 그 부지 위에 재건축을 하여 1906년 1월 준공¹⁴⁰⁾하였고, 부지는 1,785평에 건물은 385평으로 공립심상소학교(第一公立尋常小學校라고도 함)로 교명을 개칭하였다.¹⁴¹⁾

이사청 설치 이후 재외지정학교직원퇴은료(在外指定學校職員退隱料) 및 유족부조법(遺族扶助法)¹⁴²⁾에 의해 거류민단립(居留民團立)으로 지정되었고, 이때 지정된 학교는 부산상업학교(釜山商業學校)·부산고등여학교(釜山高等女學校)·부산고등소학교(釜山高等小學教)¹⁴³⁾·부산심상소학교(釜山尋

부산공립소학교(釜山公立小學校)로 개칭하였다고 한다. 당시 설립된 규모는 교사부지 286.5평, 기타부지 63.5평, 체련장 650평 함께 1,000평이었고 화양철충식(和樣折衷式)건물로 아동수는 702명이었다. 김갑득, 『부산 일본전관거류지의 건축에 관한 논문』, 부산대 석사학위논문, 1987, 39~40쪽

137) 『경상도사정』, 제31부산거류지

138) 『경상도사정』, 제15교육

139) 이 학교의 총 교육과정은 尋常科 4년과 高等科 3년, 補習科 2년이 된다.

140) 학교시설은 校地 1784.55평, 運動場 1138.55평, 樹栽地 203,75평, 奉安所 42평, 校舍敷地 395.25평이었고 교사의 규모는 本館 2층 건물 238.5평, 講堂 78평, 化粧室 34평, 御眞影奉安所 1.5평, 露臺 6평, 渡廊下 20.75평, 小便室 및 倉庫 15평, 物置 3평이었다고 하며, 일식 기와잇기에 벽면은 비늘판 붙이기로 되어 있었다. 김갑득, 앞의 책, 41쪽

141) 1909년에 수업연한은 8년, 학급수는 17개소, 교원 13인, 생도 1,352인이었다.

142) 통감부고시 제10호(1907.2.6)에 의해 지정된 건

143) 통감부고시 제57호(1908.4.4)에 의해 부산심상고등소학교(釜山尋常高等小學教)

常小學校)·초량심상소학교(草梁尋常小學校)¹⁴⁴⁾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표 3-10.과 같다.¹⁴⁵⁾

초기 교육시설은 대부분 서정에 위치하였으나 규모가 확장됨에 따라 차츰 거류지 영역에서 벗어나 외곽으로 이전되어갔다. 그 시기는 1902년으로 당시 노일전쟁 직전이었고 거류지 경제도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었으며 규모가 어느 시설보다도 큰 교육시설로서는 발전하는 거류지 내에서 규모의 확장과 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웠다. 그림 3-19.는 거류지 내 교육시설의 변천에 관한 자료로서 교육시설들이 차츰 규모가 커지면서 분립, 이어 외곽으로 이전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교육시설이 떠난 서정의 자리에는 당시 부산거류지 경제의 규모와 중요성을 나타냈던 상품진열관이 들어섰다.

그림 3-20.은 서정에서 대청정으로 이전한 부산심상소학교의 위치와 사진으로 현재까지 초등학교 부지로 사용되고 있다. 건물의 구조는 목조 2층으로 기와가 덮힌 당시 널리 쓰여졌던 화양식으로서 별다른 특징은 보이지 않으며 당시 부산에서 1,000명 수용 가능한 최대 규모의 건축물이었다.

로 1908년 4월 1일 개칭되었다. 부지 및 부속지는 1,817평에 건물은 392평이었고 수업연한은 8년이며 학급수는 17개소, 교원 17인, 생도 386명이었다.

144) 초량심상소학교는 다른 부산거류민단립학교와 함께 설립되었고 위치는 현재의 초량부근, 부산심상소학교보다 규모가 적었고 1906년 당시 직원은 4명이었고 학생수는 154명에 불과하였다.

145) 통감부, 앞의 자료, 50쪽

표 3-9. 부산일본거류지 인구증가율과 출생율

	1906년	1907년	1908년
인 구 수(명)	18,236	19,734	24,534
비율증감(%)	-	↑ 8.21%	↑ 24.32%
출 생 율(%)	-	↑ 1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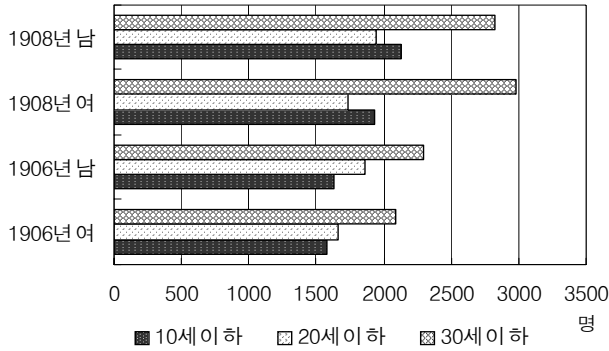


그림 3-18. 부산일본거류지 연령별 남녀 인구대비

표 3-10. 부산거류지에 설립된 학교(거류지 내 위치한 학교만 표시)

명 칭	설립자	정 도	직원(명)	학생(명)	비고
釜山居留民團立 釜山尋常小學校 (부산심상소학교)	부산 거류민단	심상소학	20	1,011	1889년 서경 1정목 (옛 새부산예식장)
釜山居留民團立 釜山高等小學校 (부산고등소학교)	부산 거류민단	고등소학	20	523	
釜山居留民團立 釜山高等女學校 (부산고등여학교)	부산 거류민단	고등여학	13	118	
釜山幼稚園 (부산유치원)	대곡과 본원사 별원		3	96	사찰부속으로 추정됨 (1904년 설립)



그림 3-19. 부산일본거류지 교육시설 변천과정



釜山尋常小學校[1906년 신축]
현재 없음*남광초등학교 부지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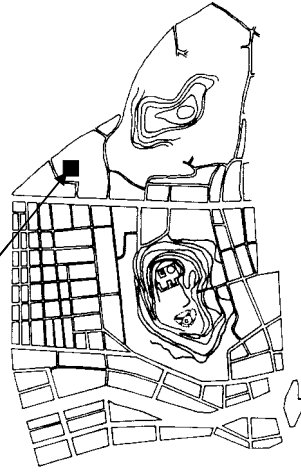


그림 3-20. 부산심상소학교

* 주기 : 부산심상소학교에 부산고등소학교와 부산고등여학교가 병설되었으나 1906년 신축 이후 그해 7월 고등소학교는 거류지 밖 보수정1정목 50-2번지(현 보수초등학교 부근)로 고등여학교는 1910년 토성정3정목(현 경남중학교)로 각각 분립·이전하였다.

[그림출전 : 도영주·윤일주, 『1910년 이전의 부산의 양풍건축, 향도부산 제3호 1963, 29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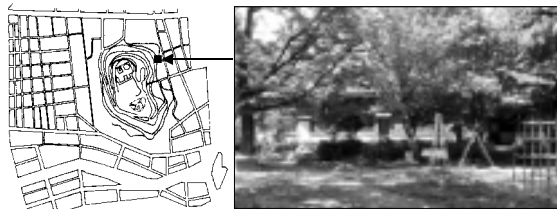
또 한가지 흥미로운 것은 통감부의 공식자료에는 나타나지 않으나 현장 조사 과정에서 근대건축으로 추정되는 건축물을 조사하던 중에 100여년전 부터 유치원 용도로 쓰여진 건물이 발견하였으며 건물소유자와 이웃의 증언을 통해서 건물에 대한 개략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¹⁴⁶⁾ 그러나 존재에 대한 단서가 될 문헌을 1936년 발간된 자료¹⁴⁷⁾에서 찾을 수 있었으며 또한 1905년 작성된 ‘경상도사정’을 통해 공립유치원(公立幼稚園)이 1910년 이전에 설립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경상도사정’에 의한 공립유치원의 성립배경¹⁴⁸⁾은 당시 거류지에서의 유치원은 본원사별원에서 운영하

146) 건물의 소유자는 1945년 이후 정부로부터 이 대지와 건물을 불하 받았다고 하였으며 이웃들도 모두 100년 이상 유지되어 온 건물이라 증언하였다.

147) 大曲美太郎, 김의환 역, 앞의 책, 278쪽에서 東向寺址에 대한 내용에서 ‘…龍頭山 北 本町3丁目28番地(公立幼稚園下)’란 구절을 찾을 수 있었다.

148) 부지의 소유자도 확실하지 말하지 않았으나 어떤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그 비용에 의해 성립되었다고 증언하였다.

는 유치원이 유일하였으나 사립유치원이라 경비의 지출이 심해 매년 증가하는 유아들을 위한 공립유치원의 필요성이 절실했다. 이에 1901년 황태손(昭和天皇을 가리킴)탄생기념으로 유지들로부터 기부금을 모집하여 공립유치원 창립비로 모아 거류지역소에 위탁하였다고 한다. 기록 당시인 1905년에는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기록되고 있어서 아마 공립유치원의 건립 연대는 1906년 이후로 추측된다. 그림 3-21.은 공립유치원의 위치와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公立幼稚園(1910년 이전으로 추정) * 현재 주택으로 사용

그림 3-21. 공립 유치원의 위치와 모습

3-4. 종교시설(宗教施設)

3-4-1. 부산 종교시설의 형성

거류지의 종교는 초기에 그 활동이 미미했지만, 거류민 가족들의 이주와 함께 여러 가지 종교가 유입되었다. 새로운 정착지를 찾아 온 거류민들은 정신적 안식(安息)을 베풀어주는 신성한 장소를 필요로 하였다.

부산에 초랑왜관이 설치되었을 때, 왕래하는 이들의 안전을 위해 왜관 부근 용두산에 금평신사(琴平神社)가 세워졌고, 용두산 중턱에 변천사(辨天社)도 세워졌다.¹⁴⁹⁾ 그림 3-22는 거류지 설정 당시의 도면에 표시된 종교 시설에 관한 자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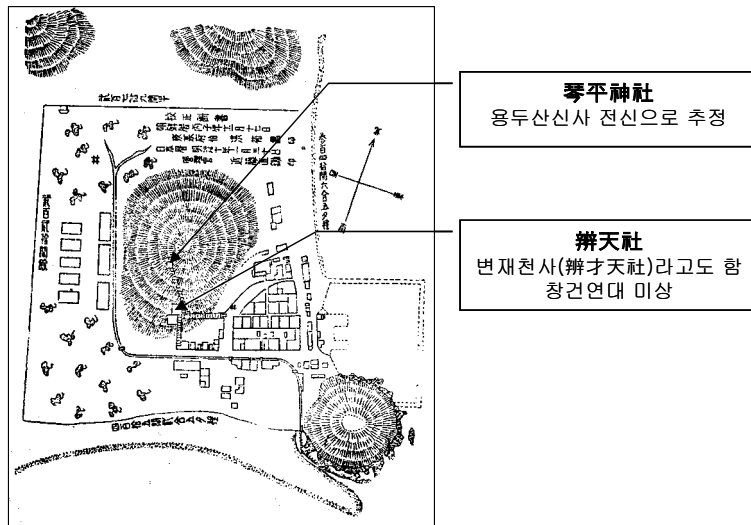


그림 3-22. 초랑왜관 당시 세워진 종교시설

[그림출전 : 손정목, 『한국개항기도시변화과정연구』, 일지사, 1994, 97쪽]

149) 『부산부사원고(釜山府史原稿)』 개항편 179쪽의 지도에는 1875년경 두 종교 시설의 위치가 기록되어 있으며, 변천사는 1905년 전후까지 존속하였다.

부산일본거류지가 설정되었을 때 이미 이 두 곳의 신사는 폐허가 되어 있었고 1880년에 거류민자체단체였던 보장두취(거류민단의 전신)에서 유지관리를 결정하였다. 그 결과 신사의 수선과 개축의 비용을 기부금을 통해 조달하기로 하고 1881년 거류지회에서 의결안으로서 의결되었다.¹⁵⁰⁾

그 이후 수많은 거류지회의 의결안¹⁵¹⁾을 통해 용두산신사¹⁵²⁾는 보수가 행해졌으며 당시 명칭은 꿈삐라진자(金刀比羅神社)였으나 1894년 거류지신사로 개명되었고 1897년 10월부터 1898년 5월까지 기부금 8,000원과 거류지비 2,000원이 보조되어 신축되었고 1899년 2월 4일 최종적으로 거류민회의결을 통해 용두산신사로 불리게 되었다. 그림 3-23은 1903년 당시 거류지를 나타내는 그림으로 수 채의 건물이 신사 영역 내에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새로 신축된 용두산신사에는 신전(神殿) 14평, 배전(拜殿) 21.25평을 비롯하여 경내에 신선소 4평, 사무소 약20평 이외에도 화장실 2개소가 설치되어 있었다.¹⁵³⁾

1907년에는 호기(呼崎)라 불리우던 용미산에 5,192원을 소요하면서 신사를 개설하였으며, 원래는 1894년에 거류지신사라 불렸으나 1908년 용미산신사라 개칭하였다. 당시 용미산은 전등회사 발전소로 인하여 굴뚝에서 나오는 오염된 검은 연기는 그 많던 소나무(喬松)들을 고사시켜 버렸다.¹⁵⁴⁾ 또한 주위가 부산항과 인접하여 여러 회사와 상가들이 입주하여, 공원으로 조성되어가던 용두산신사와는 달리 신사로서 그 기능을 오래 간직하지 못했다.¹⁵⁵⁾ 후일 이 부지에 부산부청(釜山府廳)이 들어섬으로 인해 신사는 사

150) 월급료 3원의 청소관리인을 두고 기부금 모집에 대한 세부안을 계획하였다. 大曲美太郎, 『釜山龍頭山神社料』, 부산용두산신사사무소, 1936, 7~8쪽[재인용 : 강신용, 『한국근대공원사』, 조경, 1995, 59쪽]

151) 의결 중 총대사무소 회의에서 ‘꿈삐라진자 개축 및 변천사 수선에 따른 특별 유지대리위원 권한 및 선거규칙’(1882.1.30)을 제정하여 신앙자의 기부금으로 신사개축비용을 충당하고 은행 지점장 등으로 구성된 대리위원 5인을 선출하였다. 大曲美太郎, 앞의 책, 13~16쪽[재인용 : 강신용, 앞의 책, 59쪽]

152) 1910년 「통감부통계연보」에는 창립일이 “연보(延寶) 6년 3월”로 기록되어 있다. 연보 6년은 1678년이다.

153) 거류민단이 통감에게 제출한 <신사자격부여에 관해 상소함>(1907.5.31)에 의함. 大曲美太郎, 앞의 책, 71~75쪽[재인용 : 강신용, 앞의 책, 61쪽]

154) 大曲美太郎, 김의환 역, 앞의 책, 288쪽

155) 거류민단 세출내역에서 공원비(公園費) 명목이 나오는데 1908년 당시 공원비

라졌다.1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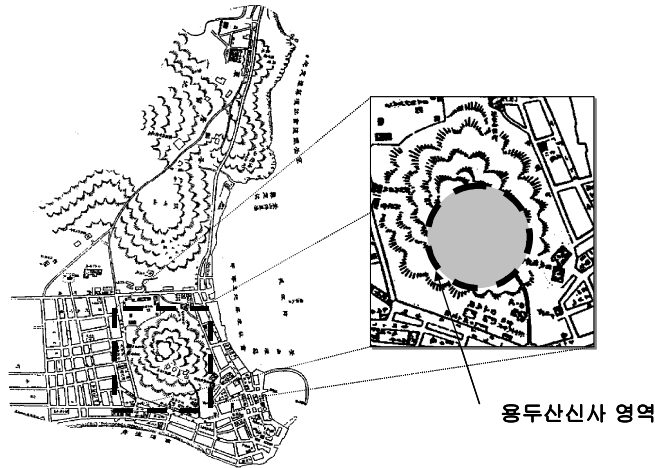


그림 3-373. 용두산신사 영역의 건축물들
[그림출전 : 손정목, 『한국개항기도시변화과정연구』,
일지사, 1994, 10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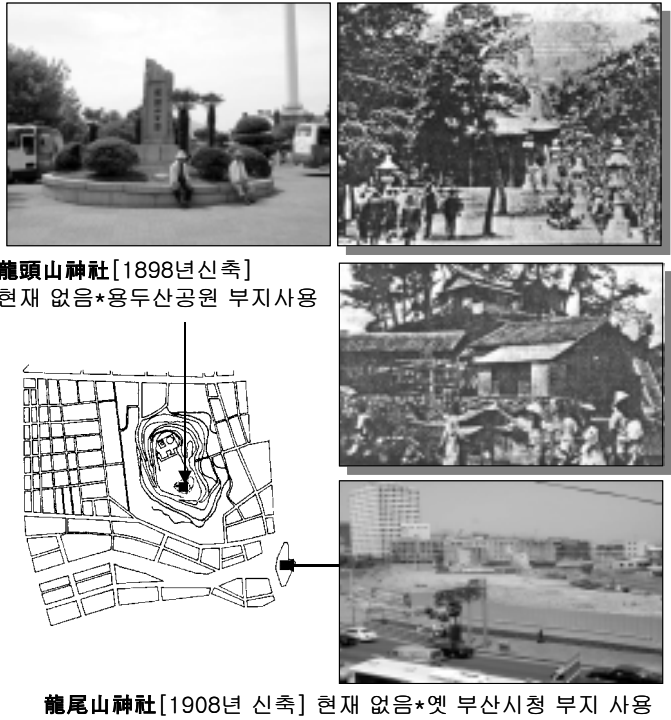
그림 3-24.는 1910년경 용두산과 용미산신사의 모습으로 이미 신사로서 그 규격이 갖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신사 이외 초량왜관시기에 설립되었던 불교계통 종교시설로는 본정에 동향사(東向寺)가 있다. 동(東)으로 향(向)하고 있어 사호(寺號)가 붙었다고 전하며 일설에는 두모포왜관 시기부터 있었다고 한다. 이 절의 주지는 왜관 내 불사(佛事)를 관장하였으며 1876년 폐사(廢寺)되었다. 동향사가 폐사된 이후 빈 가옥에는 서정에 위치했던 초량어학소의 학생기숙사(學生寄宿

는 2,180원이 지출되고 있다. 이것은 용두산신사 경내 정비비(整備費)로 추측된다. 그리고 시가지 확장으로 용미산은 신사를 제외하고 모두 개삭(改築)되었다. 강신용, 앞의 책, 60쪽

156) 1910년 이전 거류지의 신사 자료에 의하면 용두산·원산(1882), 인천(1890), 경성(1897), 진남포(1900), 군산(1902), 용천(1904), 대구(1906), 대전(1907), 청진·마산(1909), 목포(1910) 이상 12개라 하며 용미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小山文雄, 『神社の朝鮮』, 조선불교사, 1934, 108~109쪽[재인용 : 손정목, 『일제강점기도시사회상연구』, 일지사, 1996, 595쪽]

솜)로 이용되었고 이후 경찰서가 들어선 적도 있었다. 동향사 부지는 현재 동광동 일대로 여관이 이 부지를 사용하고 있다. 그림 3-25.는 1936년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이 동향사 부지에 관한 내용에서 공립유치원에 관한 기록이 나온다.¹⁵⁷⁾



龍頭山神社[1898년 신축]
현재 없음*용두산공원 부지사용

龍尾山神社[1908년 신축] 현재 없음*옛 부산시청 부지 사용

그림 3-24. 용두산신사와 용미산신사
[그림출전 : 강신용, 『한국근대도시공원사』, 조경, 1995, 59~60쪽]

157) 大曲美太郎, 김의환 역, 앞의 책, 278~27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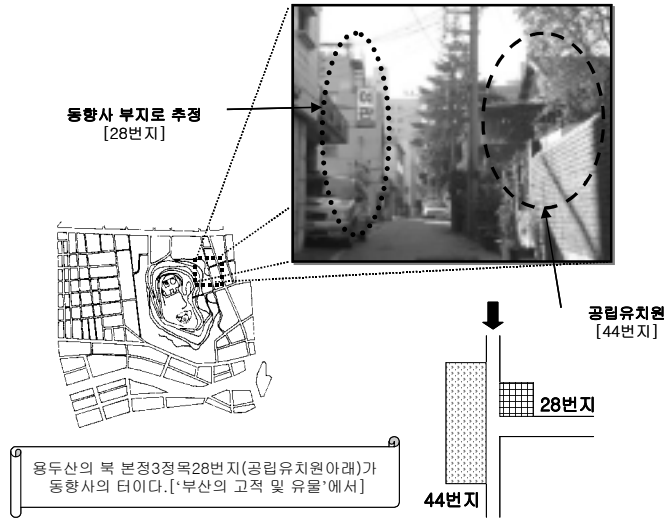


그림 3-25. 동향사와 공림유치원

3-4-2. 종교시설의 발전과 변천

용두산신사와 용미산신사 이외 남빈정에 수산신사(水産神社)가 설치되었다고 하며, 수산신사를 제외하곤 직업적인 신관(神官)이 신사를 관리하고 있었다. 통감부통계자료¹⁵⁸⁾에 의하면 신관은 직업 중 하나였고 그들의 모임인 전국신직자평의회(全國神職者評議會)가 조직되어 있었다.¹⁵⁹⁾ 거류지 시기에는 신사를 거류민단에서 관리하였으나 1910년 이후 조선총독부령에 의해 신관직은 다른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¹⁶⁰⁾ 표 3-11.은 부산일본거류지에 있었던 신사에 관한 자료이다.

158) 4차에 걸친 『통감부통계연보』에서 ‘現在本邦人職業別’에서 神官이 분류되고 있다. 1908년편 부산에는 신관이 2戶 2인이 있었다.

159) ‘…1910년의 강점 직후 東京 飯田町에서 개최된 全國神職者評議會에서…’

손정목, 『일제강점기도시사회상연구』, 일지사, 1996, 596쪽

160) 총독부령 제50호 「신직임용 봉무 및 복장규칙」(1916.6.29)에 의해 자격에 대한 규정을 새롭게 하고 있다.

표 3-11. 부산일본거류지에 설립된 신사

명 칭	소 재 지	설립연월일	신관(神官)
용두산(龍頭山)신사	금평정 [비현존]	1678년 3월, 1898년 5월 재건축	1명
용미산(龍尾山)신사	본정 [비현존]	1678년 3월, 1902년 9월 재건축	1명
수산(水産)신사	남빈정	1903년 10월	-

신사 이외 거류지에 유입된 각종 불교(佛敎) 종파들의 종교시설들은 대부분 서정(西町) 주변에 건립되었다. 당시 일본거류지에는 표 3-12와 같이 일본인 이외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¹⁶¹⁾ 종교시설들은 비록 일본거류지에 있었지만 표 3-13.에서 보듯이 일본인뿐만 아니라 거류지에 출입하던 한국인들과 외국인들도 포교의 대상으로 삼기도 하였다. 이들 종교시설은 시설 수도 많았고 규모도 다른 거류지에 비해 장대(壯大)¹⁶²⁾하였으며 표 3-14.로 부산일본거류지 종교시설의 규모와 시설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신도들이 주로 거주하고 종사하는 지역인 서정(西町)에 주로 위치했던 종교시설들은 유치원정도의 교육시설을 설치하는데 그쳤다. 이것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거류민단(居留民團)이 교육시설을 관리하였기 때문이며, 종교시설과 더불어 교육시설이 들어오는 기독교와의 차이가 보인다. 통감부통계자료¹⁶³⁾의 일본인이 설립한 교육시설들에서 거류민단립제학교(居留民團立諸學校)를 제외하면 종교시설이 건립한 학교로는 유일하게 ‘부산유치원(釜山幼稚園)’¹⁶⁴⁾이 나타나고 있다. 그 설립기관은 불교계통인 부산대

161) 영사관령 「본항거류지에 있어서 외국인에게 가옥 대여할 때에는 영사에게 보고하는 건」(1889.6.9)에 의하면 거류지 내 가옥에 대해서 일본인만이 가질 수 있으며 빌릴 수 있었다. 그러나 외국인에게 빌려 줄 때는 반드시 영사의 인가를 받아야 했다.

162) 『총독부통계연보』에 의하면 타 거류지의 사원에는 주직 1명을 둔 것이 일반적이거나 부산거류지의 사원에는 주직을 3인 심지어 4인까지 두었다. (『조선총독부통계연보』 1910년 편)

163) 통감부, 「통감부통계연보」, 고도활판소, 동경, 1907

표 3-12. 부산거류지 거류자 국적별 인구분포[출전: 『통감부통계연보』]

	일본인	조선인	청국인	기 타	합 계
호 수	5,544	4,555	32	10	10,141
인구(명)	21,057	19,824	178	22	41,081

표 3-13. 일본인설립 종교시설과 포교자·신도수와 구성[출전: 『통감부통계연보』]

종 과	교무소 (敎務所)	설교소 (說敎所)	포교사 (布敎師)	신 도(信 徒)[명]			
				일본인	한국인	기타 외국인	합 계
신도 (神道)	2	2	3	1,349	269	1	1,619
불교 (佛敎)	4	2	12	9,120	20		9,140

표 3-14. 부산일본거류지 일본인설립 사원[출전: 『통감부통계연보』]

종과 및 명칭	소재지	설립연월	주직(住職)
智山派高野山	대청정	1898년 5월	1명
眞宗本願派西本願寺	서정4정목	1899년 8월	3명
眞宗大谷派本願寺別院	서정1정목	1872년 8월	4명
曹洞宗總泉寺別院	곡정	1902년 5월	3명
淨土宗智恩寺	대청정	1897년 9월	3명
日連宗妙覺寺	서정2정목	1881년 3월	3명

곡과본원사별원(釜山大谷派本願寺別院)이였고 ‘부산유치원’은 1907년 1월 24일에 부산거류민단립의 여러 학교들과 함께 재외지정학교(在外指定學校)

164) 설립연대는 1897년 3월로 사원 안에 부설된 것으로 보이며 1906년 당시 유치원 직원은 3명이었고 생도수는 96명이었다.

로서 지정 받았다. 대곡과본원사별원에는 1880년 이전에 초량어학소가 있었으며 아마 그 시설 위에 유치원을 건립한 것으로 보인다.¹⁶⁵⁾

종교의 선포(宣布)는 통감부(統監府)가 직접 관리·감독¹⁶⁶⁾하였다. 거류지에서 종교관련 건물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할 이사관의 인가(認可)를 받아야 했고 그 관리와 유지에 관한 방법까지 이사관에게 보고해야 했다.

그림 3-28.과 그림 3-29.는 현재 거류지시기 세워진 종교시설의 부지 사용에 관한 자료로서 현 대각사 부지를 제외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조계종 대각사의 건축물은 한국전쟁 이후 화재로 인해 과거의 목조 건물은 소실되고 그 부지 위에 현재의 건물을 신축하였으며 대웅전 양편에 위치한 두 개의 등은 절이 세워질 당시에 세워졌다고 한다. 대웅전 건물 양편으로 서 있는 건물들은 대부분 근대에 재건축 되었으며 대웅전 뒷편 상가건물들은 본래 스님들의 숙소로 이용되었던 건물을 헐고 세워졌다고 한다.¹⁶⁷⁾ 대각사의 본래 배치와 현재모습은 그림 3-26.과 그림 3-27.로 나타낼 수 있다.

165) 통감부통계자료를 통해 부산유치원은 1897년 井上香憲에 의해 창립되어 1904년 사찰 부속으로 건물을 설립하여 1907년에 이사청으로부터 지정 받았다.

166) 통감부령 제45호 「종교의 선포에 관한 규칙」(1906.11.27)은 종교시설의 각 명칭과 그 소재지, 종교의 명칭, 관리 및 유지방법에 대하여 인가를 요구하고 있다.

167) 현 조계종 대각사 주지스님의 증언을 통해 작성·기록하였다. 주지스님은 현재 건물의 신축연대를 1950년대 이승만 정권 시기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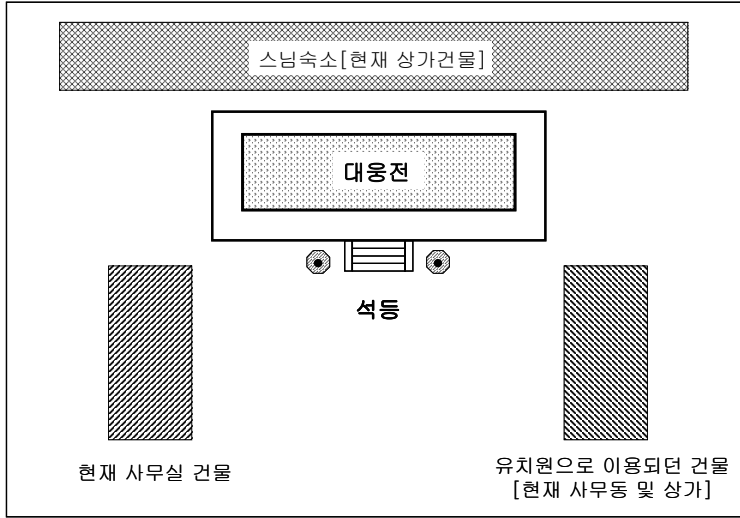


그림 3-26. 부산 진중대곡파본원사별원 추정 모식도
 * 주기 : 조계종 대각사 주지스님의 증언에 근거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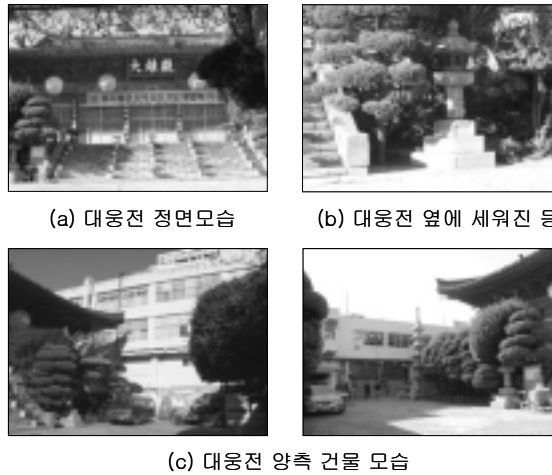


그림 3-27. 현재 부산 조계종 대각사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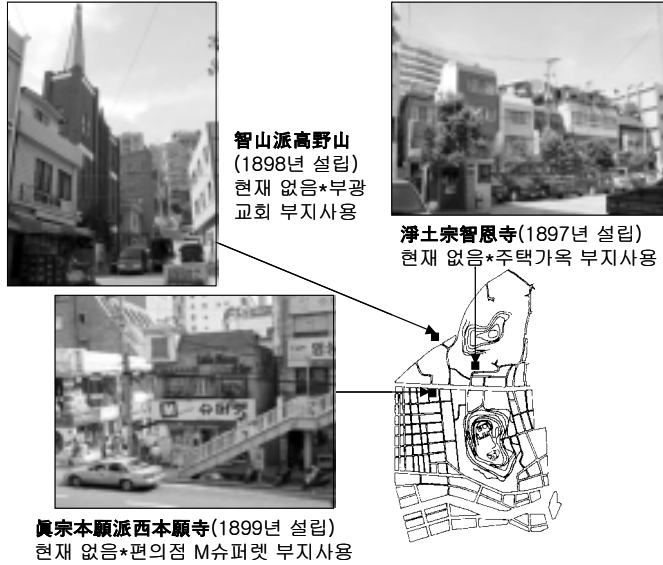


그림 3-28. 부산일본거류지 종교시설(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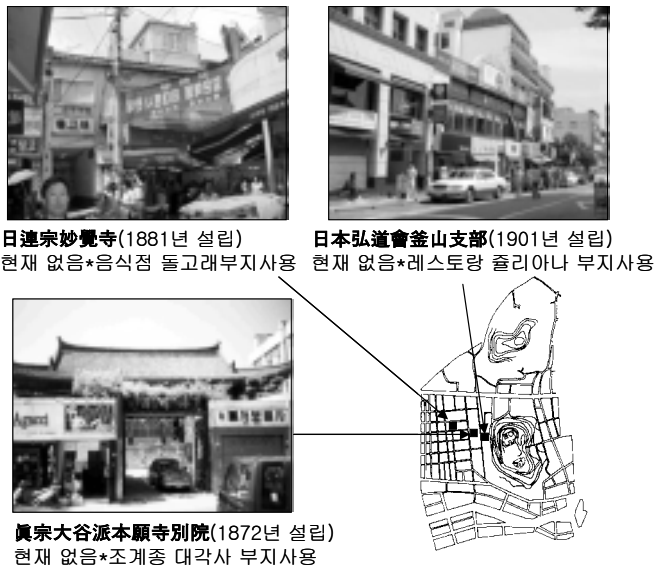


그림 3-29. 부산일본거류지 종교시설(II)

* 주기 : 일본홍도회는 일종의 수련단체로 종교단체는 아니었다. 일찍 교육사업에 참여하여 1899년 거류지에 중학교정이 없자 학교를 사무실에 개설하여 운영하였으나 1901년 보습과의 설치로 폐지하고 그 자리에 1903년 부산도서관을 개설하였다.

3-5. 기타시설(其他施設)

3-5-1. 거류지에서의 다양한 직업분화

1880년 영사관에서 부산일본거류지 거주민에 대한 영업별 조사를 실시했을 때 표 3-15와 같이 영업을 겸업하는 호수(戶數)가 다수였다. 영업별로 직업을 나누는 것은 시대에 따라 달랐지만 최초 거류민 종사직업의 분류에는 여전히 에도시대(江戸時代) 업종 구분기준으로 분류하였다.¹⁶⁸⁾ 그리고 1881년의 영업규칙에서는 다른 표현으로 업종을 15종으로 분리하고 있다.

1906년 통감부의 통계자료에서는 근대적인 직업별 구분을 통해서 16종으로 규정하였다.¹⁶⁹⁾ 이 직종 구분방식은 1910년 통계까지 계속 지속되었으며 이것을 근거로 업종의 취체(取締)와 규칙(規則)을 적용하고 있다.¹⁷⁰⁾

표 3-15. 부산일본거류민 영업별 조사[출전: 『부산부사원고』]

영업및겸업 (營業及兼業)	戶數	영업및겸업 (營業及兼業)	戶數	영업및겸업 (營業及兼業)	戶數	영업및겸업 (營業及兼業)	戶數	영업및겸업 (營業及兼業)	戶數
貿易商	34	仲買兼小賣	8	船問屋	3	飲食店兼仲買	3	料理屋	15
船問屋兼貿易	2	仲買雜商	34	貿易兼仲買	5	旅籠屋兼仲買	1	飲食店	13
仲買兼貿易	3	小賣兼旅籠業	1	仲買	152	仲買兼雜業	1	旅籠屋兼飲食店	1
小賣雜貨兼貿易	4	國立銀行	2	小賣雜貨兼仲買	3	小賣兼雜業	1	雜店	11
小賣兼貿易	2	海運會社	1	質屋兼仲買	1	質屋	4	請工	43

* 주기 : 船問屋 : 해상운송대리업자 旅籠屋 : 여관, 여인숙 質屋 : 전당포

168) 船問屋 같은 직업은 에도시대 업종이었다.

169) 16종을 나열하면 官吏, 公吏, 敎員, 神官, 僧侶, 宣敎師, 辯護士 및 訴訟代理人, 醫師, 産婆, 農業, 商業, 工業, 漁業, 雜業, 藝娼妓, 酌婦, 勞力, 無職業이다.

170) 예를 들면 통감부령 제9호 「번호사규칙」(1909.5)이나 대구이사청령 제10호 「음식점취체규칙」(1908.10), 진남포이사청령 제4호 「예기 및 작부영업위체규칙」(1908.12), 청진이사청령 제3호 「음식점취체규칙」(1909.2) 등

3-5-2. 거류지 시설에서의 취체와 규칙

다양한 직업의 분화는 각종 시설물의 건립을 유도해나가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며 더불어 직종에 적합한 시설물의 설치는 건축물의 다양성을 수반한다. 부산일본거류지에서도 여러 시설물의 건립에서 사회적으로 필요가 요구되거나 규제가 필요할 경우 건축물에 취체와 규칙을 적용하였다.

현재까지 현존하지 않는 시설물에 관하여 조사할 때, 당시 건축물에 적용되었던 취체와 규칙들은 당시의 시설물 기준이나 특성 등 건축물에 요구되는 성질을 추정할 수도 있다. 기타시설에 관한 이 장에서는 비록 건축물은 남아있지 않으나 각종 제도적 장치에 관련되어 남겨진 자료를 토대로 건축의 특성에 관하여 고찰해 나간다.

일본은 시정(市政)에 있어서 취체와 규칙 형식으로 법령을 제정하였고 이것을 경찰서나 헌병대로서 관리하였다. 부산일본거류지와 부산이사청의 성립 이후 부산에는 일본이 정한 취체와 규칙에 의해 이들 영업상 건축물 설립에 통제와 관리가 이루어졌으며 1908년 당시 ‘경찰상취체영업(警察上取締營業)’이란 명목하에 통제된 영업수는 95종이었다. 거류지에 다양한 직업이 생겨나기도 했지만 기존 직업에 대한 통제의 수단으로 취체와 규칙을 제정하기도 하였다.¹⁷¹⁾ 오늘날 일반적인 업종이라 여겨지는 요리점(料理店)과 음식점(飲食店), 연극장(演劇場), 청량음료수판매(清涼飲料水販賣), 빙제조(氷製造), 밀감수제조(蜜柑水製造), 육류판매(肉類販賣) 등도 모두 취체상 영업에 속하였다.

영업상 취체의 적용을 받는 시설물은 규정된 시설제한에 의해 설립되어야 했다. 부산일본영사관령과 부산이사청령을 통해 1876년부터 1910년까지 각종 시설에 적용된 규칙과 취체에 의한 건축물 제한에서 당시 건축에 대한 특성을 추측할 수 있다. 표 3-16.은 1908년 당시 부산에서 취체상 영업에 속했던 시설에 대한 통계¹⁷²⁾를 나타낸 것이다.

171) 취체영업 중에는 銃砲商이나 火藥商, 人力車營業, 馬車營業 등의 직업도 있지만 醫師, 齒科醫, 藥劑師, 産婆와 같은 직업도 이 대상에 속했다.

표 3-16. 부산이사청 관할 경찰상 취체영업(1908년 당시)

종별 (種別)	개소 (個所)	종별 (種別)	개소 (個所)	종별 (種別)	개소 (個所)	종별 (種別)	개소 (個所)	종별 (種別)	개소 (個所)
銃砲商	3	印刷及彫刻	13	觀物席	-	給水業	-	寫眞業	10
火藥商	3	印刷業	13	遊船	2	牛乳搾取	5	新聞賣捌所	-
刀劍商	-	旅人宿	92	渡船	7	牛乳請負	-	賣卜者	3
煙火製造	-	下宿屋	34	私立病院	3	獸肉販賣	63	金銀細工	6
煙火販賣	3	木賃宿	3	醫師	42	獸肉請負	62	鋸力細工	-
鍛冶	50	料理屋	66	齒科醫	3	肉類販賣	-	鑄物及鑄珪	-
烟筒火器營業	7	飲食店	204	産婆	17	飲食物行商	150	時計商	-
氣船氣罐製造	5	貸座敷	16	藥劑師	4	屠獸場	6	自轉車貨	-
煉瓦及瓦製造	1	藝妓	69	藥種商	43	屠獸人	5	豆乳製造販賣	1
石灰及灰製造	1	娼妓	155	藥種請賣	-	市場	4	石鹼製造	-
人力車營業	43	酌婦	536	製藥師	-	獸骨販賣	-	電氣使用工場	1
人力車輓子	71	遊藝出稼人	30	鍼灸	32	火葬場	2	獸醫	-
馬車營業	3	待合茶屋	-	入齒齒援	-	胞衣取扱	1	汚物掃除	-
馬車馭者	8	雇人口人業	16	按摩	10	理髮業	53	掃除請負	-
勞働者	1555	湯屋	29	接骨	-	女髮結	80	請負業	-
勞働組合	1	溫泉浴場	2	氷製造	2	艇船業	3		
擔軍請負	2	貸席	-	氷雪請負	235	船夫	44		
古物商	116	定寄席	-	清涼飲料販賣	26	回漕業	-		
質屋	27	演劇場	3	레몬水製造	5	運送業	-		
競賣所	-	遊戯場	69	蜜柑水製造	5	代書業	11		

* 주기 : 위의 자료는 『통감부통계연보』(1908년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며 ‘-’가 표시된 직종은 비록 부산이사청 관할에는 없었으나 다른 관할 이사청에는 있었던 직종이다.

3-5-3. 부산일본거류지에서의 연극장(演劇場)

172) 통감부, 『통감부통계연보』, 동경제본합자회사, 1910, 198~202쪽

부산일본거류지의 연극장(演劇場)은 일본인에 있어 가부키(歌舞伎)라고 하는 일본문화의 정수를 서민에게 있어서 문화생활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장소이다. 일본이 개항되기 이전 에도(江戸)가 번성했을 때 가부키와 시바이코야(芝居小屋)¹⁷³⁾는 함께 에도의 서민문화를 대표하였다. 비록 마을 한 가운데는 차지하지 못했으나 개발의 최전선에 있는 수제(水際)는 항상 그들이 차지할 수 있는 유흥의 공간이었다고 한다.¹⁷⁴⁾ 일본의 소자본가들(즉 그들은 서민이다)이 기회를 가지고자 타국의 땅 거류지에 살러 왔을 때, 그곳엔 서민의 문화가 주류였다.

부산일본거류지엔 1908년 당시 연극장이 3개소가 있었다. 그리고 부산이 사청령 제1호 「극장기석취체규칙(劇場寄席取締規則)」(1910.4.1)은 이런 거류지에서의 서민 문화시설을 규정하는 건축의 규칙이 되었다.¹⁷⁵⁾

당시 극장과 요세(寄席)¹⁷⁶⁾는 같은 공연장이라고 하나 차이가 있다. 극장 즉 가부키는 서민 중에서도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어야 구경할 수 있는 오락이었고 그 정도에도 못 미치는 자는 요세에 가야만 했다. 요세는 약간의 입장료만으로도 가부키는 아니지만 라쿠고(落語)¹⁷⁷⁾나 곡예, 기술(奇術) 등을 볼 수 있게 해 주었다.¹⁷⁸⁾ 그런데 부산일본거류지에는 요세(통감부통계 연보에서는 정기석(定寄席)으로 표시)가 없고 연극장만 있었다.

부산일본거류지에 설립되었던 연극장의 상세한 건축적 특징은 알 수 없으나 아마 근세 이후 발달한 가부키 공연장인 시바이코야가 가지는 규모 이상의 구조를 가졌을 것이라 추측된다. 부산의 거류지는 일본의 도쿄도 아니고 발달된 본토 도시 수준도 아니었으며 단지 일본인 중 서민들이 모여 살던 장소였기 때문에 멀리 지방이 지니는 수준 정도의 건축술로 설립 되었을 것이다.

173) 연극을 흥행하는 건물로서 극장으로 쓰임.

174) 藤井惠介·玉井哲雄, 『建築の歴史』, 東京, 中央公倫社, 1995, 239쪽

175) 최초 규칙은 1895년 7월 제15호 「극장취체규칙(劇場取締規則)」이다. 1895년 당시 이미 거류지에는 연극장이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극장기석취체규칙(劇場寄席取締規則)」의 시행으로 앞서 규칙은 제11조에 의해 폐지되었다.

176) ‘요세세끼’의 준말, 서민들을 대상으로 재담이나 만담을 들려주는 소극장

177) 일종의 일본식 재담

178) 에드워드 사이덴스티커, 앞의 책, 34쪽

극장기석취체규칙에서는 이들 건축에 상당한 제약을 가하고 있다. 그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반드시 건물의 위치와 사방의 약도, 부지의 평수, 구조 사양서와 도면, 손님의 정원, 등화(燈火)의 종류와 장치(裝置) 도면 및 사양서 그리고 극장의 관리자 성명과 주소를 경찰서에 제출토록 하였다(제1조). 더하여 공사 낙성 때 경찰서의 검사를 받아야했으며(제2조) 설치 주위에 관공서나 학교, 병원, 기타 중요한 건조물에 대해 상당한 거리를 두도록 하였다(제3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제4조의 내용으로 구조 및 설비에 11가지 규정을 더하였다. 규정의 상세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주초(柱礎), 동량(棟梁) 기타의 재료는 견고한 것을 사용하고 옥상(屋上)은 불연질물(不燃質物)로서 지붕잇기(葺)¹⁷⁹⁾를 해야 한다.

1893년 도쿄 야나기바시(柳橋)근처에 있었던 일본에서 유명한 가부키 극장인 나카무라(中村)좌¹⁸⁰⁾도 화재로 인해 소실되었으며 목조구조물이 대다수인 일본은 많은 화재로 인해 시가지가 자주 소실되었다. 개항 이후 문명 개화를 추구한 일본은 항상 도시와 시가지에 화재 예방에 대해서 여러 대책을 세웠고 대비책으로 소방규칙(消防規則)을 제정하여 의무적인 화재 예방을 추구하였다. 부산에서도 수화재(水火災) 기타 비상재해의 경계와 방비를 위해 부산거류민단 지역 내에 소방조(消防組)조직하였다.¹⁸¹⁾ 공적인 소방조직으로도 부족하여 의용소방조(義用消防組)까지 조직하였던 것이 부산거류지였다.¹⁸²⁾ 표 3-17.은 1909년 당시 화재의 상태를 나타내는 자료로서 그 피해가 상당하였다.

179) ‘葺’는 지붕을 이다라는 뜻이다. 참고 : 『옛센스일본어한자읽기사전』

180) 에도의 대표적인 가부키 극장 세 곳은 나카무라좌, 이치무라좌, 모리타좌이다.

181) 부산이사청령 제7호 「소방조규칙」(1909.9.5)이며 이 법령 제정 이전에는 영사관 달 제4호 「시설소방조에 관한 건」(1901.4)이 준용되었다.

182) 부산이사청령 제8호 「의용소방조규칙」(1909.9.5)

표 3-17. 1909년 당시 부산일본거류지 화재 현황

	失火	放火	電火 및 不審火	類燒	延燒	不燃燒	戶數	坪數	損害 價額
부 산	12건	1건	2건	1건	5건	11건	55호	521평	20,938.30원

화재는 규모가 큰 연극장을 한적한 바닷가 근처를 보내는 데에 충분한 이유가 되었다. 남빈해안과 가까운 남빈정(南濱町 : 현재 남포동일대)은 과거 시바이코야가 즐겨 설치되던 수제공간(水際空間)의 하나였다. 흥미로운 사실은 남빈해안과 인접한 남빈정과 행정, 입강정은 거류지에서 손꼽히는 화재지역이었다. 영사관고시 제23호 「남빈대화지(南濱大火地)의 시구개정(市區改正)」¹⁸³⁾(1902.11.27)에서 이들 지역은 ‘이재지(罹災地)’라 표현하고 있다. 화재지역이 몽땅 다 타버려 이 지역에 새로운 시가지와 도로를 개설 하므로 새로운 차지권(借地券)을 거류지역소에서 교부 받아 가라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빈번한 화재는 불연재료를 건축자재로 요구하였다.

② 건물의 주위는 3칸(도로 하수 등은 이를 산입함) 이상의 공지(空地)를 존치해야 함.

부산이사청령고시 제9호 「부산일본제국전관거류지내 시가도로구획 개정」(1908.6.19)에서는 거류지 내 시가도로에 대한 상세한 연장(延長)과 폭원(幅員)이 기재되고 있다. 초량왜관시기부터 존재했던 장수선(長手線)의 경우 ‘영역은 본정1정목에서 해안에 이르는 직선 및 같은 장소에서 분기하여 매축지 대도로에 이르는 1등 도로로서 연장 107칸(약 194.5m) 폭원 본정1정목에서부터 해안까지 41칸(약 74.5m)은 7칸 구거부(溝渠敷)를 포함하지 않고 분기점에서부터 매축지까지 66칸(약 120m)는 8칸 구거부를 포함한다.’라고 기재하고 있다.

거류지의 도로는 대부분 폭원에 구거부를 포함시키고 있다. 즉 하수처리

183) 부산부, 앞의 책, 628쪽

가 구거(溝渠)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등 도로로 분류되는 행정선(幸町線), 대청정선(大廳町線), 서산하정선(西山下町線) 등은 폭원이 7칸이 넘었다. 이에 비해 제1호서정선이나 제2호서정선, 북산하선 등 3~4등 도로는 폭원이 4칸 내외로 약 7m 전후의 폭을 가졌다. 건물 주위에 3칸 이상의 공지를 존치 하라는 것은 적어도 3~4등 도로가 건물 주변에 둘러싸야 한다는 규정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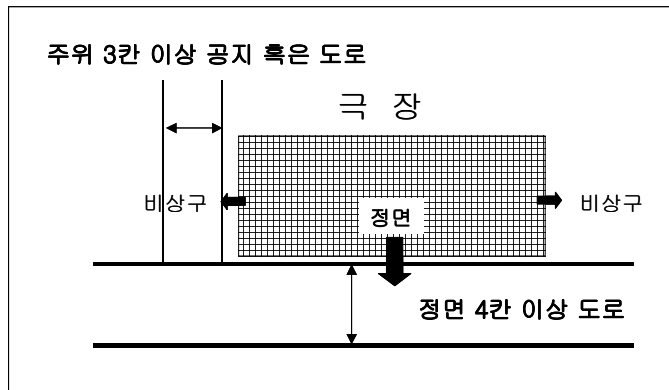


그림 3-30. 연극장 주위 영역 설정 규정 모식도

③ 건물의 전면 출입구는 폭 4칸 이상의 도로에 면하고 측면에는 각 2개소 이상의 비상구를 설치해야 함.

앞선 규정은 주위에 3~4등 도로를, 건물의 정면 출입구는 반드시 2등 도로 이상의 도로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즉 극장 정도의 건물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2등 도로 이상의 큰 시가도로에 위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④ 객석은 첩부(疊敷) 또는 판장(板張)으로 하고 1인 평균 사방 1척 5촌 이상의 할합(割合, 비율)으로 해야 함.

이 규정은 극장의 내부에 대한 사항으로 객석을 첩부나 판장 즉 다다미

나 판자를 재양(載陽 ; 쌓아 붙임)해서 붙인 재료를 쓰고 1척(일본 曲尺으로 30.303cm) 5촌, 사방으로 약 45cm 비율로 객석을 두는 것이다.

⑤ 잔부(棧敷) 및 평장(平場)에는 2승(桝)마다 폭 7촌 이상, 취입(蹴込) 8촌 이상으로 해야 함.

여기서 잔부 즉 사지키(棧敷)¹⁸⁴와 평장 즉 히라바(平場)는 히라도마(平土間)라고 하며 시바이코야의 건축에서 쓰여지는 단어로서 객석의 구조를 규정하고 있다.

일본 근세의 시바이코야는 17세기 이후 남아있는 에마키(繪卷)¹⁸⁵에 많이 남아 있으며, 거의 공통적으로 야구라(檣)¹⁸⁶ 네 개를 높게 올린 극장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주위는 사지키(棧敷)가 되는 건물로 둘러싸인 히라도마(平土間)¹⁸⁷ 한 편에 무대를 둔다. 보통 카와라부(瓦葺)¹⁸⁸의 카와라후(唐破風)¹⁸⁹를 내건 것 같은 무대가 주류를 이룬다. 마스(桝)란 마즈세키(桝席)¹⁹⁰를 이르는 말로 2개의 마즈세키 마다 폭 약 21cm, 케코(蹴込)¹⁹¹를 약 24cm로 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⑥ 잔부에는 계단 각 2개 이상 설치하고 폭 4척 이상 상답(上踏) 6촌 이상 축입 8촌 이상으로 해야 함.

계단 2개소 이상과 상답은 위로 디디는 단을 말하며 단이 약 18cm이상 축입이 약 24cm이상 설치를 규정한다.

184) 판자를 깔아서 높게 만든 관람석

185) 그림 두루마기, 참고 : 『옛센스일본어한자읽기사전』

186) 성벽이나 성문의 망루대 또는 전망대

187) 극장 등에서 무대 정면에 바둑판 모양으로 칸을 지른 관람석

188) 기와로 이은 지붕

189) 곡선형으로 된 박공의 하나로 전형적인 일본양식

190) 되 모양으로 네모나게 칸막이를 한 흥행장의 관람석

191) 췌면, 층의 뒤판을 이룸

- ⑦ 잔부 및 계단에는 견고한 부란(扶欄)¹⁹²⁾을 설치해야 함.
- ⑧ 객석에는 적당한 환기창을 설치해야 함.
- ⑨ 객석 및 무대의 전부를 견투(見透)할 수 있는 장소에 경찰관리(警察官吏)의 임감석(臨監席)을 설치해야 함.
- ⑩ 변소는 출입구를 폐쇄할 수 있게 구조하고 시뇨호(屎尿壺)는 불삼투질물(不滲透質物)을 사용해야 함.

1880년 7월 19일 영사관령으로 시달된 「가옥건축가규칙(家屋建築假規則)」에서 유달리 분노의 처리를 명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변소의 구조는 가장 청결을 요하는 것이므로 유호(溜壺) 등은 가급적 견고한 것을 쓰며 분즙(糞汁)이 스며 흐르지 않게 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당시 하수도의 개념이 적었고 도로의 구거가 하수도 역할을 하였던 좁은 지역에 모여 사는 거류지의 사정상 분노의 처리는 위생상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였다. 여기 규정에서도 변소에 대한 청결을 강조하고 있다.

- ⑪ 비상용으로 즉통(唧筒)¹⁹³⁾ 또는 상당한 방수구(防水具)를 설치해야 함.

요세(寄席) 전항 제2호 제3호의 구조제한에 의하지 않음.

비상용 대책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요세는 2등 이상 도로 등에 접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즉 요세는 극장보다 그 규모가 적은 것을 인정하고 있다.

아래 그림 3-31.은 일본 근세 가부키 연극장의 내부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정면이 히노키부타이(會舞臺)이고 객석 중앙으로 하나미치(花道)가 설치되어 있다. 히라도마(平土間)부분은 마스세키(桝席)가 있어 1승(桝)에 보통 4~5인이 앉을 수 있으며 좌우로 2층은 부난이 설치된 사지키세키(棧敷

192) 버팀 난간

193) 요란스럽게 소리나는 통

席)는 경제력이 있는 손님이 입장하는 곳이다. 전체 내부의 채광은 사지키(棧敷) 상부의 창에서 들어오는 자연광이었고 창을 달아 열고 닫아 연출효과를 내주었다.¹⁹⁴⁾ 과거 가부키는 낮에만 열렸으나 전등의 힘으로 밤에도 개최될 수 있었고, 거류지 규칙에서는 연극장 등화(燈火)의 종류와 장치 도면 및 사양서도 제출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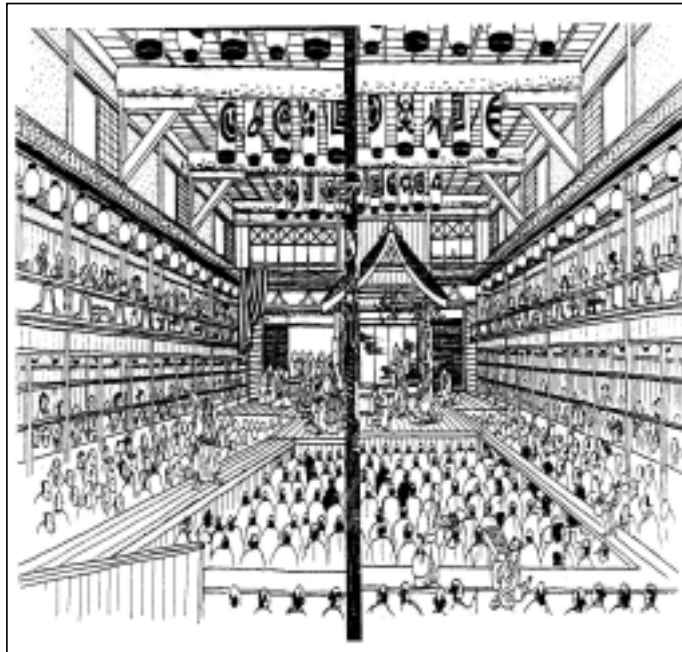


그림 3-31. 일본 가부키 연극장의 내부모습
 [그림출전 : 西和夫·穂積和夫, 이무희·진경돈 공역,
 『일본건축사』, 세진사, 1995]

그림 3-32.에서 좌측은 일본의 근세 가부키 연극장이던 나카무라좌, 우측은 근대에 세워졌으나 전통적인 방식으로 신축된 신토미좌이며, 두 곳 모두 도쿄에 소재한 유명한 연극장이었다. 나카무라좌 외관을 보면 그 당시에는 전등이 없어 천장을 통해 개폐를 통해 무대장치를 시도하여 천장부분

194) 藤井恵介·玉井哲雄, 앞의 책, 240~242쪽

이 인상적이다. 그리고 기와지붕을 가지고 있었고 넓은 규모를 자랑하였다. 신토미좌는 근대에 세워졌으나 건축에 있어 전통을 고수하고 있고 비록 전등이 유입되어 천창의 활용은 과거에 비해 못하지만 그 기능을 외부장식으로 활용함으로써 연극장을 더 화려하게 장식해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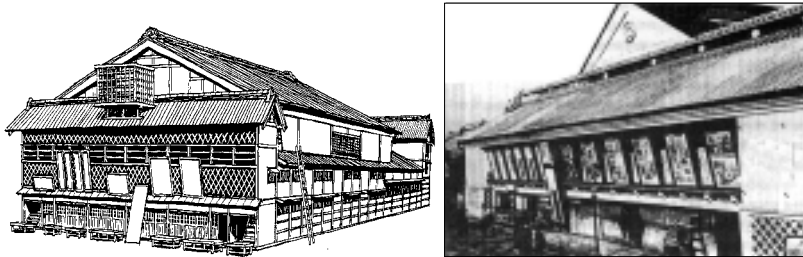


그림 3-32. 일본 가부키 연극장

좌측은 나카무라좌(상상도), 우측은 1878년 신축된 신토미좌
 [그림출전 : 좌측은 西和夫·穂積和夫, 이무희·진경돈 공역,
 『일본건축사』, 세진사, 1995, 우측은 에드워드 사이덴스티커, 허호 역,
 『도쿄이야기』, 이산, 1997]

1910년까지 알려진 부산일본거류지 연극장은 거류지 내의 행좌(幸座)와 부평정에 있었던 부산좌(釜山座)와 동양좌(東洋座)이다.¹⁹⁵⁾ 행좌는 1903년 거류지 지도에 그 위치가 나타나고 있으며 행정과 남빈정 사이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림 3-33.에서 보여지는 부산좌의 모습은 어느 시기의 모습을 촬영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목조 2층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서양식을 모방한 건물로 보인다. 거류지에 있었던 연극장에 대한 건축적인 자료는 알 수 없으나 1895년 전후로 연극장이 설립되었음¹⁹⁶⁾은 확실하다. 이 당시 연극장은 대충 선진적인 도쿄의 연극장이 가지는 시설은 갖추지 못하겠지만 모방은 가능했으리라 추측된다. 처음 설립되었을 때 전통적인 외관을 가지고 전등을 도입한 어찌면 앞서 언급한 신토미좌와 같은 구조에 가까웠

195) 1905년에 기록된 『경상도사경』에 의하면 당시 거류지 내 극장은 송정좌(松井座)와 행좌(幸座) 두 곳이 있으며 그 규모가 매우 적었다고 한다.

196) 첫 연극장에 관한 규칙은 1895년에 제정되었다.

을 것이라 추측되며, 남아있는 부산좌의 모습을 통해서 어쩌면 재건축을 통해 설립된 건물모습이 아닐까 생각된다. 근대적인 서양식 연극장이 도쿄에 설립된 것은 그림 3-33.에서 보이는 1889년 도쿄 가부키 연극장이다. 다소 평범해 보이는 르네상스식 건축이었으나 세부적으로는 전통적인 요소를 도입하려고 노력하였고 내부에서도 신토미좌 보다 훨씬 큰 규모를 자랑하였다.¹⁹⁷⁾

규모가 커진다는 것은 과거에 비해 더 대중적인 시설로서 변화해 갔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부산일본거류지의 연극장들도 초기 소규모시설에서 시작하여 점차 시설의 규모 확장과 근대적인 건축물로의 변화과정을 거치면서 그것과 함께 연극장의 대중화가 점차 확대되었을 것이라 추정된다.



(a) 도쿄 가부키좌[1889년 신축]



(b) 부산일본거류지 부산좌(미상)

그림 3-33. 근대적인 연극장

[그림출전 : 좌측은 에드워드 사이덴스티커, 허호 역, 『도쿄이야기』, 이산, 1997, 우측은 도영주·윤일주, 「1910년 이전의 부산의 양풍건축」, 향도부산 제3호, 1963]

197) 에드워드 사이덴스티커, 앞의 책, 182~183쪽

3-5-4. 부산일본거류지의 요리점과 음식점

연극장과 요리점과 음식점은 서민문화에 있어 일종의 문화시설 중의 하나로 취급될 수 있으나 부산일본거류지에서는 취체상 영업시설의 하나였다. 이들 시설로서 남겨진 건축물은 현재 남아있지 않지만 부산일본거류지의 시가지 형성과 변화에서 이들의 역할은 생각할 여지를 남긴다. 오늘날 남겨진 부지를 중심으로 본다면 그들 관련시설들이 자리잡는 촉진제 역할을 하였을 것이라 추측된다.

앞선 표 3-16.에서 나타나듯이 요리점과 음식점은 구별되고 있다. 요리점은 일본식과 서양식 요리를 다루었고 음식점은 어류(魚類)나 조수육(鳥獸肉) 등의 요리를 취급하였다. 그보다 큰 차이점으로는 예기(藝妓)가 있어 요리점에서 손님을 접대하였다는 것이다. 거류지에서 가장 유명한 일본식 요리집은 금평정에 있었던 경판정(京板亭)¹⁹⁸로서 그 주인은 마후치(馬淵伊三郎)였고, 서양 요리집은 두 곳이었는데 하나는 행정1정목 동경루(東京樓)로 주인은 하라다(原田治三郎)였으며 또 다른 하나는 행정3정목 제일루(第一樓)로 주인은 요시무라(吉村文平)였다.¹⁹⁹

일본 근세 가부키의 연극장인 시바이코야(芝居小屋)의 경우 항상 시가지의 외곽에서 유카쿠(遊廓)과 차야(茶屋)²⁰⁰가 함께 공존하였다. 세 시설이 시바이초(芝居町)를 이루면서 일종의 오락센터를 구성하여 발전해 나가는데 중요 위치를 점한 것이다. 연극장에서 들어가기 전이나 나온 손님들은 차나 음식을 먹으면서 쉬거나 유카쿠에 놀러가서 하루 일과를 보내는 것이 일본 서민들의 일종의 오락형태였다고 한다. 이것들은 시간이 흘러도 계속 이어져 왔고 일본문화가 머문 곳엔 항상 그런 문화가 존재하였다. 일본 도쿄에 근대적 연극장(즉 도쿄 가부키좌)이 들어섰을 때 이 극장 앞에는 찻집 즉 차야가 11곳이나 영업하고 있었다고 한다.²⁰¹

198) 여관으로서도 매우 유명하였다. 『경상도사정』, 제31부산일본거류지

199) 大曲美太郎, 김의환 역, 앞의 책, 294쪽

200) 씨름장이나 극장 등에 딸려 손님을 쉬게 하거나 안내하는 집

201) 에드워드 사이덴스티커, 앞의 책, 183쪽

부산일본거류지에서 일종의 시바이초가 이루어진 곳은 연극장이 있는 남빈정 일대였을 것이다. 가장 오래되었고 유서 깊은 행정이 여기에 위치하였고 또한 거류지 내에 있다는 장점을 가진 곳이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꼭 요리점과 음식점이 연극장과 함께 있어야 된다는 공식은 없었다. 일본식으로 가장 유명했던 경관정은 이사청과 거류민단역소 바로 인접해 있었기 때문이다. 경관정은 일본식 요리점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관공서가 인접해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부드러운 분위기를 얻고자 할 때 예기와 술 그리고 요리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경관정의 특징은 바로 관공서와 인접해 있다는 것과 함께 부산항에 가깝다는 위치 혹은 여러 회사들이 이 주변에 밀집해 있었다는 그것을 유명하게 만드는데 일조를 했을 것이다.

1903년경 거류지 지도에는 행좌를 중심으로 3곳[즉 광월루(光月樓), 대합정(待合亭), 명호루(鳴戶樓)로서 대합정과 명호루는 예기가 있는 일본요리집이었음]의 건물 위치가 표시되고 있다. ‘경상도사정’에 의하면 일본요리집으로서 손꼽히는 곳은 대합정과 명호루, 경관정 등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 중에서 대합정은 그 이름으로도 차야(茶屋)의 역할을 담당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며 이들은 연극장을 에워싸듯이 위치하고 있다. 그림 3-34.는 이들의 위치를 보여주는 자료로서 경관정은 행정중심지에 행좌를 비롯한 광월루, 대합정, 명호루는 남빈해안을 끼고 들어서 있음을 알 수 있다.

요리집과 음식점의 가격 차이는 상당하였다. 요리집은 앞서 언급했듯이 예기(藝妓)²⁰²가 존재하는 곳이고 상당히 재력을 갖추어야 드나들 수 있는 곳이었다. 아마 예기가 존재하는 요리집의 시설은 상당한 크기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요리집 중에서 일본식일 경우 아마 예기의 존재로 따로 더해지는 비용이 상당했을 것이고, 서양식은 1893년경 기록에 매품(每品)이 보통 8전에서 10전 정도였고 함께 나오는 음식일 경우 80전 내외였다고 한

202) 여기서 예기는 아마 게이샤(藝者)가 아닌가 생각한다. 게이샤는 유곽의 여자와는 달리 구분된다. 당시 메이지에서 다이쇼에 걸쳐 화류계의 화(花)와 류(柳)는 분리되고 있었다. 게이샤는 마치아이차야(待合茶室)에 주로 종사하였다. 참조 : 에드워드 사이덴스티커, 앞의 책, 201쪽

다.²⁰³⁾

이 시기 요리집 및 음식점 시설에 대한 자료는 남아있지 않으나 그다지 특기할 만한 건축물은 아니었다고 보이며 이들 부지는 현재 상가들로 쓰여지고 있다. 주목할 것은 이들 부지 주변 도로들은 대부분 보행자가 드나들 정도의 폭만 가지고 있으며 차가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는 곳은 아니다.

부산이사청고시 제9호 「부산일본제국전관거류지내 시가도로구획 개정」(1908.6.19)에 의하면 경관정 앞을 지나던 ‘이사청 앞에서 장수선에 이르는 선’은 3등 도로로서 폭이 4칸(구거를 포함하지 않음)이었고 행좌와 그 주변 시설이 인접하던 ‘행정선(幸町線)’은 도로부지의 확장이 요구되는 도로들이었다. 이 고시를 통해서도 사람이 많이 드나들 것 같은 이 시설들은 그다지 큰 도로를 접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연극장과 같이 엄격한 시설관리는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추측할 수 있다. 비록 부산이사청령에서 음식점에 관한 취체규칙은 보이지 않으나 다른 이사청령에서 음식점에 관련된 취체를 살펴보다라도 시설과 규모에 관한 규정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타 이사청이 보통 경성이사청령에 의거하여 제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 사례도 여러 있었다.²⁰⁴⁾ 경성이사청령 제4호 「요리점 및 음식점취체규칙(料理店及飲食店取締規則)」(1908.4.30)을 준거하여 살펴보면 요리점과 음식점에 대한 규정이 다르게 설정되고 있다. 공통된 사항으로는 영업자의 명세사항과 업소의 위치, 영업용 가옥의 도면, 증축과 개축 시 구조 및 도면을 첨부할 것과 영업상 공간에 위배되는 경우 영업에 대한 문책, 고용인에 대한 신상명세를 보고할 것, 음식료에 대한 배상규정 등이 있으며, 특히 음식점의 경우 예기(藝妓)나 작부(酌婦)를 초래(招來)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다. 즉 예기는 요리집에서 허용을 하되 음식점은 이를 금한다는 것이다. 요리집에서는 야간 12시 이후에는 가무음곡(歌舞音曲)을 금지하고 있다.

203) 大曲美太郎, 김의환 역, 앞의 책, 294쪽

204) 그 예로 부산이사청령 제1호 「신문지·잡지취체에 관한 건」(1908.5.8)은 경성이사청령 제4호 「신문지·잡지취체에 관한 건」(1908.5.1)과 동일하게 적용함.

그림 3-35.는 현재 이들 시설 부지의 사용에 관한 자료로 대부분 음식점 계통 상가들이 들어서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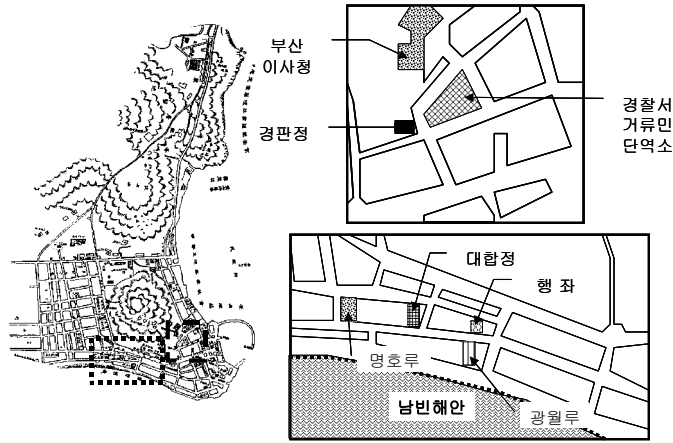


그림 3-34. 부산일본거류지 연극장과 요리집 및 음식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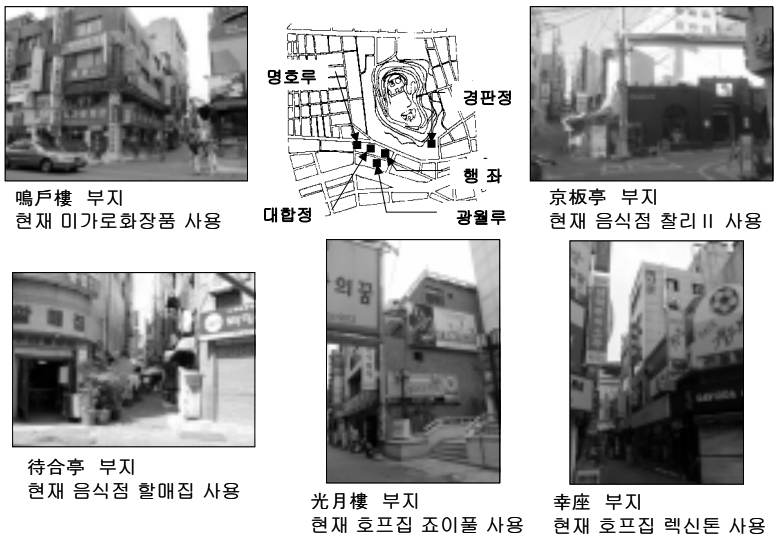


그림 3-35. 기타시설 현재 부지의 모습

3-6. 부산일본거류지 건축물의 내부구조 표현

이 장에서는 부산일본거류지 당시 건립된 건축물의 내부구조에 대한 표현에 관해 다룬다. 당시의 건축물은 현재 거의 남아있지 않으며 남겨진 소수의 건축은 대부분 시대에 따라 개조되어 왔기 때문에 정확한 자취를 알기 어려우며, 특히 건축물의 내부는 개조가 용이하여 당시를 추정하기가 더욱 힘든 실정이다. 이사청 설치 이후 남겨진 일부의 자료들에서 부산일본거류지에 건립된 건축물들의 내부구조에 대한 극히 일부분의 지식에 대해 알 수 있었다.

3-6-1. 이사청 회계사무장정

거류지 설치시기의 건축물 내부에 관한 일부의 표현방식을 신고 있는 일부의 자료가 ‘이사청 회계사무장정’에 남아 있으며 이것은 1908년 통감부훈령 제11호(공보 1908년 7월 4일)로 각 지역 이사청의 사무관련 총지침서라 할 수 있다. 내용은 모두 10장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목차는 표 3-18.²⁰⁵⁾과 같다.

목차에서 나타나듯이 내용 모두가 이사청의 운영에 관련된 일반적인 규칙들이나 여기서 건축에 관련된 요소는 제5장 제1절 공사에 관련된 사항 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 이사청 회계사무장정의 가치는 이 공사 회계가 어떻게 처리되고 처리되었는가에 대한 내용은 아니다. 총 10장 103조에 달하는 내용에서는 건축에 관련된 내용은 거의 없지만 부칙 다음에 나오는 ‘이사청회계사무장정서식(理事廳會計事務章程書式)’에 나타나는 서식 35종에서 당시 건축물 관리에 대한 수준과 건축 구조물을 비롯하여 재료나 시설물의 수준과 사용기한, 도면의 표현기법 등을 살펴 볼 수 있었다.

서식 제 26호부터 토지와 건축에 관한 도면제작에서 시작하여 건물관리

205) 대한민국국회도서관, 『통감부법령자료집』, 서경문화사, 1991, 통감부훈령 제 11호 「이사청회계사무장정」

및 운영 그리고 자세한 사항이 나타나며 각 건물의 건축 구조(構造)는 물론 재료(材料)와 수목(樹木) 그리고 정원의 돌(庭石)까지 기재되고 있었다.

토지는 필지별로 관리대장을 제작하였고 부속물의 경우 물치(物置, 헛간)와 토장(土藏, 광), 정호(井戶, 우물), 석원(石垣, 돌담)까지 보존기한과 증감, 가격을 작성토록 요구하고 있다.

표 3-18. 이사청 회계사무장정 목차

理事廳會計事務章程
目次
第一章 總則
第二章 豫算
第三章 歲入
第四章 歲出
第五章 工事及 物件의 賣買 貸借
第一節 工事
第二節 物件의 賣買貸借
第六章 歲入 歲出外 現金及 保管物
第七章 物品
第八章 官有財産
第九章 恩賞諸祿
第十章 諸貸付金
附則
理事廳會計事務章程

3-6-2. 지도조제표준

지도조제표준(地圖調製標準)은 이사청회계사무장정서식 중 ‘기재예(記載例) 제27호’에서 설명되고 있으며 여기서 ‘지도는 그 토지의 광협(廣狹) 형상 및 방위를 측도(測度)하여 진정한 강계(疆界)를 명료히 하여 정밀히 조

제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서두에서 밝히고 있다. 지도 제작에서 지도의 축척은 면적의 크고 작음에 불구하고 1:300 즉 6척에 대하여 2분의 비율로 하며, 상부를 북(北)으로 해야하며 방위는 사각(斜角)을 금지하고 있다. 지도의 그림은 건물, 문비(門扉), 장벽, 정원, 수목, 구거(溝渠), 수도, 교량 등으로 부기(附記)하는 기호에 의해 등재해야 했다. 여기서 나타나는 항목들을 통해서 당시 건축에 대한 세부 내용을 알 수 있다. 표 3-19.은 지도 제조표준에서 나타나는 시설물에 대한 분야별로 나타난 자료이다.

표 3-19. 지도제조표준에서 표현되는 건축 및 시설사항

구분	내용	구분	내용
건축 구조	木造建物	상수도	木製水道管
	木造西洋模造建物		鐵製水道管
	煉瓦造建物		井(桶側)
	土藏造建物		井(石・漆喰側)
	石造建物		井(水道・吹井)
문	鐵製建物	부속물	芝生
	木製門		樹木
	煉瓦門		池
	石製門		提
담장	生垣	전력	電燈
	竹垣		電燈線
	木柵		瓦斯燈
	鐵柵		瓦斯管
	板堀		露燈
	土堀	기타 시설	電線支柱
	石堀		레일
煉瓦堀	煉瓦製煙突		
하수도	木製埋下水	교량	木橋
	煉瓦埋下水		石橋
	石製埋下水		鐵橋
	土管埋下水		土橋

지도 제작시 몇 가지 세부사항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지도에 주변의 지형 즉 산악(山岳), 구릉(丘陵), 삼림(森林), 원야(原野), 하해(河海), 호소(湖沼), 지택(池澤), 구거(溝渠), 제당(堤塘), 도로(道路), 시가(市街), 촌

락(村落), 전전(田畑), 교량(橋梁), 기타 신사(神社), 불각(佛閣) 등과 같은 현저한 것을 그 개략을 모사(模寫)하여 명칭과 지명을 게재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실측면적은 모두 평수(坪數)로 표시하고 세이하(歲以下) 단수(端數)는 산입을 하지 않았고, 도면상의 건물에 반드시 그 번호를 부기하며 지도에 기재하는 문자는 반드시 해서(楷書)를 사용하여 북(北)에서 남(南)으로 향하여 기재해야 했다. 제도용지(製圖用紙)는 반드시 반수인미농지(攀水引美濃紙)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6-3. 건물도제조표준

건물도제조표준(建物圖調製標準)은 지도조제조표준과 함께 제시되고 있으며 건물에 대한 도면제작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당시 사용된 건물 설계와 기법을 알 수 있다. 여기 소개된 내용은 대부분 당시 건축된 건물들에 대한 기재요령을 제시하고 있어 건물 내부에 대한 추측이 가능하다.

제시되고 있는 건물에 대한 제도는 반드시 1:200 즉 6척에 대하여 3분의 축척으로 해야하며 층계부분은 괘지(掛紙)로 그리도록 하고 있다. 건물은 반드시 그 주위의 간척(間尺)을 기입해야 하며 건물은 각 방마다 그 평수를 기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지도에 기재하는 문자는 반드시 해서(楷書)를 사용해야 하며 제도용지(製圖用紙)는 반드시 반수인미농지(攀水引美濃紙)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3-20은 도면 작성에서 건물 구조에 대한 기호의 기재 방식에 대해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당시 건축물 내부에 사용된 다양한 구조에 대한 표시는 현존하고 있는 건물이 거의 남아있지 않는 오늘날에 어떤 건축들이 설립되었는지를 알려주는 자료이다. 표시하고 있는 기호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내부구조의 상세 표현에 대한 기록들로 보여지며, 당시 일본건축에서는 많은 부분들에서 서구양식을 따르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그 예가 ‘서양형 변소’라든가 ‘양변소’ 등의 구조기호 표시들이다. 또한 ‘석로’ 등은 일

표 3-20. 건물도조제표준에서 나타나는 구조기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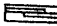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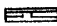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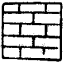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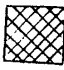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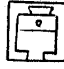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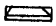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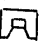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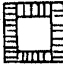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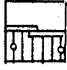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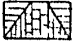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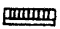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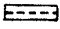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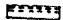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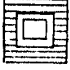



명 칭	기 호	명 칭	기 호	명 칭	기 호
올렸다 내렸다 하는창		인위창		양개창	
인입창		실내간 마기수습	-----	편개	
입구인위		판장		늑위판장	
석부		사반석부		연와부	
폐기		서양형 변소		돌상창	
스토브		석로		자와로	

표 3-20. 건물도조제 표준에서 나타나는 구조기호(계속)

계자단		계단		회랑계자	
고란부 계단		압입 올림판		흉배석부	
철보우로 드입창		달자창		무쌍 연자창	
분격자창		판류		즈쓰구부	
양변소		각연측		상상로	
라센부		용단부		첩부	

본식 건축구조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이며 아직 건축의 내부에는 서구식으로의 변화과정에 있는 과도적인 형태가 당시의 건축에 많이 남아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건축에서 건물이라는 실물을 제외하고 도면(圖面)과 그곳에 쓰여진 여러

표현들은 매우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고 느끼게 해준다. 머릿속에서 그 나름대로의 생각한 내용이 회화적(繪畵的)으로 표현된다는 것은 비록 실물은 보지 못하나 그 개념은 충분히 전해질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과거의 건축물이 사라져버려 도면과 건물에 관련된 사진만이라도 남겨진다면 비록 건축물은 소멸되었어도 훌륭한 자료로 쓰여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부산일본거류지에서 일본이 주체가 된 건축들은 그 세월의 반감(反感)으로 인해 남겨질 수 있는 몇몇의 여지도 갖지 못했다. 더구나 도면이나 사진조차 남겨질 여유가 없는 상황이라면 관련되어 기록된 자료들을 통해서 추측할 수밖에 없다. 앞에서 언급한 ‘통감부통계연보’나 ‘통감부법령자료집’, ‘이사청회계사무장정’에서의 ‘이사청회계사무장정서식’ 등이 그러한 위치를 가지는 자료들일 것이다.

4. 부산일본거류지의 해안매립

이 장에서는 초량왜관 부지 위에 세워진 부산일본거류지가 새로운 확장 방법의 하나로 선택한 해안매립을 통하여 습득한 부지 위에 이루어진 건축 활동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 ‘해안매립(海岸埋立)’이라는 방법을 통해 거류지의 확장을 꾀했던 부산일본거류지는 새롭게 생긴 부지 위에 거류지제도를 마감하고 대륙으로 향하는 침략성을 드러내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근대건축물들을 세웠다.

4-1. 해안매립 배경과 의의

부산일본거류지는 부산항을 배경으로 성장한 지역이었고 바닷가와 동쪽과 남쪽이 맞닿고 있었다. 용두산을 사이에 두고 시가지가 분리되어 확장되어 갔으나 행정영역이었던 거류지 동쪽 지역은 토지이용에 한계를 느끼게 되었다. 서쪽 지역은 거류지 외 지역으로 한국인이 소유한 토지를 조금씩 사 모으는 형식으로 해결하였지만 바닷가를 마주하는 동쪽 지역은 해안(海岸)의 이용 없이는 더 이상의 시가지개발이 무의미하게 되었다.

일본은 과거부터 해안에 대한 개발이 활발한 나라 중의 하나였다. 산을 무너뜨려 바다를 매워 토지를 이용한다는 개념은 그들의 수도 에도(江戸, 도쿄의 옛 명칭)의 성립 때부터 이미 사용해온 매립방법 중의 하나였다. 17세기 초 토쿠가와(德川)가문의 집권으로부터 시작된 에도의 역사는 칸다야마(神田山)를 무너뜨려 히비야이리에(日比谷入江)를 매립하여, 니혼바시(日本橋)부터 교바시(京橋), 긴자(銀座)에 이르는 에도의 시다마치(下町) 일대를 조성시켰다.²⁰⁶⁾ 텐카후신(天下普請)이라고 불린 이 공사는 일본 매축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사건 중의 하나였다.

206) 藤井恵介・玉井哲雄, 앞의 책, 19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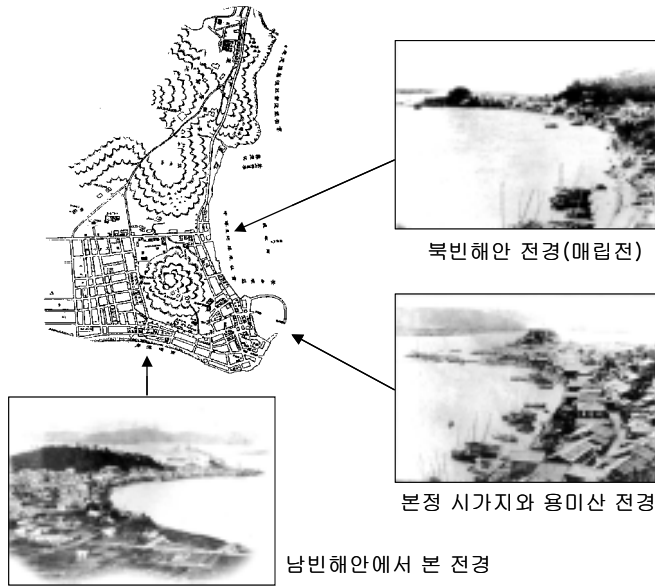


그림 4-1. 해안개발 이전의 부산해안 전경
 [그림출전 : 이종률, 『테마로 보는 부산항이야기』, 해성, 1997, 부록사진]

1898년에 동쪽 해안을 개발하면 큰 이익을 가질 수 있다는 거류민²⁰⁷⁾의 발상으로부터 부산의 지도를 바꾸는 바다의 매립계획이 시작되었다. 해안의 개발은 부산일본거류지 확장의 한 형태로서 볼 수 있으며, 북빈정이나 대청정 같은 기존의 동래부 영역을 양도받아 합병하는 방법이 아닌 해안매립을 통해 토지를 얻는 형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이른바 거류지 확대방법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당시의 기술로 해안을 매립하는 것은 워낙 대공사였기에 허가 받은 즉시 시작하지 못하고 1902년에 되어서 매립을 위한 부산매축주식회사(釜山埋築株式會社) 부산지점이 자본금 350,000원으로 매축공사를 담당하게 되었다. 매축공사는 1차, 2차에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1909년 8월에 최종 공사가 마무리되어 41,374여 평의 토지가 생성되었다. 매립공사의 주담당(主擔當)은

207) 부산일본거류지의 기업인 高島義泰와 佐藤潤象이 매립허가 청구권자였다.

토목회사로서 유명한 오오쿠라쿠미(大倉組)였으며 하청부(下請負)는 일본 시모노세키(下關)의 카츠오쿠미(藤勝組)가 인수하였다.

여기서 이용된 매립방법은 에도의 건설과 마찬가지로 산을 무너뜨려 바다를 매우는 수법을 사용하였다. 북병산과 인접한 영선산(營繕山)을 깎아 그 토사를 이용하여 바다에 쏟아 부음으로서 그 목적을 달성하였다. 1905년 1차 준공 때 새롭게 생긴 매립지에 정명(町名)을 부여하였으며 2차 이후 매립지는 부산이사청고시 제24호 「부산매축주식회사의 매립지정명에 관한 건」(1908.12.24)에 의해 인접 정명을 차용해서 쓰도록 하였다.²⁰⁸⁾ 그 정명들은 매립에 관여했던 일본인 성에서 인용해왔다.²⁰⁹⁾ 그림 4-2.는 1909년 최종 매립 이후 생성된 매립지의 정명과 시가지 구획에 관한 자료이다.

표 4-1. 부산일본거류지 연안역 매축공사 세부내역

	기 간	공사비용	매축토지	기 타
제1차매축공사	1902. 7. 19~ 1905. 12	자본금 35만원	32,627평	30,174평이라 기록된 곳도 있음
제2차매축공사	1907. 4 ~ 1909. 8	-	8,747평	-
합 계			41,374평	

* 출전 : 김용욱, 『부산 축항지』, 향도부산 제2호, 1963

208) 이 고시를 통해 2차 매립지역이 고도정, 대창정, 매립신정 및 좌등정과 인접지역인 것을 알 수 있다.

209) 大倉町은 제일은행 부산지점 설립에 관여했던 거류지에서 가장 큰 토목회사를 가지고 있었던 실업가 大倉喜八郎의 성에서, 高島町과 佐藤町은 부산매축회사 중역이며 매립지공사 청구권자였던 高島義泰와 佐藤潤象의 성에서 명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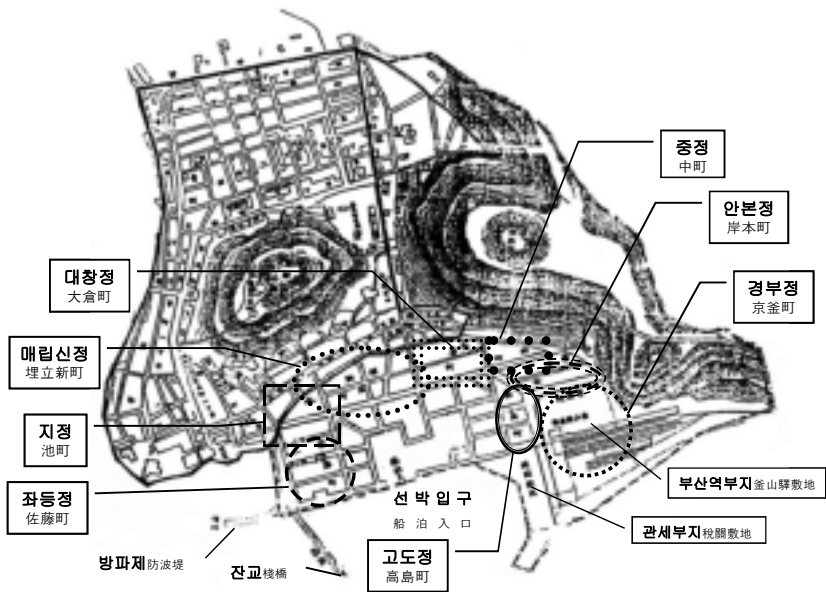


그림 4-2. 부산일본거류지 해안 매립지(1908년경 경계)

매립공사가 완료 된 이후 부산항 주변은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먼저 경부선의 최종 완성으로 표현되는 부산역(釜山驛)의 설립은 부산항뿐만 아니라 많은 분야에 대한 파급효과가 대단하였다. 더구나 매립지의 완공으로 인해 여러 회사와 공장들이 새롭게 생긴 토지로 하나 둘씩 이전하기 시작하였다. 공공시설만이 이전한 것이 아니었으며 일반인에게도 양도하여 많은 상업관련 시설이 들어섰다.

매립지에 생긴 토지와 그 이용사항에 대한 내용은 표 4-2와 같다. 표 4-2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매립지에 대규모 공공시설 즉 부산역과 부산우편국이 들어섰다는 것이다. 당시 부산우편국은 서정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매립지의 완성과 함께 대창정으로 이전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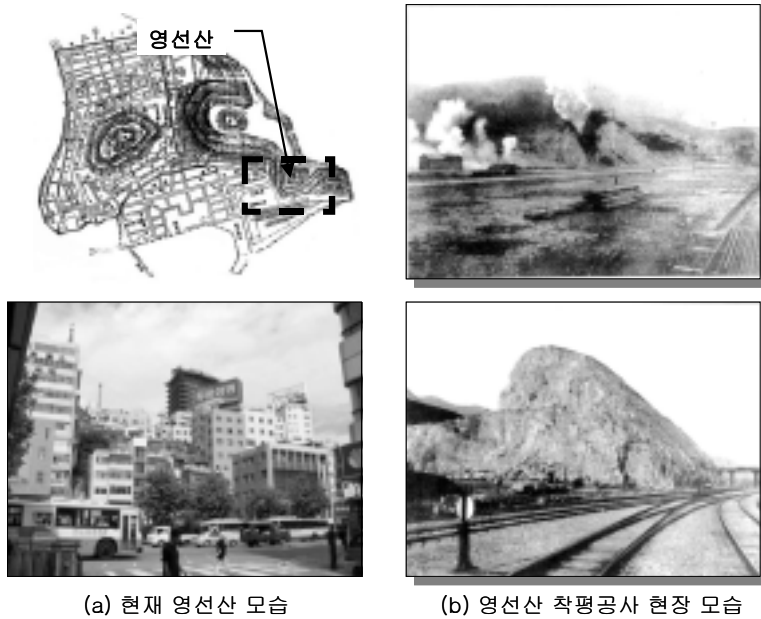


그림 4-3. 부산일본거류지 연안역의 매립에 의한 변화
 [그림출전 : 이종률, 『테마로 보는 부산항이야기』, 해성, 1997, 부록사진]

표 4-2. 부산일본거류지 연안역 매립지의 토지이용내역
 [출전 : 김용욱, 「부산 축항지」, 항도부산 제2호, 1963, 158쪽]

	영역	총면적(평)	최대지(평)	최소지(평)	
	좌등정(佐藤町)	1번지~22번지	3,361	300	66
	매립신정(埋立新町)	1번지~48번지	4,498	거류민에게 분할·양여	
	대창정(大倉町)	1번지~22번지	3,314	1,080	54
	안본정(岸本町)	1번지~49번지	3,024	120	43
	중정(中町)	1번지~14번지	1,435	120	48
	고도정(高島町)	1번지~14번지	2,006	300	39
	경부정(京釜町)		4,843		
기타 내역	도로용지(道路用地) 7,550여평				
	부산역(釜山驛)부지 4,840평				
	산양철도대합소(山陽鐵道待合所)부지 - 좌등정5번지(303.5평)				
	부산우편국(釜山郵便局)부지 - 대창정5번지(628평)				
	우선회사(郵船會社)부지 - 고도정2번지 중 300평 좌등정1번지 중 300평				
	상선회사(商船會社)부지 - 고도정1번지 중 300평 좌등정4번지 중 300평				
	세관용지(稅關用地)부지 - 628평				
토지가격	초기 분할시 평당 60원 ⇒ 평당 65~70원으로 인상[매진]				

그림 4-4.~그림 4-7.은 부산일본거류지 해안에 매립지가 생긴 이후 원래 거류지 지역과 매립되어 편입된 지역에 대한 시설물의 위치를 나타낸 그림들로 1909년 거류지의 여러 회사와 공장들의 위치를 정(町) 단위로 분포를 표시한 것이다. 본정과 인접했던 매립지의 좌등정, 지정, 매립신정에 많은 시설들이 들어섰음을 알 수 있으며 표 4-2.에서 밝혔듯이 매립신정은 거류민에게 분할·양도가 많이 된 지역이었다.

매립지의 장점을 거론한다면 아마 의도적으로 새로운 도시계획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이든 규모에 구애받지 않고 세울 수 있으며 특징적인 신시가지지를 계획할 수도 있다. 시가지에 어떤 성격을 부여하느냐는 아마도 무슨 건축물이 들어서는가에 달려 있을지도 모른다. 매립지의 토지이용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중의 하나가 바로 상징성을 최대한 나타내 줄 수 있는 건축물의 설립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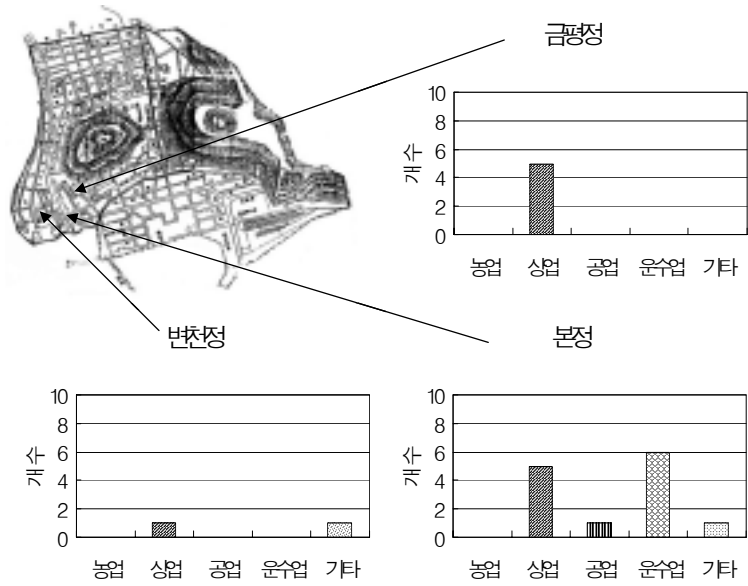


그림 4-4. 부산일본거류지 시설 분포 상황(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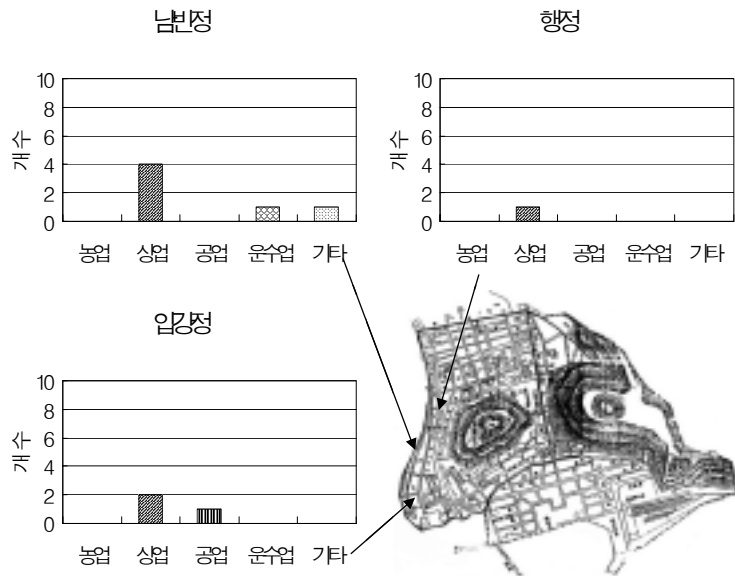


그림 4-5. 부산일본거류지 시설 분포 상황(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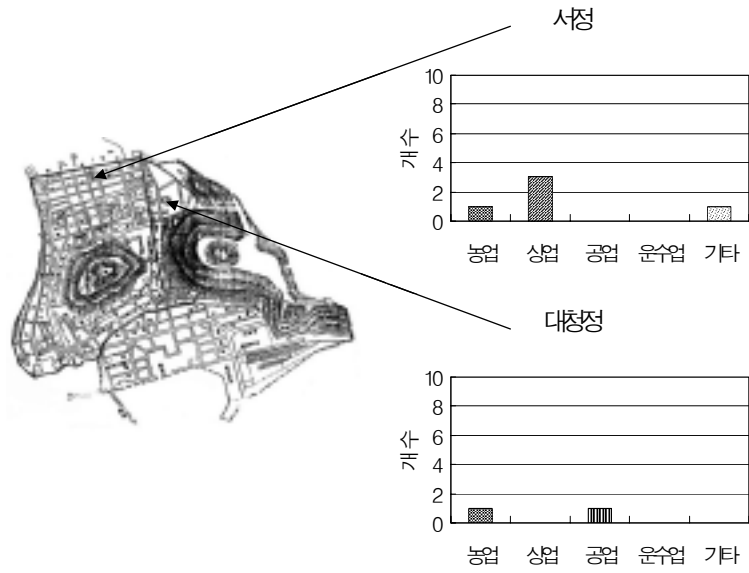


그림 4-6. 부산일본거류지 시설 분포 상황(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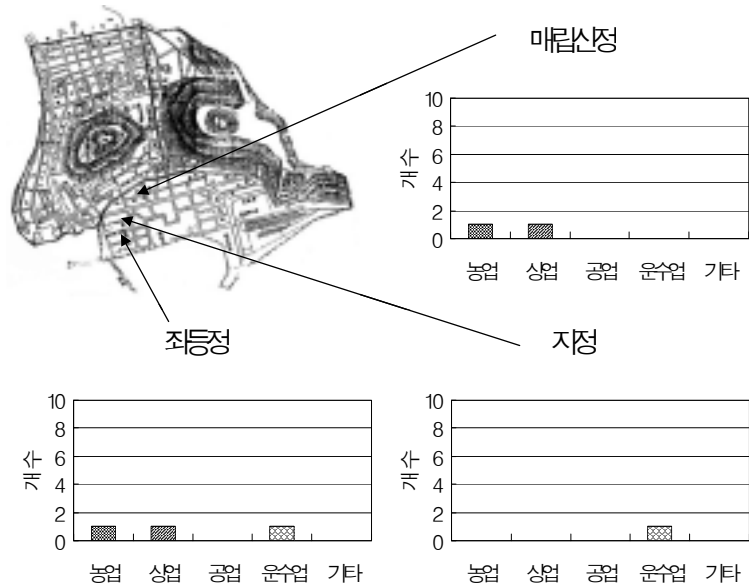


그림 4-7. 부산일본거류지 해안 매립지 시설 분포상황

4-2. 해안 매립지의 건축물 성립

1909년 최종 준공된 매립지에 1910년까지 어떠한 시설물이 들어섰는가에 대해 추론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1905년 1차 준공시기부터 1910년까지 얼마 되지 않은 기간이나 매립지에 설립된 시설 중 건축물을 중심으로 서술한다. 초기 매립지에 설립된 건물들은 대부분 규모가 큰 공공시설이었으며 부산이라는 도시의 상징적 측면에서 손꼽히는 건물 3동(棟)이 여기에 세워졌다. 당시 매립지에서의 규모 있는 건축물은 당시 일본의 힘을 상징하는 표현물이기도 하였다.

매립지 토지의 가치를 상승시켜 준 것은 경부선(京釜線)의 완공이었다. 본래 경부선은 옛 두모포왜관이 위치하였던 초량(草梁)까지가 종착지로 계획되었으나 부산일본거류지와 거리가 멀고 이용하기가 어렵다는 점 그리고 부산항과 연결이 용이하지 못하다는 점에 그 노선이 연장되어 매립지 부근에 부산역이 들어서게 되었다.

4-2-1. 부산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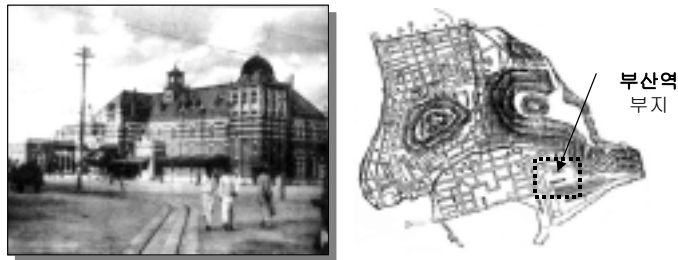
부산역(釜山驛)은 경부정에 1908년 6월 착공하여 1910년 10월 31일 준공한 370여평의 벽돌2층 구조의 건축물이다. 처음 세워질 때 지반이 매립지인 관계로 인해 25척 아래까지 항타 파일을 박으면서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한다.

처음 경부선의 종착은 초량이었으나 부산항과 거류지와와의 연계가 어렵게 되자 1906년 일본정부의 경부철도매수 이후²¹⁰⁾ 부산역의 건립은 매립지로 이전·추진되었고 역사(驛舍)를 위한 부산경부선 연장공사(1908년)로 인해 착공과 준공에 시일을 소요되었다.

속칭 새마당이라 불린 부산역 부지는 일본이 대륙으로 진출하는 시발점

210) 법률 제18호 「경부철도매수법」(1906.3.30)에 의해 일본이 정식으로 매수하였다.

이었고 또한 부산세관과 마주보고 있어 부산항을 통해 들어온 누구든지 이 건물을 바라볼 수 있었다. 부산역은 도쿄(東京)역을 설계한 일본의 유명한 건축가 타츠노 킨고(辰野金吾, 1854~1919)²¹¹⁾가 맡은 작품이라 건축에 관한 자료가 많이 남아 있다. 당시 남은 기록에 의하면 부산역이 얼마나 일본의 대륙을 향한 열망을 담고 있는지 짐작할 만하다.



(a) 부산역[1910년 신축]과 부지위치



(b) 부산역 부지의 모습(아직도 철로는 여기까지 놓여져 있다)

그림 4-8. 부산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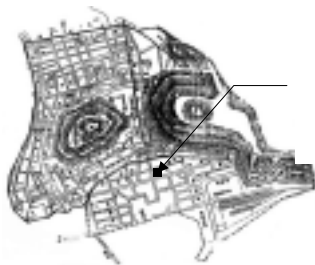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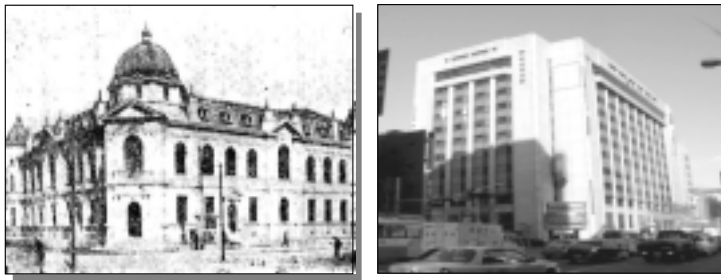
[그림출전 : 최해군, 『부산에 살으리랏다』, 지평, 2000]

211) 한국에는 부산역 이외에도 서울의 조선은행 본점도 설계하였다.

4-2-2. 부산우편국

경부철도가 개통되기 이전, 서정에 있었던 부산우편국(釜山郵便局)은 일본 본국과의 주된 운송수단을 우편선(郵便船)에 의지하여왔다. 그러다가 철도의 개통과 운송수단의 개선 그리고 폭주하는 우편업무²¹²⁾와 통신의 발달로 큰 규모의 시설이 요구되었다. 이에 1910년 5월 25일 대창정으로 이전하여 벽돌 2층 구조의 르네상스양식 건물을 신축·준공하게 되었다.

이 건물은 전형적인 르네상스양식을 갖추고 있었고 부산역과 부산세관과 더불어 부산의 3대 건축이라 불리웠다. 부지규모는 1,514평, 사무실 120평, 부속건물 31평이었고, 여러 번 개수되었으나 1953년 부산역과 함께 소실되어 현재 그 부지에는 1989년에 재건축한 현대식 건물이 서 있다.



부산우편국
1910.3.25 신축준공
현재 없음 * 부산우체국 부지이용

그림 4-9. 부산우편국

[그림출전 : 도영주·윤일주, 「1910년 이전의 부산의 양풍건축」, 향도부산 제3호, 1963, 277쪽]

212) 『경상도사정』에 의하면 우편국은 우편업무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신 및 전화, 저금업무까지 다루고 있었다고 한다.

4-2-3. 부산세관

부산세관(釜山稅關)의 역사는 부산일본거류지와 함께 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1878년 9월 28일 두모포에 해관을 처음 개칭하여 1883년 11월 3일 부산해관으로 개칭하여, 이후 여러 번의 역사적 사건을 일으키면서 존속해 온 부산항이 존재함으로서 함께 존재하는 시설물이었다.

처음 외국인 관장에 의해 부산세관은 운영되기 시작하였고 을사보호조약 이후 일본인이 세관을 관리하게 되었다. 세관이 갖는 의미는 대단하였으며 무역과 통상에 있어서 이 세관에 의해 좌우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1883년 11월 부산세관은 본정1정목에 독자적인 건물을 가지고 운영되었으며 그 규모는 사무실 90평, 상옥(上屋) 160평, 비고(備庫) 40평으로 되어 있었고 중앙의 파지장(波止場)은 여객의 승·하선과 함께 있었고 북쪽 돌출된 방파제는 해중에 연장되어 작은 만(灣)을 형성하였다.²¹³⁾

1907년 해관을 세관으로 명칭을 개칭하여 일본인이 세관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무척 조직적인 시설로 변모해갔다. 부산세관의 관할지는 경상남·북도와 전라남도였고 하위관청으로 목포세관지서와 마산세관지서 두 곳이었다. 그러나 1908년을 기점으로 지서(支署)의 증설과 하급기관인 세관감시서(稅關監視署)까지 신설²¹⁴⁾되어 갖추어진 거대 기관으로 성장하였고 이에 규모에 걸 맞는 시설물이 요구되었다.

경부정에 세워진 부산세관 건물은 1910년에 시작하여 최종적으로 1911년 8월 30일 준공하였으며 당시 수입 최고급 적벽돌로 화려하게 장식한 르네상스양식의 연와조를 갖춘 2층 구조였다. 당시 벽돌 한 장 가격이 인부 하루 일당보다 비싸 흠이 나지 않도록 종이에 싸서 운반하였다고 한다.²¹⁵⁾ 지금 남아있는 건물은 1970년 12월에 그 부지 위에 준공한 5층 건물이다.

213) 『경상도사정』, 제29세관 부 서울

214) 1910년까지 부산세관 하급기관으로 지서는 마산세관지서(1899), 목포세관지서(1887), 대구세관지서(1907) 총 4곳이, 감시서로는 울산세관감시서·구마산세관감시서·장승포세관감시서·통영세관감시서·삼천포세관감시서(1908), 여수세관감시서·포항세관감시서·성산세관감시서(1910) 총 8곳이 설치되었다.

215) 이종률, 『테마로 보는 부산항이야기』, 해성, 1997, '부산세관' 부록사진 설명

세관공사는 당시 일본이 대단히 중요시 여겼는데 그 이유는 부산항과 경부선의 연결, 부산항의 항만건설과 연계된 공사였기 때문이다. 세관공사에는 단순히 건물 1동을 짓는 공사는 아니었다. 세관공사의 여러 부수적인 관련 공사에는 매축(埋築)이 가장 중요사항이었고 이어 물양장(物揚場)과 호안(護岸) 그리고 방파제(防波堤) 건설, 잔교(棧橋), 부두석원(埠頭石垣), 갑문(閘門) 등 해안시설의 정비가 부수되는 사항이었다. 해안가 지상의 부지 위에는 부산세관 건물동 이외 상옥(上屋)²¹⁶⁾과 창고(倉庫), 여러 청사(廳舍), 관사(官舍), 검역소설비(檢疫所設備) 등이 설치되었다. 표 4-3.²¹⁷⁾은 1909년 당시 부산세관공사에 관한 규모와 관련지출내역으로 여기서는 지상영역에 관한 내역만 수록하였다.

표 4-3. 부산세관공사 규모와 지출내역(1909년 당시 지상영역내역만)
[출전 : 『통감부통계연보』]

		상옥 (上屋)	창고 (倉庫)	제청사 (諸廳舍)	관사 (官舍)	검역소설비 (檢疫所設備)	수산물수출입부설비 (水産物輸出入部設備)
부 수 내 역	규모	1,134평	336평	3동	4동	15,000평	4,200평
	공비	59,792원		10,486원	1,238원	201원	29,864원

1909년 당시 부산만이 세관공사가 진행 중인 것은 아니었다. 전국 각지의 이사청에서도 상당한 세관공사가 이루어졌으나 부산세관공사의 규모가 가장 장대하였다. 표 4-4.는 전국적인 세관공사에서 지상부지에 대한 공사내역이며 부산세관의 공사가 어떤 규모를 차지하는 공사였는지 전국 공사규모와의 비교를 통해 알 수 있다.

216) 부두 등에 만들어진 지붕과 기둥만 있는 간단한 가건물 혹은 세관구내 창고
217) 조선총독부, 『통감부통계연보』, 빈전활판소, 1911, 1004쪽

표 4-4. 각 이사청 관할 세관공사 내역(1909년 당시 지상영역 내역만)
 [출전 : 『통감부통계연보』]

	부산	인천	군산	목포	경성	원산	청진	진남포	신의주	성진	대구	마산	평양
상옥(평)	1,134	1423	588.7	448	-	540	212	630	-	-	-	-	-
창고(평)	336	324	588.7	-	200	240	125	105	100	100	80	50	200
제청사(동)	3	4	2	3	1	2	2	3	4	1	-	-	1
관사(동)	4	10	1	-	9	4	2	4	1	-	-	-	-
검역소설비(평)	15,000	2272	-	-	-	10,000	-	12,000	-	-	-	-	-
수산물수출 입부설비(평)	4,200	-	-	-	-	750	-	-	-	-	-	-	-



(a) 부산세관[1883년 신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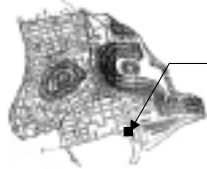
(b) 1910년경 부산세관공사 모습



(c) 부산세관[1910년 신축]



(d) 현재 부산세관



부산세관
 1911.8.30 준공
 현재 없음 * 부산 경남지역 본부세관 부지이용

그림 4-10. 부산세관의 과거와 현재

[그림출전 : (a)는 도영주·윤일주, 「1910년 이전의 부산의 양풍건축」, 향도부산 제3호, 1963, (b)와 (c)는 이종률, 『테마로 보는 부산항이야기』, 해성, 1997, 부록사진]

부산일본거류지는 부산항이라는 양항(良港)에 근거하여 태어난 곳으로

지세(地勢)는 용두산과 북병산 그리고 영선산 등에 가리고 있어 협소한 지역이라 할 수 있다.

경부선이 건설될 당시 부산일본거류지까지 연결하기엔 어려운 점이 많았다. 본래 경부선의 준공으로 인해 부산은 일본이 대륙으로 가는 기점을 만들 수 있는 가치 있는 도시가 되었고 거기다 일본인들이 모여 사는 거주지 구였기도 하다. 군사적으로 경제적 측면으로 두 가지 이점을 지니는 동시에 가지는 매립지의 개발과 활용 장점으로서는 먼저 시가지의 확장을 피하는 것과 함께 군사적인 항구 이용, 무역상의 편익이 동시에 해결되는 특징을 지니게 되었다.

부산항은 일본열도와 가장 가까운 항구였다. 부산항을 들어서면 곧바로 부산세관과 만난다. 부산세관 바로 맞은편에 경부선의 기점인 부산역이 위치해 있었고 그 주변에 우편과 통신을 관장하는 부산우체국이 함께 있다. 이와 같은 배치는 통치상의 용이함을 고려한 부지선택이라 할 수 있겠다.

5. 결론

5-1. 연구의 요약

1876년부터 1910년까지 부산일본전관거류지의 형성과 변화를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부산일본전관거류지로 유입된 건축은 대부분 일본의 거류지 경영에 필요한 관공서 및 공공시설에서 비롯되었다. 초기 건축물은 대부분 일본풍의 서구건축 양식이며 그 대부분을 초량왜관시기에 있었던 건물들의 부지 위에 건립되었다.

(2) 일본인의 대량 이주는 거류지의 팽창을 유도하였고 이와 더불어 일본식 건축물이 부산지역에서 늘어났다. 초기에 세워진 건물들은 대부분 일본인의 경제활동에 필요한 건물들이 대다수였으며 경제활동에서 중추적 역할을 맡은 은행업이나 거류민을 위한 공공시설은 당시 일본의 건축변천과 함께 서구식 건물이 설립될 수 있었다.

(3) 부산일본전관거류지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건물은 상업관련 건축이다. 여러 회사와 조합들의 진출로 인해 활발히 건립되었던 것이라고 추측된다. 부산에서 일본인의 경제활동은 무척 활발하였으며 경제적 이익의 추구를 위해 많은 일본인들이 이주하였다. 당시의 지도들을 통해서 일정한 이상의 사세를 가지는 회사들은 독자적인 사옥을 보유하고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4) 거류지에서의 건축활동은 크게 영사관 및 이사관 주도의 건축과 거류민단 중심의 건축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전자는 공공시설물의 설립을 담당하였고 후자는 민생에 관련된 생활시설물의 설립을 분담하였다. 특히 교육시설 부분은 거류민단이 주도적으로 시행하였다.

(5) 개항 초기 대다수의 건축물은 관공서와 공공시설이 주를 이루었으나 차

춤 거류지의 확장은 교육시설과 종교시설의 필요를 요구하게 되었고 교육 시설은 교사(校舍)의 확장과 이전을 통해 점점 그 수가 증가하였고 종교시설은 다양한 종파들에 의해 거류지 생활중심지에 설립되었다. 그러나 서구의 식민지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교육시설과 더불어 유입되는 종교시설이 설립되는 현상은 부산일본거류지에서 찾아볼 수 없는데, 이는 거류민단의 존재 때문으로 생각한다.

(6) 부산일본거류지에는 다양한 업종별 직업과 함께 각기 다른 용도의 건축이 설립되었다. 취체영업은 까다로운 건축규정에 의해 그 설립에 어려움이 많았으며 그 중 연극장은 비록 그 수는 적었으나 각광을 받았다. 또한 요리집과 음식점은 비록 건축적인 면에서 규제는 받지 않았으나 연극장과 갖는 친연성으로 인해 연극장 주변에 설립되어 나갔다.

(7) 거의 사라져버린 부산일본거류지에서의 근대건축에 대한 건축적인 세부 표현을 당시 이사청 회계사무장정에서 일부 찾을 수 있었다. 이사청 회계사무장정에는 특히 지도제작과 건축물 내부구조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

(8) 매립지의 조성은 부산에 당시로서 획기적인 규모와 외관을 지니는 건축물을 설립하는 토대를 제공하였다. 랜드마크적인 건축물로서 부산역, 부산세관, 부산우편국이 설립되었다.

(9) 도시 개발의 역사 측면에서 초량왜관의 설치시기에 마련된 건물들의 용도와 위치는 부산일본거류지시기까지 그 이용과 개발에 일정한 영향을 주었다.

(10) 부산일본거류지는 시가지의 구성과 형태가 부산항을 토대로 대륙침략을 위한 거점도시로서 만들어졌고 성장해 나갔다.

5-2. 연구의 의미와 한계

건축은 사회상의 표현이다. 1876년 개항 이후 밀려들어오는 서구의 문물 속에서 부산은 일본전관거류지라는 특수한 사정을 통해서 근대건축에 접하게 되었다.

부산에 있어서 근대건축은 대부분 일본이 그들의 편의에 의해 이 땅에 설립한 건축이 대부분이며 불순한 설립 취지와 역사적 상황에 의해 오늘날 까지 남아있는 건축물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지금으로서는 몇 장의 사진만이 그 시대를 전해주고 있을 따름이다. 더하여 일본이 주체적으로 활동한 시기의 근대건축은 과거청산의 차원에서 보존의 여유라는 기회조차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저런 이유들로 근대건축의 연구과정에는 마치 선사시대(先史時代)의 ‘기록부재(記錄不在)’라는 현실적 어려움에 부딪히곤 한다.

근대건축을 연구하는 목적 중의 하나는 현대건축(現代建築)을 이해하고 접목시키는데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개항 이후 부산에서 전개된 사건들과 그 자료들을 통해서 부산에 유입된 건축을 추적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었다.

참 고 문 헌

1. 부산부, 부산부사원고, 도서출판 민족문화, 1987.7.4
2. 통감부, 통감부통계연보, 고도활판소, 1907.12.23
3. 통감부, 통감부통계연보, 동경제본합자회사, 1910.3.12
4.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통계연보, 빈전활판소, 1911.3.25
5.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통계연보, 조선총독부관방인쇄소, 1913.12.10
6. 국회도서관, 통감부법령자료집 上, 서경문화사, 1991.4.4
7. 국회도서관, 통감부법령자료집 中, 서경문화사, 1991.4.4
8. 국회도서관, 통감부법령자료집 下, 서경문화사, 1991.4.4
9. 부산주재일본영사관, 경상도사정, 향도부산 제7호, 1969
10. 도영주·윤일주, 1910년 이전의 부산의 양풍건축, 향도부산 제3호, 1963.12.30
11. 김용욱, 부산축항지, 향도부산 제2호, 1963.6.30
12. 김대상, 개항 직후 부산의 사회문화, 향도부산 제6호, 1967.6.10
13. 부산시사편찬위원회, 부산약사, 1968.3.2
14. 大曲美太郎, 김의환 역, 부산의 고적과 유물에 관한 자료, 향도부산 제7호, 1969.1.31
15. 부산시사편찬위원회, 부록사진, 향도부산 제6호, 1967.6.10
16. 부산시사편찬위원회, 개항직후의 무역상업계 사료초, 향도부산 제6호, 1967.6.10
17. 부산상공회의소·부산경제연구원, 부산경제사, 1989.7.1
18. 손정목, 한국개항기도시변화과정연구, 일지사, 1994.12.30
19. 손정목, 일제강점기도시사회상연구, 일지사, 1996.1.25
20. 김용욱, 일제강점기 부산의 행정조직과 일제의 통치구조, 향도부산 제15호, 1998. 12.30
21. 에드워드 사이덴스티커, 허호 역, 도쿄이야기, 이산, 1997.10.15
22. 아손 그랩스트, 김상열 역, 코리아코리아, 도서출판 미완, 1986.4.5
23. 이종률, 테마로 보는 부산향이야기, 해성, 1997.6.25
24. 이원균, 부산의 역사, 도서출판 늘함께, 2000.2.20

25. 부산경남역사연구소, 시민을 위한 부산의 역사, 도서출판 늘함께, 1999.3.1
26. 최해군, 부산에 살으리랏다, 부산을 가꾸는 모임 지평, 2000.1.15
27. 김갑득, 부산 일본전관거류지의 건축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공학 석사논문, 1987.2
28. 김정동, 한국 근대건축 206편의 참고문헌, 건축역사연구 제1권 1호 통권 1호, 1992.6
29. 村松伸, 윤인석 역, 동아시아근대에서“건축”의 변용, 건축역사연구 제1권 2호 통권 2호, 1992.12
30.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31. 부산광역시청 <http://www.metro.busan.kr/history/index.jsp>
32. 강신용, 한국근대공원사, 조경, 1995.7.12
33. 藤井恵介・玉井哲雄, 建築の歴史, 東京, 中央公倫社, 1995
34. 민중서림, 옛센스일본어한자읽기사전, 200.1.10
35. 西和夫・穂積和夫, 이무희・진경돈 공역, 일본건축사, 세진사, 1995